

중국의 통일과 개방·개혁



통 일 원

< 목 차 >

1. 중국·대만관계 현황 ----- 1
2. 중·영간 홍콩이양 관련동향 -----29
3. 중국의 개방·개혁 추진현황 -----42
4. 중국내 조선족 실태 -----70

[參考資料] 1 : 중국·대만의 『통일백서』

2 :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추진기구

3 : 양안 교류현황(통계)

4 : 중·영간 홍콩반환협정

5 : 등소평의 『南巡講話』 전문

본 자료는 통일정책실(제2)의 「중국·대만관계
실무정책협의회」 해외출장('95.12) 결과보고서임.

1. 중국 · 대만의 통일정책

가. 기본입장

< 중국 >

- 『대만문제』의 근본원인은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과 국공내전 과정에서 서방국가의 내정간섭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
 - 양안의 통일을 통해 『대만문제』를 해결, 민족통합, 자주성 회복, 영토보존을 실현
- 양안의 통일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대만의 『1개 중국』 원칙 수용,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 불개입 입장 견지

< 대 만 >

-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이나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민주 · 자유 · 均富』가 실현되는 통일을 추구
- 통일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호혜적 협상과정을 통해 실현
 - △ -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 대만의 정치실체 및 국제사회활동 인정없이 통일문제 논의불가 입장

— < 대만의 對대륙정책 기본방침 > —

- ① 국가통일 목표는 절대 변질될 수 없으며 상호신뢰와 이해속에서 점차적으로 달성
- ② 중국은 통일이전에 대만의 안전과 존엄, 2,100만 동포의 복지를 위해 대만의 역사·현실을 존중
- ③ 중국이 대대만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는 한 통일 불가능
- ④ 국제사회 활동에 있어 중국의 간섭 배제

나. 통일정책

< 중국 > : 『一國兩制』 통일방안

- 『1개중국』 : 세계상의 중국은 오직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북경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 정부
- 『兩制共存』 : 하나의 중국안에 대륙의 사회주의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제도가 장기간 공존, 공동 발전을 추구

- 『高度自治』 : 양안의 정치적 통합하에 『양제공존』 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행정구』 방식 추구
- 『평화담판』 :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당대당 담판을 통한 『제3차 國共合作』 을 통한 통합추진

< 대만 > : 『一國兩區』 통일방안

- 이성(Reason), 평화(Peace), 대등(Parity), 호혜(Reciprocity) 를 전제로 적절한 기간의 교류·합작·협상 및 민주·자유·균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一國兩區』 를 실현
 - 쌍방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분단되고 분치되는 두 지역으로 『一國內部』 또는 『中國內部』 에 속하는 2개의 국제법인
 - 『하나의 중국』 을 주장하며 『2개의 중국』 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에 반대
- 통일추진단계를 ① 교류·호혜단계(민간교류), ② 상호신뢰·합작단계(정부간 접촉), ③ 통일협상단계로 설정 ('91.2 『국가통일강령』)

< 통일정책 비교 >

구 분	중 국	대 만
통일원칙 기본전제	○ 하나의 중국 -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	○ 하나의 중국 - “대륙과 대만은 모두 가 중국의 영토” * 對等, 尊重, 互惠
통일정책	○ 一國兩制 - 양 제도 공존통일 - 『特別行政區』(主從 關係) 방식	○ 一國兩區 - 독립적 정치실체 공존 - 홍콩식 『特別行政區』 지위 거부(대등한 정부 · 지역관계)
통일방식	○ 평화통일 - 무력사용 가능성 유보	○ 점진적 평화적 제도통일 - 『3和政策』(평화공존, 평화경쟁, 평화통일)
통일추진단계	○ 『3通』, 『4流』를 통 한 통일여건 조성 - 대결지양→정치협상 →정상회담 개최	○ 3단계(실체인정→교류· 접촉→통일협상) 설정
통일국가의 미 대상	○ 하나의 중국건설을 통해 國家主權 수호, 領土保存 ○ 一國兩制하에서 중화민족 진흥	○ 중국전역에서 『四大化』 (정치적민주화, 경제적자유 화, 사회적다양화, 문화적 다국화) 실현 - 민주·자유·균부의 통일중국 건설(國家富 強, 民族富裕)

※ 첨부자료1 : 중국과 대만의 『통일백서』 참조

다. 통일정책 추진기구

구 분	중 국	대 만	비 고
최고 정책 결정기관	中央臺灣工作領導小組(조장: 江澤民 주석)	국가통일위원회 (주임: 李登輝 총통)	최고 지도부내 통일정책결정 기구
총괄·조정 집행기관	국무원 臺灣事務辦公室 - 106공작 관공실	행정원 대륙위원회	행정부내 부처 (통일원과유사)
접촉·협상 기구	海峽兩岸關係協會 (海協會)	海峽交流基金會 (海基會)	半官半民 기구 『3通』 및 회담 업무 수행

※첨부자료2 : 중국·대만의 통일정책기구 참조

라. 최근 양국의 통일문제 접근태도

< 중국은 적대관계 해소 중시 >

- 강택민 국가주석은 대만해협 긴장해소와 정치회담에 초점을 맞춘 신대만정책 8개항(『江 8條』)을 발표('95.1.30)

< 新대만정책 8개항 >

- ① 『1개 중국』 견지
- ② 대만의 『2개 중국』 조장책략 반대
- ③ 중·대만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회담개최

- ④ 중국의 무력사용 대상은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
- ⑤ 중·대만간 직접 경제교류 추진
- ⑥ 중화문화의 전통 발양
- ⑦ 대만동포와의 연계 강화
- ⑧ 중·대만간 중국내 정상회담 개최

○ 그후 강택민 주석은 항일전승 50주년 연설('95.9.3)에서 통일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

-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로서 대만문제를 해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국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공동염원임.
- 현재 대만에는 민족분열을 기도하고 『2개중국』·『1중 1대』를 조장하여 조국의 평화통일 대업을 파괴하는 세력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
- 중국은 조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어떠한 내외부의 중국분열 기도도 반드시 실패할 것임』

○ 한편, 당중앙 대만공작 판공실은 그간의 경제교류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통일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

- 『적대관계 종식→ 1개 중국문제 협상→ 지도자간 통일회담』 추진을 통해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한다는 3단계 통일방안(『新3步』)을 마련

< 3단계 통일방안 >

- 1단계: 북건성·동남부 연안내 중국군과 금문도·마조도내 대만군의 철수 및 중국의 대대만 무력불사용 조건 등을 명시한 『적대상태 종식 합의서』에 서명
- 2단계: 『1개 중국』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치 협상회의 개최
- 3단계: 구체적 통일협상진행을 위한 정상회담 개최

< 대만은 대등관계하의 교류확대 우선 >

- 『정치실체 인정 → 교류 → 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에 입각, 『2개의 정치실체』를 바탕으로 한 교류확대 선행에 역점
- 중·대만 관계가 『협의시대로의 진입단계』라는 인식하에 상호 정치실체 인정과 쌍방지도자의 『국가원수 신분』에 의한 상호방문 입장을 견지
 - 문화·과학·학술교류 및 뉴스교환을 위한 협정체결 추진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확대 추진
 - 중국 경제·통상관리의 대만 입국허용과 함께 대중 투자 제한 완화, 직접 해운로 개설 및 핫라인 설치 검토 등 직접교류의 선별적 추진을 모색

- 한편, 이등휘 총통은 항일전승 50주년 연설('95.9.31)에서 통일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
 - 『중국통일은 민주·자유·균부의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함.
 - 진정한 민족주의는 무력이 아니라 중국인은 중국인을 돕는다는 원칙에 의해 민족을 재건·융합하는 것임.
 - 현재의 중화민국 정부는 항일전쟁을 주도했고 50년전 일본의 항복을 접수하였으며, UN을 창립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던 사실을 세계각국이 알아주기 바람.
 - 국가통일 추구는 중화민국 건국정신이며, 본인은 양안교류 추진 및 국가통일강령 제정 등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음.
 - 「강 8조」와 본인의 「6개항 제의」('95.4.8)는 양안간 동화·통일추구의 기초로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로 중국 재통일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함』

< 6개항 제의 >

- ① 분단현실 인정하에 중국통일 추진
- ② 중화문화를 기초로 한 과학기술·학술교류 강화
- ③ 경제무역 증진 도모와 항공운항문제 신중 검토
- ④ 쌍방지도자가 국제회의에 참가, 자연스럽게 접촉

- ⑤ 중국의 대대만 무력사용 포기 선언후 쌍방이 적대 상태 종식을 위한 협상 개최
- ⑥ 홍콩·마카오의 번영과 민주화 촉진을 위해 공동 노력

2. 양안간 교류·대화

가. 양안관계 변화과정

〈1단계〉 : '49 - '79

- 중국의 『3通 4流』 (통상·통항·통우, 경제·문화·과학기술·체육교류)정책과 대만의 『3불정책』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의 대립
 - 중국의 대만문제 해결방식이 종래의 무력적 해결에서 평화적 해결로 전환되면서 『당대당 담판』을 통한 대만문제 해결과 양안간 교류·협력 제의
 - 대만은 미·중수교('79) 등으로 인한 『고립과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각종 제의를 거부, 대내 안정확보에 주력

〈2단계〉 : '79 - '87

- 비정치적·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 '87년 대만의 폐쇄적인 대륙정책이 한계에 부딪치고 국내 비판이 고조되자 대만정부는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 등 대륙정책 전환을 추진

- ⑤ 중국의 대대만 무력사용 포기 선언후 쌍방이 적대 상태 종식을 위한 협상 개최
- ⑥ 홍콩·마카오의 번영과 민주화 촉진을 위해 공동 노력

2. 양안간 교류·대화

가. 양안관계 변화과정

〈1단계〉 : '49 - '79

- 중국의 『3通 4流』(통상·통항·통우, 경제·문화·과학기술·체육교류)정책과 대만의 『3불정책』(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의 대립
 - 중국의 대만문제 해결방식이 종래의 무력적 해결에서 평화적 해결로 전환되면서 『당대당 담판』을 통한 대만문제 해결과 양안간 교류·협력 제의
 - 대만은 미·중수교('79) 등으로 인한 『고립과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각종 제의를 거부, 대내 안정확보에 주력

〈2단계〉 : '79 - '87

- 비정치적·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 '87년 대만의 폐쇄적인 대륙정책이 한계에 부딪치고 국내 비판이 고조되자 대만정부는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 등 대륙정책 전환을 추진

- 친척방문 등을 통한 인적교류는 다각적인 양안교류·협력을 촉진, 단절·고립의 양안관계를 교류·협력의 관계로 변모시키는데 크게 기여

〈3단계〉 : '87 - 현재

○ 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정치적 관계개선 모색

- '90년이후 주로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대륙정책에 따라 양안간 교류·협력의 확대·제도화와 함께 정치적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
- 대만은 기존의 비현실적·수세적 입장을 지양, 새로운 차원의 양안관계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통일추진기구와 『국가통일강령』, 『인민관계조례』 등의 각종 통일지침을 제정·시행
- '93.4 중국의 『海協會』(회장: 왕도함)과 대만의 『海基會』(회장: 고진보)와의 『王辜會談』을 계기로 양안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

나. 교류협력 현황

- 중국·대만관계 변화는 어느 일방의 적극적인 노력보다 기존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쌍방 인식전환에 기인
 - '90년이후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통일문제를 『해방』 또는 『수복』의 개념이 아닌 평화적·이성적 통합차원으로 인식

- 쌍방은 양안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보다 점차 현실적·경제적 요구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정치와 비정치를 엄격히 구분)
-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은 인적·물적교류, 사회문화교류, 반관기구의 접촉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관계 발전을 이룩

<인적교류>

- '80년대에 비공식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인적 교류는 '87년 대만이 친인척의 본토방문을 허용하고 중국이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활성화
 - 대만 국민당내 진보·보수세력간의 논란중에서 장경국 총통은 대내 정치개혁과 대륙정책 조정의 일환으로 대륙방문 허용을 결정
 -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은 특별담화를 통해 모든 편의 제공(대륙주민과 동등대우 등)을 약속
- 초기 대만정부가 허용한 방문 범위는 3촌이내의 친척과 배우자(현역군인, 공무원 제외)로 제한하였고 대륙거주 중국주민의 대만방문도 극히 제한하였으나 대륙주민의 문병·문상을 위한 방문허용('88)에 이어, 해외거주 학자, 해외유학생의 대만방문을 허용

- '90.8 이후에는 대만이 중국공산당원의 대만방문, 대만 공무원의 대륙내 친척방문도 허용하면서 양안간의 인적 교류가 급속히 발전
- 중국은 『3통 4류』의 통일전략에 따라 대륙친지 방문객은 물론 공무원·기업인·일반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
- 교류현황 : 대만 → 중국('95.11 현재 약 8,500,000명)
중국 → 대만('95.11 현재 총 120,000명)

< 경제교류 >

- 양안간 경제교류는 쌍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으로 양안관계 축진의 중요 요인이자 관계발전의 지표
 - 중국은 『3통』·『4류』를 제의(79.11), 직접교류를 주장
 - 대만이 『3불』 및 『3불통』(직교역·직접투자·직통항 금지) 정책을 견지, 간접교류 방식을 고수
 - ※ 현재로선 홍콩·마카오·싱가폴·일본 등 제3국 경유 형태의 교류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첨부자료3 참조)
- 중국의 대만기업 전용공단 조성, 투자편의·특혜제공 등 경제교류 강화정책으로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양적 증대와 함께 투자업종·규모·지역 등 그 범위가 급속히 확대

○ 그러나 중국에 대한 정보부족, 법제도 미비, 보호조치미흡 등과 함께 대만의 대륙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대만은 양안간 교역량을 총교역량의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

○ 대만의 대중국 교역량 : 약 187억\$('95년 11월 현재)
* 서로간에 4대 교역국으로 부상

○ 대만의 대중국 투자액 : 약 140억\$('95년 11월 현재)
* 홍콩에 이어 세계 2번째 대중국 투자국

< 사회·문화교류 >

○ 양안간 사회·문화교류는 쌍방간의 정치적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뿌리깊은 상호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

- 중국은 사회·문화교류에 따른 『和平演變』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대만내 분리·독립분위기 억제를 기대

- 대만은 중국의 통일전선 의도를 경계하면서도 대륙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 시킨다는 목표를 설정

○ 중국·대만은 사회·문화교류가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위협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본전제로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학술·언론·문화·체육교류를 확대·발전

- 대만은 인적교류, 청소년교류, 과학기술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95년중 30여개 단체가 중국을 방문
- 최근 중국은 제3국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대만과의 우편, 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의 ('95.12.14)

< 직접교류 시도 >

- o 중국측은 대만 경제인들의 대중국 투자 보장과 대만인의 중국 도착즉시 비자를 발급해 주기위한 규정 등을 제정, 직접교류 실현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
 - 강택민 국가주석이 대만측에 대해 직접교류 실현을 재촉 구('95.1.30)한데 이어 대외 무역경제합작부장도 직접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 개최하자고 제의 (2.28)
- o 이에 대해 대만측은 중국 고위관리의 대만방문을 계속 불허하면서도 『경제·무역활동종사허가규정』을 개정(3.27), 경제·무역관리의 경우는 각료급을 제외한 고위관리의 방문을 허용
 - 이등취 총통은 '95.12.31 대만이 중국과 정보 및 무역의 직접교류를 위한 특별지구 설치 검토용의를 표명, 3 불정책의 철회가능성을 시사

< 직항로 개설 추진 >

- 중국측은 상해 - 고웅항간 직항로 개설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복건성의 복주항과 하문항을 직항창구로 개설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에 착수
- 대만측은 중정공항과 중국 6개공항(광주·심천·하문·상해·북경·청도)간 직항노선 개통에 관한 계획을 발표('95.4.28)
 - 외국적 화물선에 한해 중·대만간 직접해운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
 - 외국적 선박들에 대해 대중 직항항구로 고웅항 이용을 허용

다. 양안간 대화

- '79년이후 계속된 중국의 제3차 국공합작을 위한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당대당 회담제외에 대해 대만이 거부함에 따라 아직 당대당 또는 정부간 접촉은 부재
- 그러나 양안간 교류·협력 확대에 따라 비공식 물밑대화로는 통제·관리에 한계가 있어 교류·협력 제도화와 상호 이해와 현안을 협의·조정할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
 - 중국은 투자보장을 요구하는 대만의 3불정책 변화 등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화채널 확보 필요

- 대만은 대규모 대륙투자로 경제의 성패가 중국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투자보장 등의 해결책이 절실하고, 중국과의 정치대화를 통해 대외관계 회복 및 정치적 실체 확보를 겨냥

○ 이에 따라 중국·대만은 실질적으로 정부간 접촉을 대행할 수 있는 반관반민 성격의 중재기구인 『해협회』(91.12)와 『해기회』(90.11)를 설립한 후, 양 기구의 책임자간에 소위 『왕고회담』을 개최

※ 중국 『해협회』 회장(왕도합)과 대만(해기회』 주임(고진보)은 양측 최고책임자의 핵심측근으로 사실상 정치회담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제1차 왕고회담 >

○ '93. 4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왕고회담』에서 쌍방은 『해협회』와 『해기회』간의 회담 정례화, 교류협력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범죄·분쟁처리, 대륙진출 대만기업의 투자보장문제 등을 논의

- 회장급 년1회, 부대표급 년2회, 실무급 년4회의 회담정례화에 합의

- 분쟁처리, 투자보장 문제는 차기 회담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 중국은 대만과의 협상·협정을 국내차원에서, 대만은 대등한 정부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문제해결 지연

- 『왕고회담』의 합의에 따라 실무자급 회담과 부대표급 회담을 통해 불법입국자, 중국항공기 납치범 송환, 어로분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94.8.4~8.7간 대북에서 개최된 실무회담에서는 3개 현안해결을 위한 구체적 합의 도출
 - 그외에 학생교류, 유적 공동조사, 과학정보교류 등에 잠정 합의하고 상대방 지역에 언론사 사무실 설치에도 합의
 - 다만 경제인의 신변보호와 투자보장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

< 예비회담 개최결과 >

- 중·대만은 제2차 『왕고회담』을 위한 제1차 예비회담을 '95.5.27-29간 대북에서 개최, 제2차 『왕고회담』일정 및 의제등에 관해 합의한 『예비회담 공동합의서』에 서명

— < 『왕고회담』일정 및 성격 > —

- 제2차 『왕고회담』은 오는 '95.7.20부터 3-4일간 북경 조어대에서 개최하고, 이에 앞서 제2차 예비회담을 6.27-7.1간 대북에서 개최
- 『왕고회담』을 정례화, 제도화하여 매년 상호 교대로 개최
- 민간성, 경제성, 사무성, 효율성을 띤 회담으로 추진

— < 제2차 『왕고회담』 주요의제 8개항 > —

- 중·대만 교류 증진을 위해 양안회담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
- 중·대만 현안문제와 농업·과학·문화분야에서의 교류 증진문제 등 8개항을 최고위급 회담의제로 채택
 - 양안간 항공기 납치범·불법입국자 송환 및 어업분규 처리문제 등에 대한 조속한 합의 달성 문제
 - 대만기업의 투자권의 보호문제
 - 양안 문화교류 및 뉴스교환 확대 문제
 - 양안간 민간경제교류회의의 정기적 개최와 경제무역분규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문제
 - 양안간 농업·과학기술·관광 및 기타 중요교류 문제

- 예비회담이후 중국·대만관계 악화로 본회담은 무기연기('96. 3 대만총통 선거이후 개최 예상)

3. 최근 양안관계 주요동향

가. 중국의 대만압력

- 중국은 이등휘 대만총통 방미('95.6) 이후 대대만 무력위협 및 이총통 비난공세 강화 등 강경정책을 계속 추진

— < 제2차 『왕고회담』 주요의제 8개항 > —

- 중·대만 교류 증진을 위해 양안회담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
- 중·대만 현안문제와 농업·과학·문화분야에서의 교류 증진문제 등 8개항을 최고위급 회담의제로 채택
 - 양안간 항공기 납치범·불법입국자 송환 및 어업분규 처리문제 등에 대한 조속한 합의 달성 문제
 - 대만기업의 투자권의 보호문제
 - 양안 문화교류 및 뉴스교환 확대 문제
 - 양안간 민간경제교류회의의 정기적 개최와 경제무역분규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문제
 - 양안간 농업·과학기술·관광 및 기타 중요교류 문제

- 예비회담이후 중국·대만관계 악화로 본회담은 무기연기('96. 3 대만총통 선거이후 개최 예상)

3. 최근 양안관계 주요동향

가. 중국의 대만압력

- 중국은 이등휘 대만총통 방미('95.6) 이후 대대만 무력위협 및 이총통 비난공세 강화 등 강경정책을 계속 추진

- 등소평 사망과 홍콩접수('97.7) 및 대만총통 선거('96.3)를 앞두고 노골화

<군사압력>

- 지호전 국방부장 · 강택민 국가주석 · 이서경 정협주석 등이 대만의 『2개 중국』 기도에 대한 무력불사 방침을 거듭 천명, 대만내 국론분열을 유도
 - 중국 군부는 무력행사 조건으로 대만독립 움직임 고조 · 대만 내전 발발 · 외국의 대만 침략이 있을 경우 군사개입이 불가피할 것임을 강조
 -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한다는 방침을 결정
- 무력시위도 강화하여 대만 인접 복건성에 전-6기 10대, 전-7기 14대를 증강 배치('95.8.15)하고 강호급(2,000톤) 프리깃함 5척을 대만해협으로 이동
 - 대만해협을 겨냥한 1차('95.7.21-26) · 2차(8.15-25) 미사일 발사 훈련에 이어 3차훈련도 실시
 - 『대만 침공계획』 수립('95.8월초 『북대하회의』)과 함께 실제 상황에 대비하여 복건성에 『대대 연합지휘소』를 설치했다는 설을 유포

< 정치입력 >

- 대만정부가 홍콩의 중국귀속후 대만을 아·태지역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소위 『아·태 운영중심』 건설계획을 저지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중국의 각료·지방 국장급 관리의 방문을 금지
- 대만 총통선거(96.3)시까지 대만과의 어떠한 회담이나 협상도 갖지 않는다는 방침하에 대만당국이 『1개 중국·1개 주권』에 동의할 경우에만 양안회담의 재개가 가능함을 강조
 - 95.9-96.3 기간중 대대만 중점공략 주제를 월별로 설정, 이 총통에 대한 지속적인 인신공격을 전개, 재선저지에 주력
- 한편, 그간 대대만 정책을 전달해왔던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주임: 왕조국)의 주요기능을 당중앙군사위 소속 『106 공작판공실』(대만·홍콩 정보수집기관)이 주관토록 조치
- 당내 대만정책 최고결정기구인 『대대만 공작 영도소조』(조장: 강태민주석)를 기존의 6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면서 최고위층지도부를 모두 포함시키고 군부인사를 대폭 보강

< 『대대만 공작 영도소조』 구성원 확대개편 내용 >

기 존 6명	추 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태민 중앙군사위 주석 ○ 전기침외교부장 ○ 왕조국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 가춘왕 국가안전부장 ○ 왕도위 해협회장 ○ 옹광해 군총정치부 주임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봉 총리 ○ 교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 이서환 정치협상회의 주석 ○ 유화청 중앙군사위 부주석 ○ 장진 중앙군사위 부주석

< 대만의 대응 >

- 대만은 대중국정책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이등휘총통 방미, UN가입추진 등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실체를 인정받기 위한 외교활동과 방위태세 강화에 주력하는 등 정치·군사적으로 대응
 - 고위급인사의 활발한 방문외교와 함께 해외상주기구의 격상·신설 및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모색
 -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군사력 증강계획 발표 및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대응
- 그런 한편으로 중국에 중단된 양안 대화재개를 거듭 촉구하는 등 긴장완화에 주력
 - 정부의 경제 전문인사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중국의 정경분리 정책에 호응
 - ※ 중국은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인한 자국의 경제발전 악영향을 우려, 대만인의 대중 적대감 완화(투자위축 방지)를 위한 조치(정치·경제분리 정책) 강구

나. 대만내 독립요구 움직임

- 대만에서는 민진당이 부상하면서 대만 장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독립요구 시위도 전국적으로 확산

- 대만 독립문제가 '96.3 총통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민진당 창당과 대만독립문제 대두 >

- 86.11 민진당이 창당되어 대만내 최대 야당으로 부상하면서 국호를 『대만공화국』으로 변경하는 『대만공화국 헌법초안』을 채택(91.8)

- 『주권독립·자주의 대만공화국 건설』을 주장한 당강령 수정안이 통과(91.10)되면서 대만독립 문제가 표면화

- 대만정부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대만독립 주장은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내란죄관련 형법개정(92.5)을 계기로 대만독립 요구 움직임이 노골화

※국민당 및 대륙출신들로 구성된 『신당』은 대만독립에 반대

< 민진당의 부상과 독립분위기 조성 >

- 제2기 입법위원 선거(92.12)에서 의석을 크게 신장(18석→ 51석) 시킨데 이어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93.11)에서도 41%의 지지율을 획득
- 특히 지난 94.12 실시한 내만성상→대북시장→고웅시장 등 3개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진당 후보인 진수편이 대북시장에 당선되고 40%의 득표율을 기록, 국민→민진당의 양당 구도 정착기반을 마련

○ 민진당은 당세 확장을 계기로 대만장래문제의 국민투표 결정을 주장하면서 『대만독립』 정강을 재확인('95.2.5 당헌개정 검토회의)

- 대북시와 대북·신죽·선란·고웅현 등 민진당이 장악한 일부지방의 공공기관·학교내 장개석 부자 사진을 철거토록 지시(2.14)함으로써 대만 분리독립 추구 분위기를 조성

< 대만독립 지지세력 확산 >

○ 통일문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대만독립 지지여론이 90년대 초기에는 12% 정도에 불과했으나 93.11 이후부터 20%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는 등 상승추세 지속

< 갤럽 여론조사 결과 대만독립 지지도 추이 >

조사시기	90. 6	91. 6	92.10	93.11	94. 4	95. 1
지지율(%)	12.0	12.2	15.8	20.0	27.0	20.1

* 94.4의 조사결과는 대만관광객 24명이 사망한 중국 절강성 유람선 화재사건(94.3 『천도호 사건』)의 영향으로 급상승

○ 야당성향이 강한 남부지방(92.2 대중, 92.11 대남)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만독립 요구시위가 민진당 세력이 점차 신장되면서 최근에는 대북 시내 중심가에서 대규모로 발생

- 대만독립 찬반세력간의 유혈충돌사태(94.9 고웅)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

- 앞으로 대만독립문제는 총통(96.3) 선거를 겨냥한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대만독립 지지 세력의 분리독립 요구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중국은 물론 대만정부도 『대만독립』 불용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다 아직은 대만 국민들도 중국의 무력침공가능성을 우려, 대만의 현상유지를 보다 선호(56.8%)

〈 대만독립 관련 중·대만 입장 〉

중 국	대 만
○ 대만독립 움직임 고조시 대대 만 무력침공 계획 수립 (94.7 중앙군사위)	○ 대만 분리독립 주장에 대한 정 부의 불용입장은 불변 (93.10 이등휘 총통)
○ 중국의 무력사용 대상은 대만 독립을 획책하는 외부적대세력 (‘95.1.30 강태민 국가주석)	○ 대만독립은 전국민을 위협에 빠뜨리게 되므로 반대 (94.11 이등휘 총통)

4. 평가 및 전망

- 중국과 대만의 『통일접근 태도』는 중국측이 대만해협 긴장해소와 대대만 정치회담 개최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
- 대만측은 『정치실체 인정→ 교류→ 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91.2)에 입각, 『2개의 정치실체』를 바탕으로 한 교류확대의 선행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

- 앞으로 대만독립문제는 총통(96.3) 선거를 겨냥한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대만독립 지지 세력의 분리독립 요구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중국은 물론 대만정부도 『대만독립』 불용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다 아직은 대만 국민들도 중국의 무력침공가능성을 우려, 대만의 현상유지를 보다 선호(56.8%)

〈 대만독립 관련 중·대만 입장 〉

중 국	대 만
○ 대만독립 움직임 고조시 대대 만 무력침공 계획 수립 (94.7 중앙군사위)	○ 대만 분리독립 주장에 대한 정 부의 불용입장은 불변 (93.10 이등휘 총통)
○ 중국의 무력사용 대상은 대만 독립을 획책하는 외부적대세력 (‘95.1.30 강태민 국가주석)	○ 대만독립은 전국민을 위협에 빠뜨리게 되므로 반대 (94.11 이등휘 총통)

4. 평가 및 전망

- 중국과 대만의 『통일접근 태도』는 중국측이 대만해협 긴장해소와 대대만 정치회담 개최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
- 대만측은 『정치실체 인정→ 교류→ 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91.2)에 입각, 『2개의 정치실체』를 바탕으로 한 교류확대의 선행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

- 중·대만간 『직접교류 추진』은 중국으로서는 대만기업의 대중 진출을 적극 유도, 경제발전은 물론 통일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
 - 대만으로서는 간접교역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대중국 교류의 중개 역할을 담당해 온 홍콩의 중국 귀속 (97.7)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인적·물적교류 확대를 통해 적대감정 완화를 추구

- 최근 중국의 대대만 정치·군사압력 동향에서는 강택민주석 등의 대대만 무력행사 불사방침 표명과 함께 잇따른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를 통해 무력사용 발언이 단순히 위협만이 아님을 시현
 - * 그러나 중국의 잇따른 무력시위는 대만을 실제로 공격하겠다는 의미보다 대만정권에 대한 정치 심리전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

- 이와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대만관계는 대만 정치실체 인정문제 때문에 정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일면 경제교류·일면 군사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정권교체기에 있는 양측 지도부 공히 자신들의 입지 제고 및 군부의 지지확보 차원에서 계속 강경노선을 고수
 - 대만 총통선거시까지의 통일문제와 관련 상호공방이 가열되고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도 경쟁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정치·군사적 대치국면이 지속될 가능성

- 그러나 중국인의 전통적인 문제해결 관행인 『求同存異』(일치점은 취하고 다른점은 보류) 방식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부분에서의 교류를 계속 확대, 실질적인 내부통일을 이루어 갈 것으로 전망
- 특히 양측 모두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직접교류의 조기실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외국적 선박 및 항공기의 직항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

5. 시사점

- 체제·이념의 제약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대만간의 팔목할 교류협력 성과와 그 과정에서의 쌍방 움직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

〈 시사점 〉

- ① 견해나 의견이 다른 때는 일치점을 취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잠시 보류(求同存異)
- ② 정부간, 국공 양당간 합의없어도 교류협력이 활발
- 합의서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보다 중요
- ③ 한쪽이 참으면 상대방도 점차 따르게 됨.
- 서로 상대방 비방중지, 귀순자 환영보로금 폐지

- 그러나 중국인의 전통적인 문제해결 관행인 『求同存異』(일치점은 취하고 다른점은 보류) 방식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부분에서의 교류를 계속 확대, 실질적인 내부통일을 이루어 갈 것으로 전망
- 특히 양측 모두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직접교류의 조기실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외국적 선박 및 항공기의 직항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

5. 시사점

- 체제·이념의 제약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대만간의 팔목할 교류협력 성과와 그 과정에서의 쌍방 움직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

〈 시사점 〉

- ① 견해나 의견이 다른 때는 일치점을 취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잠시 보류(求同存異)
- ② 정부간, 국공 양당간 합의없어도 교류협력이 활발
- 합의서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보다 중요
- ③ 한쪽이 참으면 상대방도 점차 따르게 됨.
- 서로 상대방 비방중지, 귀순자 환영보로금 폐지

- ④ 상대방 체제 간섭않고 자기의 우세를 내세우지 않음.(체제경쟁 지양, 대국적 자신감)
- ⑤ 이념요인보다 현실적 요인을 중시, 상호 이익 및 전체 민족의 발전 추구
- ⑥ 정책전환과 관계변화는 쌍방 관계발전이 각자의 정치·경제적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공동인식에서만 가능
- ⑦ 인적교류가 교류·협력의 시발점이자 관계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 ⑧ 단절상황에서 해외교포(화교)들을 각자의 입장과 정책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
- ⑨ 정치와 비정치, 정부와 민간차원을 분리, 우선 실현 가능한 분야의 교류부터 추진
- ⑩ 교류·협력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간의 공동보조 필요
- ⑪ 상대방 정부 혹은 권력주체보다 일반주민에 비중을 둔 정책대안 강구
- ⑫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과 원칙을 견지

1. 중국의 대홍콩정책

<모택동 시대>

- 중국은 홍콩의 현상유지와 함께 홍콩반환과 관련 다음 3가지 점을 반복해서 강조
 - ① 중국통일(홍콩귀속)은 전적으로 중국내부의 문제
 - ② 중국은 홍콩의 주권을 귀속시키기 위한 무력사용 권리 보유
 - ③ 홍콩의 정치·경제·사회제도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일치

- 그러나 당시 냉전의 국제적 위기상황에서 구호상으로는 매우 적극적이고 호전적이었으나 실제로는 홍콩귀속 추진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없었음.

<덩소평 시대>

- 중국 근대화 추진을 위해 홍콩과의 관계를 재정립·강화할 필요성에서 덩소평은 기존의 현상유지 정책에서 영국과의 협상을 통한 홍콩문제 해결을 추진
 -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실현 중간단계로 홍콩인수·통합전략을 수립 추진

< 중·영간 협상 >

- 70년대말 영국측이 홍콩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측 의사를 타진하자 당시 중국정부는 두가지 기본방침을 제시
 - ① '97년에 홍콩을 반드시 되찾아 주권을 회복
 - ② 주권행사 회복전제하에 홍콩의 번영과 안정 유지
- 동 방침에 따라 중국은 홍콩문제 해결방안으로 『1국양제』 구상을 제시
- '82.9 대처수상의 중국 방문시 덩소평은 홍콩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입장(주권회복, 홍콩번영·안정유지)을 밝히고 장래 대만통일을 의식, 특히 주권문제는 토론대상이 아님을 천명
- '82.12 중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을 위해 홍콩에 특별행정구를 설치, 내지와 다른 체제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국가는 필요시 특별행정구를 설치하며 특별행정구내에 실시할 제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1조)
- '82. 9부터 2년간 22회의 협상끝에 중·영 양국은 『홍콩문제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홍콩장래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84.12.19)

< 공동선언 요지 >

- 영국은 '97.7.1 홍콩을 중국에 반환
-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할 때 중국헌법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를 설치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정부에 귀속되며 외교 및 국방사무는 중앙정부에서 관리,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가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
-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입법권·독립적인 사법권과 중심권을 가지며 현행 법률은 기본적으로 불변
-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현지주민으로 구성, 행정부 장관은 현지선거 또는 협의에 의해 선출되며 중앙정부가 임명
- 홍콩의 현행 사회·경제제도 및 생활방식 불변, 홍콩특별행정구는 주민의 제반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 사유재산·기업소유권·합법적 상속권 및 외국투자 법적 보호
-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과 독립관세구역의 지위를 유지
- 홍콩특별행정구는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외환·황금·증권·선물 등 거래시장을 계속 개방하며 자금의 출입자유, 홍콩달러의 계속 통용 보장

-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세금을 불징수
- 홍콩특별행정구는 영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과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유지, 홍콩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홍콩』의 이름으로 단독적으로 세계 각국, 각 지역 및 해당 국제기구와 경제·문화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협정 체결 가능
- 이상 기본방침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특별행정기본법으로 규정하며 50년간 불변 (첨부자료 4 참조)

※ 중국과 포르투갈은 『마카오에 관한 공동성명』('87.3)을 통해 마카오를 19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기로 합의(홍콩 방식 준용)

가. 양국의 입장

2. 중·영 관계와 홍콩문제

< 중 국 >

- 중국은 공동선언이후 대홍콩정책의 기초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목표를 설정
 - ① 본토 귀속과 관련 주도적 역할 수행
 - ② 완벽한 주권이양 실현

-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세금을 불징수
- 홍콩특별행정구는 영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과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유지, 홍콩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홍콩』의 이름으로 단독적으로 세계 각국, 각 지역 및 해당 국제기구와 경제·문화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협정 체결 가능
- 이상 기본방침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특별행정기본법으로 규정하며 50년간 불변 (첨부자료 4 참조)

※ 중국과 포르투갈은 『마카오에 관한 공동성명』('87.3)을 통해 마카오를 19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기로 합의(홍콩 방식 준용)

가. 양국의 입장

2. 중·영 관계와 홍콩문제

< 중 국 >

- 중국은 공동선언이후 대홍콩정책의 기초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목표를 설정
 - ① 본토 귀속과 관련 주도적 역할 수행
 - ② 완벽한 주권이양 실현

- ③ 홍콩은 성공적인 『1국양제』의 실험장으로 운영
- ④ 홍콩의 경제적 활기를 유지, 중국경제 발전에 기여

<영국>

- 홍콩과 관련, 자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중국과 우호관계 유지
- '97년까지 홍콩을 효과적으로 통치
- 정치개혁을 통해 홍콩인의 자치능력 제고

나. 홍콩의 민주화와 경제운영

-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영국은 홍콩의 정치개혁과 관련 참여하게 대립

<정치개혁>

- 영국은 '97년 이후 홍콩인의 자치보장 방편으로 홍콩의 민주화 정치개혁을 시도
 - 대의체제를 선호하는 홍콩인의 여론존중 입장 견지
- 중국은 홍콩의 민주화를 자국 체제변화 압력으로 인식, 이에 반대
 - 홍콩에서의 영국의 독자적인 주도권 행사 불원

< 경제운용 >

- 홍콩항만 및 공항개발과 관련 중·영간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양상 표출
- 그러나 양국은 상호대립 및 홍콩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홍콩의 정치·경제·사회적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동인식하에 상호 충돌을 가급적 회피
 - 궁극적으로 접수주체인 중국의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되는 방향에서 제반문제 해결 추진

다. 홍콩주민의 불안증대

- 홍콩의 중국귀속이후의 체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홍콩인들의 자본해외 유출과 이민이 증가
- 최근에는 홍콩주민의 해외이주가 천안문사태(89.6) 직후인 90년 수준으로 재차 증가(90년 6만 2,000명→93년 5만 3,000명→94년 6만 2,000명)
 - '84년 반환결정 이후 홍콩을 빠져나간 사람은 전체인구의 10%에 해당(약 50만명)
 - 특히 해외이주 노동력중 57.8%가 전문직업인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두뇌유출현상이 심화
- 특히 홍콩 침례교대학이 홍콩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95.7.15) 중국정부(20%), 홍콩정부(21%)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저조

- 51%가 중국귀속(42%)보다는 독립이나 현재와 같은 영국령으로 남기를 희망하는 등 향후 홍콩 정치체제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표출

* '95년 입법위원 총선에서 직선 지역구의 경우 민주세력이 16석 친중세력이 2석 차지

- o 경제면에서도 전문직업인의 홍콩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천안문 사태(89.6) 직후나 걸프전(91.1)때 보다 떨어지는 등 장래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3. 97년이후 홍콩·대만관계에 대한 중·대만의 입장

- o 중국이 97년 이후 홍콩·대만관계와 관련 『1국 양제』 방침하에 현재의 관계유지를 강조한 『7개항 기본원칙』을 발표('95.6.22)한데 대해 대만은 동 원칙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용의를 밝히면서도 『1국 양제』에는 반발

< 중국측의 '7개항 기본원칙' >

- o 홍콩·대만간 기존 민간교류와 왕래관계는 기본적으로 불변
- o 대만의 홍콩내 투자·무역 등 경제활동과 권익은 법률로 보호
- o 『1개중국』 원칙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와 대만지구간의 항공·해운노선은 『지역특수항로』로 관리·운영

- 51%가 중국귀속(42%)보다는 독립이나 현재와 같은 영국령으로 남기를 희망하는 등 향후 홍콩 정치체제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표출

* '95년 입법위원 총선에서 직선 지역구의 경우 민주세력이 16석 친중세력이 2석 차지

- 경제면에서도 전문직업인의 홍콩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천안문 사태(89.6) 직후나 걸프전(91.1)때 보다 떨어지는 등 장래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3. 97년이후 홍콩·대만관계에 대한 중·대만의 입장

- 중국이 97년 이후 홍콩·대만관계와 관련 『1국 양제』 방침하에 현재의 관계유지를 강조한 『7개항 기본원칙』을 발표('95.6.22)한데 대해 대만은 동 원칙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용의를 밝히면서도 『1국 양제』에는 반발

< 중국측의 '7개항 기본원칙' >

- 홍콩·대만간 기존 민간교류와 왕래관계는 기본적으로 불변
- 대만의 홍콩내 투자·무역 등 경제활동과 권익은 법률로 보호
- 『1개중국』 원칙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와 대만지구간의 항공·해운노선은 『지역특수항로』로 관리·운영

- 대만인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에 따라 홍콩출입과 취업·취학이 가능하며 중국은 출입증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
- 홍콩특별행정구의 교육·과학·문화 분야 등의 민간단체와 종교조직은 대만의 관련 민간단체·조직과 관계를 계속 유지
- 홍콩특별행정구와 대만간 공식적인 접촉·왕래·상담·합의서 서명·기구설립은 중국정부의 동의가 필요
- 현재 홍콩내 대만 기구와 인원은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엄격한 준수하에 계속 잔류 가능
 - * 현재 형식상으로 민간 기구인 『중화여행사』가 대만 대표부 업무를 수행

< 대만측 입장 >

- 이등회 총통은 『6개항 대중국정책』 발표('95.4.8)를 통해 『홍콩·마카오의 번영 유지와 민주화 촉진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조, 장차 홍콩·대만관계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의지를 천명
- 중국측의 『7개항 원칙』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홍콩의 번영유지에 중·대만양측의 입장이 일치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
 - 정치적으로는 『1국 양제』 원칙 강조가 『대만문제의 홍콩화』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4. 중국의 홍콩접수 준비동향

- 최근 중국은 홍콩 접수(97.7)를 1년반 정도 남겨두고 영국과의 일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접수준비 작업을 순조로이 추진

< 정치·군사분야 >

- 『패튼』 총독이 구·시·입법국 의원선거를 사실상 직선제화 하는 민주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일방적으로 홍콩접수 준비업무 기구를 예정(96년)보다 앞당겨 구성(93.7), 5개 분과위별로 활동을 본격화
 - 표면상으로는 접수 즉시 동입법기구 폐지를 경고하면서도 구·시·입법국 등 각급 의회에 친중인사를 다수 진출시키기 위해 배후지원 노력을 강화
- 홍콩업무 자문위원(141명)·구 업무자문위원(537명) 등의 대거임명과 정당결성(94.4 『홍콩진보연합』) 등을 통해 홍콩내 친중세력 부식과 친중정책 유도를 위한 기반형성에 주력
- 접수이후 홍콩내 공산당을 조직하여 행정에 관여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유능한 당 간부들을 선발, 영어·법률·국제무역 등을 학습시키고 해외 단기연수도 추진
- 당 중앙군사위 직속으로 『6.30 사무실』을 설치, 접수 이후 홍콩에 주둔시킬 『홍콩수비군』의 조직·임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병력을 이미 선발·교육중

- '95.12.28 중국은 '96. 1부터 제1기 정부와 임시 입법회 구성, 홍콩의 토지·건물 처리, 법제도 정비 등을 총괄·조정할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를 구성
- 향후 홍콩의 중국귀속 관련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음.
 - '96. 1/4분기 : 초대장관 선거위원회 구성
 - '96. 3/4분기 : 초대장관 선출
 - '96년 말 : 임시 입법회 선출
 - '97. 6.30 : 기존 입법국 해산
 - '97. 7. 1 : 주권이양식(반환 완료)

<경제분야>

- 중국계 기업이 홍콩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할을 점하고 있고 중국의 대홍콩투자도 1,800개 기업 230억불(94년)로 최대 투자국인데다 중국은행은 홍콩화의 발권업무를 개시(94.5)
- 홍콩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세계 전체의 74%(93년 818억불)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화교기업을 활용한 홍콩자본 유치 활동을 적극화
- 신공항건설 재정조달협정 조인(94.11), 홍콩·중국내륙간 접경지역 대형 SOC건설사업 조정공동기구 설립(94.12) 등 접수후 홍콩과의 공동사업 추진기반 조성 및 이해충돌 방지 등 사전대비태세 구축

< 사회·언론 등 기타 분야 >

- 천안문 광장에 홍콩 접수 잔여일수를 표시하는 시계탑을 설치(94.12), 주권의식 고양과 홍콩 회복 압박 분위기 조성
- 기밀사항 혹은 반 중국적 내용보도를 이유로 홍콩의 快報(92.10)·鏡報(93.9)·明報(94.3)기자 구속, 중국계 기업의 광고 게재 금지(新報), 중국내 구독금지(明報·홍콩스탠더드), 친중국 인사의 경영권입수(SCMP·明報) 등 홍콩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를 시도

5. 홍콩의 장래 전망

- 중국은 홍콩의 안정과 번영(일국양제 성공)에 매우 큰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어 홍콩의 안정·번영 유지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
 - 중국은 최종목표인 대만과의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홍콩과의 통합을 성공시켜야 할 필요성과 함께 자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홍콩의 중요성을 인식
- 이에따라 중국이 향후 고도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개발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홍콩귀속후에도 기본적으로 현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홍콩이 『1국양제』 실험장으로 경제적 번영을 지속, 대만통일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

< 사회·언론 등 기타 분야 >

- 천안문 광장에 홍콩 접수 잔여일수를 표시하는 시계탑을 설치(94.12), 주권의식 고양과 홍콩 회복 압박 분위기 조성
- 기밀사항 혹은 반 중국적 내용보도를 이유로 홍콩의 快報(92.10)·鏡報(93.9)·明報(94.3)기자 구속, 중국계 기업의 광고 게재 금지(新報), 중국내 구독금지(明報·홍콩스탠더드), 친중국 인사의 경영권입수(SCMP·明報) 등 홍콩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를 시도

5. 홍콩의 장래 전망

- 중국은 홍콩의 안정과 번영(일국양제 성공)에 매우 큰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어 홍콩의 안정·번영 유지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
 - 중국은 최종목표인 대만과의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홍콩과의 통합을 성공시켜야 할 필요성과 함께 자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홍콩의 중요성을 인식
- 이에따라 중국이 향후 고도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개발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홍콩귀속후에도 기본적으로 현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홍콩이 『1국양제』 실험장으로 경제적 번영을 지속, 대만통일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

-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 불구하고 향후 중국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홍콩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중국정치의 안정과 개방·개혁의 지속이 홍콩주민의 장래 체제에 대한 불안감 해소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앞으로 중국과 영국은 양국 모두 홍콩의 동요와 파국을 바라지 않고 반환 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다 시간적 여유마저 없기 때문에 이양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계속 도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

1. 이론 배경

가. 덩소평의 주장이론

- '60년대 덩소평은 중국사회 발전방법으로 『노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기만 하면 좋은 고양이다』(黃貓黑貓 只要捉住老鼠是好貓)라고 주장
 - 『생산력 발전에 유리하기만 하면 모든 방법과 수단 이용 가능』

- 『4인방』을 분쇄, 최고실권을 장악한 덩소평은 '82. 9 사회주의 건설문제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보편적인 원리와 중국의 구체적 실제상황을 결합, 자신의 길을 가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

- 이를 위해 『경제건설』과 『4항 기본원칙』 및 『개방·개혁』 노선을 제시
 - 『4항 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이라는 두가지 기본점(양개 기본점; 2개의 바퀴)은 서로 의존하면서 모두 『경제건설』이라는 하나의 중심(일개중심; 마차)에 봉사

 - ※ 『4항 기본원칙』 : ① ML, 모택동사상 견지, ② 당의 영도권 견지, ③ 무산계급독재 견지, ④ 사회주의 총노선 견지

- 경제건설(4개 현대화)의 관건은 생산력 증대이며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경제·정치체제, 사상문화, 교육분야에서의 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해 자본과 기술을 적극 도입

- 등소평은 중국 개방·개혁의 『설계총수』로서 경제면에서는 『개혁의 심화와 개방의 확대』를 계속 주장하면서도 정치면에서는 『4항 기본원칙』 견지 입장을 고수

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내용·특징

- o 등소평이 주창한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주요 논술이론의 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주요내용 >

- ①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에만 특유한 것이 아님. 봉건사회에 시장경제의 맹아가 있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경제 실시 가능
 - ② 계획과 시장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분이 아님.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음.
 - ③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수단임.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를 결합, 이 방법으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임.
 - ④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방법과 기본상 자본주의와 유사함. 그러나 다른점은 시장경제가 자원배치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방법과 수단이라는 점임.
-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을 위해 사회주의는 옹당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결합시켜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이론에 기초한 중국특색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특징을 지니고 있음.

< 기본특징 >

- 공유제를 기초로 하고 다종의 경제성분이 병존
- 국유자산 재산권의 명확성, 즉 반드시 국유자산의 소유자 대표를 명확히 함.
- 노동력·자본을 포함하는 일체의 생산요소를 상품화
- 시장메커니즘을 자원배치의 기본형식으로 함.
-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로 하고 자본금에 따른 분배 및 기타 분배형식이 병존
- 시장의 충분한 발육의 기초위에서 시장조절과 계획조절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
- 계획조절은 직접적인 행정수단 위주가 아니라 간접적인 경제수단을 위주로 함.

2.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추진

- '78년 이후 위와 같은 덩소평의 이론과 주장에 따라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

- 이와 같은 이론에 기초한 중국특색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특징을 지니고 있음.

< 기본특징 >

- 공유제를 기초로 하고 다종의 경제성분이 병존
- 국유자산 재산권의 명확성, 즉 반드시 국유자산의 소유자 대표를 명확히 함.
- 노동력·자본을 포함하는 일체의 생산요소를 상품화
- 시장메커니즘을 자원배치의 기본형식으로 함.
-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로 하고 자본금에 따른 분배 및 기타 분배형식이 병존
- 시장의 충분한 발육의 기초위에서 시장조절과 계획조절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
- 계획조절은 직접적인 행정수단 위주가 아니라 간접적인 경제수단을 위주로 함.

2.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추진

- '78년 이후 위와 같은 덩소평의 이론과 주장에 따라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

- '79-'92 13년간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8-9% 성장을 기록
- '93년이후 년 10% 이상의 경제성장 지속

<1단계> : '78~'83

- 우선 농업에서 시작하여 기존의 농촌경제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聯産책임제 도입, 다양한 경영방식 허용
- 향진기업 육성 등을 통해 농·공·상의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를 확립
- 동시에 남북 연안지역에 선별적으로 경제특구를 설립하여 대외개방을 시범적으로 추진

<2단계> : '84~'92

- 주로 도시공업경제 관리체제의 개혁을 통해 청부경영책임제를 실시
- 기업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국가의 지령성 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시장조절기능을 도입
-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14개 연해도시를 개방하고 연해지구 발전전략을 적극 추진

<3단계> : '92~현재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을 기본목표로 철저하고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추진

- 개혁·개방정책의 기본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두고 급진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아래 경제구조 개혁과 연안지역 우선 개발 및 대외개방 확대정책을 추진

- 『기회를 잡아 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 경제발전 촉진 및 안정을 유지』

(급진성장 위주의 발전)

- '92년 봄 등소평의 『南巡講話』(첨부자료5)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안정위주에서 급진성장 위주로 선회

-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심화를 위해 헌법을 수정하고 성장목표를 재조정

- 헌법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일한 국정노선으로 채택 (계획경제, ML주의와 제국주의론 삭제)

- '95년에 끝나는 8차 5개년계획과 10개년 발전계획('91~'99)의 연평균 GNP성장율을 6%에서 8-9% 목표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기간도 2000년에서 1997년으로 3년 앞당김.

(경제개혁의 심화)

- 중국은 기존의 경제성장 목표를 3년 앞당김으로써 경제개혁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 여러부문에 걸쳐 경제개혁을 심화

- 국영기업 민영화, 금융구조 개선, 기간산업 구조조정, 가격체계 자율화, 국방산업의 민영화 추진

(대외 경제개방의 심화)

- 중국은 '80년대 추진된 대외 개방정책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대외 개방정책을 지속 추진
- 선진국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무역 및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개방적 지역주의(화남경제권 · 동북아경제권 · APEC 등) 형성에 참여

3. 개혁 · 개방의 제약 · 촉진요인

- 현재 중국의 개방 · 개혁정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반요인에 따라 향후 노선과 그 성패가 결정될 전망

— < 제약요인 > —

- 대외 :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인권 · 영토문제 거론 등 내정간섭
세계경제 침체와 중 · 미간 무역통상마찰
중국의 군비증강 노력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
- 대내 : 국영기업의 적자경영 및 국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압박(민간경제부문 투자 감소)
지역간 소득수준과 발전정도의 차이로 인한 갈등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통제 · 조정권 약화
동소평사후 정치불안 야기가능성과 군부영향력 강화
고속성장 · 물가상승(2高), 에너지 부족 · 수송난(2緊), 산업시설기반 및 금융질서 혼란(2亂)과 부정 부패 심화

(대외 경제개방의 심화)

- 중국은 '80년대 추진된 대외 개방정책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대외 개방정책을 지속 추진
- 선진국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무역 및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개방적 지역주의(화남경제권 · 동북아경제권 · APEC 등) 형성에 참여

3. 개혁 · 개방의 제약 · 촉진요인

- 현재 중국의 개방 · 개혁정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반요인에 따라 향후 노선과 그 성패가 결정될 전망

— < 제약요인 > —

- 대외 :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인권 · 영토문제 거론 등 내정간섭
세계경제 침체와 중 · 미간 무역통상마찰
중국의 군비증강 노력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
- 대내 : 국영기업의 적자경영 및 국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압박(민간경제부문 투자 감소)
지역간 소득수준과 발전정도의 차이로 인한 갈등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통제 · 조정권 약화
동소평사후 정치불안 야기가능성과 군부영향력 강화
고속성장 · 물가상승(2高), 에너지 부족 · 수송난(2緊), 산업시설기반 및 금융질서 혼란(2亂)과 부정 부패 심화

⇒ 이는 개혁·개방정책에 지장을 초래, 안정화 정책으로
선화가능성

— < 촉진요인 > —

- 대외 : 강대국의 대중국 군사위협 감소
역내국가간 경제협력관계 증진으로 상호의존성
증대
아·태지역 경제의 비약적 성장지속 가능성
- 대내 : 중국 국민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만족감과 지지
집권층의 세대교체로 실리와 효율성 중시정책 추
진
정권안정과 체제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이 필요
하다는 집권층의 인식

⇒ 단기적으로는 경기과열과 물가상승 등으로 개방·개혁
속도에 차질이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제약요인보다
촉진요인이 강하게 작용, 점진적인 경제발전 달성 전망

4. 최근 개방·개혁관련 주요동향

경제동향과 전망

- 중국경제는 지난 3년여의 경기 과열상이 진정되고 무역흑자 폭도 지속 증대됨으로써 95년중에 GDP 6,000억불(세계 7위) 돌파와 함께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도약 예상

가. 관련 동향

< 생산·투자 >

- '95년 1-9월중 국내총생산(GNP)은 전년동기비율 9.8% 증가한 3조 6,495억원(4,390억불)을 기록, 4년만에 두자리수에 못 미치는 안정 성장세를 유지

* 95년 3대 경제현안 : 농업 진흥, 국유기업 개혁, 물가안정

- 공공투자(820억불)는 국무원이 연해 8개 성·시에 투자실태 조사반을 파견하여 부동산 개발 등 불요불급한 투자를 억제해 온 결과, 전년동기비율 26.3포인트나 하락한 17.6%선에서 안정

< 통화·물가 >

- 통화(M2) 증가율은 금리 인상, 저축장려(저축률 35%로 세계1위) 및 금융긴축을 통한 통화환수·대출억제 등으로 94년말 34.4% 보다 다소 줄어든 30.6%를 기록

- 물가 상승률은 '95. 4월이후 남부 수해·북부 가뭄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공공요금 동결, 성·시장 물가책임제 실시 등으로 3년만에 하락세로 반전

* 물가 상승률 : 92년 5.4%→ 93년 13.2%→ 94년 21.7%→
95년 상반기 18.5%→ 95.1-9월 16.6%

< 대외경제 >

- 대외무역(1,976.6억불)은 수출(1,070.4억불)이 노동집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34.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수입(906.2억불)은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16.2% 증가

- 무역수지가 개혁·개방이후 사상 최대인 164.2억불의 흑자를 기록

* 무역수지 추이 : 93년 122억불 적자→ 94년 53억불 흑자
→ 95.1-9월 164.2억불 흑자

- '95 1-9월간 외자유치 실적은 정부의 첨단산업위주 선별도입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483억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

- 실제도입액(254억불)도 연평균 100%내외의 폭증세를 나타냈던 91-93년간 계약분의 착실한 집행으로 전년동기대비 11.9%의 증가세를 유지

- 외환보유고는 무역흑자 및 외자유치의 증가로 94년말 대비 182억불 증가한 698억불을 기록

- 전반적으로 거시조정정책과 경제구조 조정에 힘입어 재화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물가 등급락과 같은 경제발전의 부정적 요인이 감소

나. 중국의 경제력 실상

- 개혁·개방이후 16년(79-94년)간 년평균 9.3%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미달러베이스 국내총생산(GNP)은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미국의 1/11 수준인 약 5,500억불
-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大中華』(중국·대만·홍콩)의 GDP도 미국의 1/7 수준인 약 9,000억불에 불과
- 반면 교역규모는 지난 16년간 11배 급증(78년 206억불→94년 2,367억불)하여 세계 32위에서 11위로 급부상
 - 최근 연평균 20%대에 이르는 신장세로 미루어 금세기내로 미·독·일에 이어 4위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

다. 평가 및 전망

- 최근 중국경제는 일부 서방권 언론·학계의 예상과는 달리 등소평의 남방순시('92.1)이래 지속되어 온 고성장·고물가의 과열상이 진정, 『연착륙』(Soft Landing)의 가능성이 증대
 - 미·EU 등과의 통상마찰에 따른 수출입 균형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가 대폭 확대

- 앞으로 중국경제는 대내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와 국유기업의 경영부진(1/2이 적자) 및 '95.4이후 양자강 대홍수와 북부가뭍에 따른 추곡작황의 불확실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
 - 대외적으로도 무역흑자 급증에 따른 미·EU 등과의 통상마찰 심화가 우려되고 WTO가입을 위한 추가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

- 그러나 지난 17년간의 개혁·개방으로 고물가·통상마찰 등에 대한 적응력이 강화되고 강택민 지도부도 확고한 안정·균형정책 추진 방침을 거듭 천명
 - 등소평사망에 따른 정국혼란 등 돌발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10% 내외의 내실성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

경제특구 우대정책 조정

-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의 상징인 경제특구가 고도성장의 선도 등 공헌에도 불구하고 연해·내륙간 개발격차 심화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특혜조치의 축소·폐지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추진

가. 경제특구 운영실태

-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경제특구 설치 방침을 마련('79.4)

- 광둥성의 심천·주해·산두('80.8) 및 복건성의 하문('80.10) 등을 경제특구로 설정

- 해남도를 30번째 성으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5번째 경제특구로 지정('88.4)

- ※ 대표적인 심천특구는 '80년 2,500여명의 어촌에서 '95.7 현재 340여만의 대도시로 발전

- '85년이래 경제특구는 중국전체 외자투자액(실행기준)의 약 20%를 점유해 왔으며, '89년에는 28%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중국정부의 부동산분야 외자도입 억제조치로 '94년에는 18%로 저하

- * 중국의 외자유치실적 : '91년 72억불→'92년 110억불→'93년 260억불→'94년 338억불

- 한편 경제특구는 전체 수출의 약 14.7%를 차지하는 등 교역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나. 기존의 경제특구 우대조치

- 외국자본, 특히 하이테크·에너지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3,00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우대 조치를 제공

- 기업 소득세율은 15%이나 이익발생 년도부터 2년간은 완전 면제하고 5년째까지는 반감하며 지방소득세(세율 3%)도 면제

* 경제특구 이외지역의 기업소득세율은 국유기업 및 합자기업을 막론하고 33%를 적용

- 외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자재 생산설비, 수출용 원자재 및 외국기업의 사무용기기·생활용품 수입은 면세

- 외자기업에는 제품수출을 통한 외화의 자유통달을 허용

- 제품의 국외수출시 세금이 면제되고 이익의 본국 송금도 허용되며 노동자의 고용·해고, 임금결정 등 노무관리면에 대폭적인 자유재량권 부여

다. 경제특구 우대정책 조정동향

- 최근 중국정부는 경제특구에 부여해온 특혜조치가 지역간 개발격차를 가중, 불평등 경쟁 및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경제특구 우대정책 조정을 모색
 - 경영이 부실한 국유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국유기업에 상대적으로 중과해 온 세율의 인하 검토
 - 경제특구내 외자기업에 제공해 온 자동차·사무용기기의 면세조치를 철회
 - * '94.1 자동차에 이어 '95.1 사무용기기에 대한 면세제도 철폐
 -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경제개발구에 대한 우대 조치도 시정할 계획
- 이랍청부총리는 중앙정부가 경제특구 개발에 있어 특혜조치 보다는 국제기준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표명('95.4)
- 특히 중국 국무원산하 경제특구 판공실은 경제특구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는 대신 경제개발구 및 보세구 투자를 장려
 - * 중국정부는 경제특구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확대·제공키 위해 14개 연해도시를 『연해개방도시』로 지정('84.8)한 이래 내륙 『국경개방도시』등 현재 30여개 경제개발구를 운영중

- * '90년대들어 중국정부는 『특구중의 특구』로 지칭되는 보세구를 외고교·청도 등 13개지역에 개설, 수출가공기지 및 외자기업의 주 활동권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 내륙·연해지역간 개발격차 시정을 위해 내륙·양자강 유역 등에 보세구를 설치하고 경제개방구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95. 6. 9)
- 최근 중국의 경제특구 우대정책 조정의 특징은 경제특구 개발정책에 있어서 특혜조치를 통한 외자유치 정책에서 탈피, 『내·외기업간 차별철폐』를 통한 국제관행을 적용
 - 경제특구에 진출하고 있는 외자기업에 대한 면세조치 철회 등 우대조치 폐지와 함께 개방구·보세구 확대를 통해 외국인투자의 내륙지역 확산을 유도
- * 중국은 향후 2년내 경제특구진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33%의 기업 소득세율을 부과할 계획

개혁·개방 부작용 심화

- 중국은 개혁·개방('78.12) 이후 년평균 9.3%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경기 과열과 물가고, 소득격차 심화, 인구도시 유입 급증 및 국유기업의 만성적 경영난 등의 부작용이 날로 심화

가. 경기과열과 물가고

- 체제변혁과 고도성장정책 추진에 따라 경기과열이 되풀이되면서 부르조아 자유화운동('86.11), 천안문사태('89.6)와 같은 정치·사회적 혼란 야기
- 특히 등소평의 남순강화('92.1)이후 개혁·개방 가속화에 따라 생산·소비·무역 등 경제 전반이 과열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소비·매점매석 등 물가오름세 심리가 확산
 - '78년 0.7%에 불과했던 물가 상승률이 '84년 2.8%, '88년 18.5%, '94년 21.7%로 상승폭이 급속 확대

나. 소득격차 심화 및 인구 도시유입 급증

- '80년대 중반이후 도시·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개혁 초기에 축소되었던 도시·농촌간, 연안·내륙간 소득 격차가 확대
 - '94년도의 경우 도시 3,179원, 농촌 1,220원(연평균 소득)

- 이에 따라 농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어 이농 현상(1억 1,600여명)이 속출하고 농민 소요가 빈발함으로써 공산당 통치의 뿌리가 되어 온 농촌조직이 동요('94.12 현재 촌당지부의 36%만 기능 유지)
- 이농인구의 무작정 도시유입으로 범죄증가는 물론 교통·주택·실업난이 심화되고 지난 40여년간 사회통제의 근간이 되어온 『호구제도』(거주지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이전의 자유를 제한)도 효능을 상실

다. 국유기업의 경영난 및 적자 심화

- 국유기업은 개혁·개방 이후 민간·외자 기업의 비중 증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철강·자동차 등 대형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국가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
- 그러나 『3鐵제도』의 폐해로 전체기업의 1/2이상이 만성적 적자상태에 처해있으며 개혁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어 구조적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3鐵 : 종신고용(鐵밥통), 동등임금(鐵임금), 직위보장(鐵의자)

- '94년의 경우에도 민간·외자기업이 28%, 주식제와 경영책임제 등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 집단 기업이 21.4%의 고성장을 기록한 반면 국유기업은 5.5% 성장에 불과

라. 사회주의 가치관 붕괴 및 민주화욕구 증폭

- 고도성장과 개발붐에 편승한 부정부패 및 배금풍조·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사회적 위화분위기 증폭
- 정경 유착 및 인·허가권을 둘러싼 공직자 부정부패가 총체적 양상으로 표출되고 부동산·증권투기, 밀수·매춘·마약 등 각종 사회범죄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 사회주의 가치관도 동요
- 위성TV 수신, 해외유학생 귀국, 외자기업 증가 등에 따른 서방사조의 유입 및 소·동구권 붕괴의 영향으로 그간 소수 지식인층에 국한되어온 민주화 욕구가 점차 노동자·농민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
 - 위글족(이슬람교)·티베트족(라마교) 등 변방 소수 민족의 누적된 정치·종교적 불만 또한 반정부 시위로 표출
- 이와 같은 중국의 개혁·개방 부작용 심화현상은 지난 60-70년대 개발독재형 산업화정책을 추진해 온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비례하여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었던 것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정치보수·경제개방』 노선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

중앙 · 지방간 갈등

- 최근 중국에서는 개혁 · 개방정책으로 부를 축적한 연해지역 성 · 시에서 중앙의 조치와 지시를 외면하는 사례가 빈발, 중앙 · 지방간 갈등관계가 심화되면서 등소평이후 정세 주요변수로 부각

가. 지방정부의 중앙지시 불이행 실태

- 광둥 · 복건성을 중심으로 한 화남권은 중앙정부가 원유 공급 가격 대폭 인상조치('93.1 배럴당 5불→15불)를 단행한데 반발, 국제 현물시장에서 원유를 직접 도입하는 등 독자적으로 대외거래
 - 중앙의 긴축정책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경제성장 목표를 중앙방침('94년 9%)보다 높게 설정(광둥성: 15%)
- 내륙지방은 연해 선진지역의 타성 노동자 유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대한 보복으로 중앙의 지시를 묵살하고 원자재 · 물품 및 식량 반출을 규제하는 지역 봉쇄조치를 단행
 - * 곡창지대인 하남 · 산둥성은 옥수수 100만톤을 남부 연해지방에 보내라는 중앙지시를 거부('95.1)
- 또한 각 지방에서는 공통적으로 중앙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쟁적으로 공단을 설치, 외자를 유치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불법 양도하는 사례가 빈발

- 지방 대의원들이 전국 규모의 성장선거('93.1) 또는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선거('94.3 광동성 심천시)에서 당중앙 지명 후보를 외면하고 자체 추천한 인물을 선출, 중앙권위에 도전

나. 중앙정부의 대응조치

- 강택민 총서기를 비롯한 이방 총리 등 중앙지도부는 지방 현지 지도 강화·특별감사반의 수사 파견을 통해 중앙·지방간 정책상의 보조 일치와 지방지도자의 인식개선을 촉구
 - 중앙의 경기과열 진정 조치와 농민부담을 경감시키라는 지시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
- 『간부교류』와 정년제(성장급 65세) 확대실시를 명분으로 지방 당·정·군 지도자에 대한 대대적 인사개편을 통해 지방 유력지도자를 중앙요직에 발탁, 중앙과 지방간의 이해 조정자로 활용
- 지방정부의 인플레이 수습노력 미흡과 농민 소요사태 빈발 등의 책임을 물어 성장 등을 해임
- 지방 정치세력과 지방 군부세력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군 구사령관을 교체, 지역기반 약화를 도모
- 최근 중국 지도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는 개방지역 성·시의 자의적·경쟁적 개발 정책으로 지역 이기주의·경기과열 현상이 심화

- 이들 지방정부 세력이 군수업체를 경영, 경제력을 축적하고 있는 군부세력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지시를 경시하는 반중앙정부 세력으로 결집될 경우

-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구소·동구권 붕괴의 전철을 밟아 국가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증폭되고 있음을 반영

* 국무원산하 중국과학원은 정책보고를 통해 『지방주의 풍조를 조기 수습하지 못하면 덩소평 사망후 수년 이내에 티토이후의 유고 상황이 중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

○ 그러나 덩소평 사망후 중국에서는 강한 민족주의 성향과 문화혁명을 체험한 지도부의 혼란 불원, 강택민 중심 집단지도 체제 안정 등으로 중앙·지방 대립에 따른 분열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

○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 해결방안으로 2000년대에 『중앙은 정치·군사·외교권』을 관장하고 『지방은 대폭적 경제 자율권』을 가지는 『중앙 정치·지방 경제』의 중국 특유의 연방형태가 등장할 가능성

-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민족문제와 통일문제, 그리고 중앙·지방간의 갈등해소 방편으로 연방제를 주장

식량 수급사정 악화

- 중국은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곡물생산이 급격히 감소되어 94년 1,500만톤이었던 곡물수입량이 95년에는 2,000만톤으로 확대, 곡물수출 전면중단과 함께 정부비축물량 긴급방출 조치를 강구

가. 식량수급 실태

- 개혁·개방정책 실시(78.12)이후 『생산책임제』 도입(80.9)등 획기적인 영농방식 개선을 통해 곡물생산의 지속적인 신장세를 이룩, 84년에 최초로 4억톤을 돌파하여 식량의 자급을 실현
-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농민의 고수익 경제작물 재배 선호, 농지의 산업용지 전환에 따른 경작지 감소 및 이농현상 등으로 곡물생산량이 다시 정체
- 천안문사태(89.6)이후 영농 기계화 및 다수확 품종 개발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90년부터 연속풍작을 기록했으며 92년부터는 잉여곡물의 수출도 시행
- 그러나 '95년에 들어와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및 경작지 축소 등으로 인해 곡물생산이 감소, 상반기에만 64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등 올해 약 2,000만톤을 수입

- '94년도에는 총 1,5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였고, '95년도에는 쌀·옥수수 등 주요곡물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95.7)에 이어 7월이후 국가비축용 곡물(150만톤)을 긴급 방출
- 지방에서도 상해시와 강소성 등 연해 11개성에 대한 지방 정부 비축 육류방출은 물론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자강유역에 정부수립(49.10)이후 최초로 사료 200만톤을 긴급 수송키로 하는 등 식량사정이 점차 악화

< 중국의 곡물생산 추이 >

(단위:만톤)

구 분	86 년	88 년	90 년	92 년	93 년	94 년
생산량	39,151	39,408	44,624	44,266	44,648	44,450
수출량	942	718	583	1,364	1,535	800
수입량	773	1,528	1,372	1,175	752	1,500

* 최근 UN 인구기금은 중국이 2030년경 인구증가(현재보다 4억 9,000여만명 증가),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식량생산이 20% 축소됨으로써 연간 식량 수입량이 2억톤을 초과, 국제곡물 가격폭등 등 세계적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나. 식량증산 추진

- o 2000년 5억톤, 2020년 6억 7,500만톤의 곡물을 생산한다는 『장기식량생산·자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매년 1,500만톤의 식량증산을 적극 추진

- 산업화에 따른 농경지잠식 방지 및 대대적인 황무지 개간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확대하고 수리·관개시설 확충 등 산업기반시설 강화 및 품질·품종개량 사업을 적극 지원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농과학기술의 개발·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94-2000년간 선진영농·농가공기술 도입비 300억 불배정 및 농업분야 외자도입도 확대
- 한편 인구증가로 인해 식량 자급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구억제 정책도 강력히 실시
- 중국의 식량수급 악화 추세는 성장우선정책에 따른 농지의 산업용지 전환 등으로 경지면적이 축소(매년 23만ha)되고 이농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부 홍수·북부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곡물생산 감소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쌀과 및 소비의 대폭증가 등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함께 급격한 인구증가(증가율 1.12%, 년 1,500만명)로 인해 식량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
- 이와 같은 중국의 식량사정 악화는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흉작과 베트남의 쌀수출금지 조치 등과 맞물리면서 세계식량수급 악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집단시위 빈발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농민들은 최근 시위·파업·폭동 등 집단행동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 최근 중국지도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

가. 집단시위 확산 실태

< 노동쟁의 속출 >

- 94. 4 하순이래 임금체불·노동자 해고에 반발한 집단시위·파업이 대표적 공업지대인 흑룡강·길림·요녕성 등 동북 3성을 비롯, 전국 14개 성으로 확대
- 94. 9에는 북경시 국유기업 노동자 50여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 당 지도부의 집무실·주택이 소재한 중남해지역 신화문 앞에서 연좌 농성을 감행
- 94년중 근로자 3인이상이 제기한 단체 노동쟁의가 1,400여건으로 93년 684건(1만 9,500여명 참가)에 비해 배증
- 95년 들어서도 임금 인상·구정연휴 보장을 요구하는 파업(주해시)과 4개월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요녕성 심양시 국유기업근로자들의 가두 시위('95.4) 등이 잇따라 발생

<농민폭동 빈발>

- 93년이래 사천·안휘·호남·하남성 등 내륙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중과세·곡물수매대금 지급 연기에 반발한 사천성 인수현 농민 1만 5,000여명의 관공서·경찰차량 방화사건(93.6) 등 93년 상반기만 170여건의 폭동이 발생
- 지방관리의 재해 구조비 횡령에 격분한 광둥성 증성시 농민 3,000여명의 시청사 포위·도로점거(94.4) 등 폭력사태가 빈발
- 95년들어서도 공단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과정에서 보상비 인상을 요구하는 광둥성 주해시 농민 500명이 경찰과 충돌함으로써 쌍방간 50명의 부상자가 발생('95.1)

<기타 집단시위 사례>

- 상해시 중심가 노만구 주민 1,000여명은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시정부의 촉박한 퇴거기한 설정·이주 보상비 미흡에 항의, 가두시위를 전개('95.3)
- 문화혁명('68-78년) 당시 강소성 남경에서 양자강이북 농촌으로 강제 이주된 주민 1,500여명은 남경시로의 이주권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4차의 연좌농성 진행('95.3)

나. 지도부의 대응 조치

- 당중앙에서는 강태민 당총서기·이봉 총리·교석 전인대상무위원장 등 지도부가 잇따라 지방을 시찰

- 노동자·농민 고충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등 당·대중간 연대감 조성에 주력하면서 관리들에게 농민부담 경감, 노동자 권익보호 등 중앙시책의 철저 시행을 당부
- 국무원(정부) 차원에서는 임금 체불·초과근무 강요·부당해고 기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노동법』시행('95.1), 주 5일 근무제('95.5.1)·최저임금제(6.30) 도입을 통해 노동분규를 예방
 - 부실 국유기업 정리방침에 따라 부각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 보험제·직업훈련시설·해외 노무송출 확대를 도모
 - 농업투자 증대·농공단지 개발 촉진 등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농민의 생활수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 공직자 비리감사반 파견('95.6월초 - 7월말)과 함께 관리들에게 민원사항을 가능한 한 수용하되,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시달하는 등 대중 불만 무마에 진력

- 1920년경에는 약 50만의 조선족이 동북지구에서 거주

< 1920~1945년의 이민 >

-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산미증산계획(1920-1934)으로 토지와 가옥을 빼앗겨 빈곤과 파산에 직면한 조선농민들이 대거 중국이민 대열에 가담
 - 1931(만주사변)이후 중국 동북지역이 식민지화되면서 일제는 조선의 실업문제 해결(농촌과잉인구)과 만주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선농민들을 강제 이주
- 일제의 식민통치 수요에 따른 계획적인 관리이주로 1945년도에 중국내 조선인은 216만명에 달함.

2. 인구유동

- 중국내 조선족은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동북3성 지역 내외에서 인구이동 현상을 보여옴.

< 1단계 : 광복후 >

- '45년 조국의 광복을 맞은 수십만의 조선족들이 한반도로 이동
- '50년 6.25전쟁시 상당한 수의 조선인들이 남북한 지역으로 이주

- 이에따라 '53년도 중국의 제1차 인구조사시 중국내 조선족 인구는 110만명으로 집계됨.

< 2단계 : 1949~1978(개혁·개방 이전) >

- 이 시기 조선인들은 사람이 많고 땅이 적은 연변지역에서 땅이 넓고 사람이 적은 흑룡강성이나 길림지역으로 이동
- 반면, 문화대혁명 시기(68-78)에는 인구압박이 특히 심한 산동성과 사천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
 - 벌목과 탄광, 그리고 토목공사는 이들 산동출신 이주민들이 담당하였고, 많은 군대의 이동도 이루어짐.
 - 그 결과 현재 연변의 조선족자치주도 실제 인구구성에 있어서는 한족이 우세하고 각급 기관의 상위 간부직의 차지에 있어서도 한족이 우세

< 3단계 : 1978년(개혁·개방)이후 >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이주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동북3성의 조선족들은 연해의 개방도시, 대도시 등 중국전역으로 이동
 - 흑룡강성·길림성(연변자치주 제외) 인구의 급감
 - 주로 청장년(18세-30세 전후) 농촌인구가 이동

- 이에 따라 조선족 집거촌의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조선족의 한족으로의 동화현상이 가속화

3. 역사적 경험(행위양식과 의식구조)

- 조선족은 중국내 타 소수민족에 비해 정치·문화적으로 특별한 범주에 속함.
 - 한족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교육과 문화수준을 바탕으로 중국사회의 지식·기술분야에 진출
 - 기존의 영토를 가진 토착 소수민족이 아님
 - 한국이라는 모국의 존재로 한국에 대한 감정적 귀속감을 지님
- 조선족은 높은 문화·경제수준 등으로 중국의 성공적인 소수민족 정책의 표본으로 내세워 졌으나, 동시에 역사적 과정과 정치적 배경의 특수성으로 언제나 견제와 지도의 대상
 - 해방전 조선족은 한일투쟁에서 중국인과 협력하였고 중국 내란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전적이고 절대적인 협력 제공
 - 한국전쟁때에는 의용군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등 중국공산정권하에서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여겨짐

- 이에 따라 조선족 집거촌의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조선족의 한족으로의 동화현상이 가속화

3. 역사적 경험(행위양식과 의식구조)

- 조선족은 중국내 타 소수민족에 비해 정치·문화적으로 특별한 범주에 속함.
 - 한족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교육과 문화수준을 바탕으로 중국사회의 지식·기술분야에 진출
 - 기존의 영토를 가진 토착 소수민족이 아님
 - 한국이라는 모국의 존재로 한국에 대한 감정적 귀속감을 지님
- 조선족은 높은 문화·경제수준 등으로 중국의 성공적인 소수민족 정책의 표본으로 내세워 졌으나, 동시에 역사적 과정과 정치적 배경의 특수성으로 언제나 견제와 지도의 대상
 - 해방전 조선족은 한일투쟁에서 중국인과 협력하였고 중국 내란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전적이고 절대적인 협력 제공
 - 한국전쟁때에는 의용군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등 중국공산정권하에서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여겨짐

- 그러나 문화혁명때에는 조선족의 민족의식과 단결력은 반혁명주의로, 열심히 일해 잘사는 사람은 자본주의 앞잡이로, 남한에 친적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사람은 남조선스파이로, 공산정권에 충성한 사람은 기회주의자·출세주의자로 단죄됨.
- 이에 따라 조선족들은 오늘날 역사적·정치적 기류의 불확실성, 인심의 가변성, 국가앞에서의 개인의 무력함 등으로 불안위축되고 다소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노정

4. 민족과 모국의식

- 전반적으로는 그들은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중국공민으로서의 국가의식도 발달함.
 - 일상적이고 사적인 생활영역에서는 민족의식에 바탕을 두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중국의 공민으로서의 국가관 정립
 - 특히 젊은세대일수록 중국에의 귀속감이 강함.
-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일반적으로 조국에 대한 염원이 절박하며, 40-60대는 모국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이며 모국과의 연계성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 중국에서 상실된 그들의 위치에 대한 보상을 찾으려는 심리가 강함.
- 40대 이하의 젊은세대는 중국과 한국을 동등한 입장에 놓고 자신의 위치를 설정, 비판·요구·타협하려는 태도를 견지

- 그러나 문화혁명때에는 조선족의 민족의식과 단결력은 반혁명주의로, 열심히 일해 잘사는 사람은 자본주의 앞잡이로, 남한에 친적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사람은 남조선스파이로, 공산정권에 충성한 사람은 기회주의자·출세주의자로 단죄됨.
- 이에 따라 조선족들은 오늘날 역사적·정치적 기류의 불확실성, 인심의 가변성, 국가앞에서의 개인의 무력함 등으로 불안위축되고 다소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노정

4. 민족과 모국의식

- 전반적으로는 그들은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중국공민으로서의 국가의식도 발달함.
 - 일상적이고 사적인 생활영역에서는 민족의식에 바탕을 두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중국의 공민으로서의 국가관 정립
 - 특히 젊은세대일수록 중국에의 귀속감이 강함.
-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일반적으로 조국에 대한 염원이 절박하며, 40-60대는 모국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이며 모국과의 연계성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 중국에서 상실된 그들의 위치에 대한 보상을 찾으려는 심리가 강함.
- 40대 이하의 젊은세대는 중국과 한국을 동등한 입장에 놓고 자신의 위치를 설정, 비판·요구·타협하려는 태도를 견지

- 그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한 중국에 대한 특별한 귀속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채 『우리나라』를 중국으로 말하며 그 지역 일원으로 정착·성공하기를 희망
- 한편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북한은 가기 힘들고 가난하고 폐쇄적임에 비하여 남한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개방적이며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모국으로 인식

5. 실태 및 문제점

- 중국에는 현재 규모에 따라 5개 소수 민족자치구, 31개 자치주, 93개 자치현, 3개의 자치기가 있는 바, 조선족은 31개 자치주중의 하나인 연변자치주를 구성하고 있음.

< 연변자치주 현황 >

- 조선족을 주체로 지역자치 실시(성장은 한족)
- 총면적 42,700km²
- 조선족, 한족, 회족, 만주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조선족이 인구의 40%를 차지
- 6개시(연길, 도문, 훈춘, 용정, 회룡, 돈화)와 2개현(왕청, 안도)으로 구성
- 최근 한국의 영향으로 경제가 급성장, 중국내에서 자동차 보유대수가 상해에 이어 제2위

- * 중국은 '53년 8월 연변지역을 조선족자치주(성급)로 설정했다가 '53년 9월 3일 길림성내 자치구(시급)로 하향조정, 일찌기 모국과 인접해 있는 조선족에 대한 견제의도를 표출

- 그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한 중국에 대한 특별한 귀속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채 『우리나라』를 중국으로 말하며 그 지역 일원으로 정착·성공하기를 희망
- 한편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북한은 가기 힘들고 가난하고 폐쇄적임에 비하여 남한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개방적이며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모국으로 인식

5. 실태 및 문제점

- 중국에는 현재 규모에 따라 5개 소수 민족자치구, 31개 자치주, 93개 자치현, 3개의 자치기가 있는 바, 조선족은 31개 자치주중의 하나인 연변자치주를 구성하고 있음.

< 연변자치주 현황 >

- 조선족을 주체로 지역자치 실시(성장은 한족)
- 총면적 42,700km²
- 조선족, 한족, 회족, 만주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조선족이 인구의 40%를 차지
- 6개시(연길, 도문, 훈춘, 용정, 회룡, 돈화)와 2개현(왕청, 안도)으로 구성
- 최근 한국의 영향으로 경제가 급성장, 중국내에서 자동차 보유대수가 상해에 이어 제2위

- * 중국은 '53년 8월 연변지역을 조선족자치주(성급)로 설정했다가 '53년 9월 3일 길림성내 자치구(시급)로 하향조정, 일찌기 모국과 인접해 있는 조선족에 대한 견제의도를 표출

< 국 적 >

- 대부분을 중국국적이고 그중 3,000명은 북한(조포), 100여명 남짓은 한국국적을 보유

< 거주분포 >

- 조선족의 현재적인 지역분포는 한국에서의 이주시기 및 과정에 의해서 결정됨.

- 함경도출신들이 연변을 비롯한 길림성 동부에, 평안도 사람들이 요녕성에, 그리고 남한 출신들은 길림성 서북부와 흑룡강성에 주로 분포

이들은 대개 한국에서 같은 마을이나 지방의 출신들로 현재의 거주집단을 이루고 있어서, 언어나 풍습에 있어서 한국의 각 지방의 전통을 대표

- 현재 북경에 1만, 요녕성에 25만, 길림성에 110만, 흑룡강성에 45만, 기타지역에 11만이 거주, 인구성장과 분포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전체인구와 소수민족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
- 이민족, 특히 한족과 통혼하는 인구가 점점
- 동북3성(특히 연변자치주)이외 지역으로 조선족이 분산됨에 따라 연변자치주에서도 한족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음

○ 위와같은 상황은 중국내 조선민족의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자발적 분산과 함께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소수민족 동화정책에 따라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가 가중

< 교육·언어 >

○ 타민족에 비해 조선족은 독자적인 교육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조선족 국민학교(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중등전문학교)→대학교 존재

※ 대학은 연변대학, 중앙민족대학, 동북민족학원이 있음.
민영대학으로는 발해대학과 동아대학이 있음.

○ 중국내에서 한족을 포함, 조선족이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86%의 학생이 대학진학

※ 인구 100인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조선족의 초·중등학교의 교육수준은 한족학교에 비해 약 5년정도 뒤져있는 것으로 평가

○ 조선어는 해방후 최근까지 평양어를 규범·표준어로 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에는 서울말을 공용어로 하자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임.

- 외래어·상업적 언어가 많은 한국어와 어조·어법이 정치적인 북한어가 혼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중국특색이 가미된 평안도 사투리가 주로 통용
- 중국내에서 대학진학시 소수민족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기업체 취직시험에서 자기 민족언어로 시험을 치를수 있음.

< 사회경제생활 >

- 조선족의 경제생활은 한국내 친지방문과 『노무수출』 및 합자기업 취업 등에 힘입어 최근 급격히 향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
- 중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선족도 있으나 대부분은 한국에 가서 돈을 벌며 소규모 기업 또는 상점을 운영
- 그러나 한국을 다녀온 일부의 조선족은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한 채 소비에만 열중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선족 사회의 문제로 대두
 - 도박성행, 술집출입 재산탕진, 조선족 부유층 자녀문제
 - 20 - 30대 조선족 여성 대부분이 요식업이나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
- 중앙정부는 소수민족에게 비교적 많은 자유와 자치를 허용해 주고 있으나 시장경제 도입이후에는 자금대출, 기업설립 등에 있어서 한족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어 조선족 경제발전의 지장 초래

< 종교 >

- 중국은 일정한 한도(지정된 범위, 장소제한)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
- 이에따라 최근 특히 조선족의 종교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종교계(특히 기독교)가 조선족에 대한 선교강화에서 비롯
- 그러나 일부 종교계의 무분별한 선교활동은 중국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바, 특히 반정부적 행위(민족분열 등)을 경계
 - 한국의 맹렬 선교단체는 중국당국이 지정한 장소와 범위를 벗어나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중국당국의 경계심을 유발
- ※ 고조선·고구려 등 우리민족의 고적에 대한 일부 학회의 학술적 차원의 유적답사와 함께 『고토회복』 통일을 주장하는 종교단체가 문제
- 이러한 행동은 한·중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당국의 경계심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당국의 적절한 계도가 필요

< 정치(통일)문제 >

- 남북한 통일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됨(표명된 정책)

— < 요 지 > —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긴장조성 반대
- 한반도의 비핵화 지지 및 어느 일방의 핵개발 반대
- 4대국을 포함하는 쌍무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
- 독일식 통일방법 반대
- 외세개입 반대, 주민의사에 따른 평화통일 지원
- 어떤 체제든 통일된 한반도 국가와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한 관계발전 추진

-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정책은 한반도 정세안정과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현상유지를 추구

- 정치적으로는 북한을 우선시하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중시하는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

- 위와같은 입장에서 중국당국은 조선족에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자기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한 어느 일방을 싫어하거나, 어느 한편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권고

이에 따라 조선족들은 남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듯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표출

- 그러나 중간자적 입장에서 어려운 북한을 한국이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음.

북한주민들의 생활고, 독재·봉건체제 등을 비판

- 동북3성의 경우 북한 붕괴시 북한주민의 중국지역 대거유입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남북한 통일과 북한에서의 급격한 사태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음

< 한국과의 관계 >

- 대부분 가난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생활수준 향상의 유일한 방법으로 한국행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의 친인척 방문, 기술연수, 『노무수출』에 조선족들은 가산을 걸어놓고 추진
- 한국을 다녀왔거나 한국에 딸을 시집보낸 조선족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 생활을 영위
- 이에 따라 많은 조선족들은 너도나도 한국행 『노무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 기술연수에 참여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은 인민폐 3-4만원, 친인척 방문의 경우 2만여원의 소개·수속비 소요(1\$=8₩)
 - 이러한 비용은 가까운 친인척들이 모아서 꾸어주고 있으며 일단 한국행이 성공하면 다 갚고도 많이 남을 수 있음.(한국에서의 월 70만원 봉급은 일반 중국인의 약 2년 월급에 해당)
- 이런 상황을 이용, 악덕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이들의 농간에 놀아난 일부 조선족들은 가산을 탕진한 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

- 북경대사관의 입국수속 강화에 따라 출국 신청자의 25%만이 한국입국
- 주로 동북3성 지방에서 북경대사관에까지 가서 출국수속을 밟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조선족들의 불만이 증폭
- 같은 민족으로 한국행 입국도 어렵고, 갔다온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에서 돈을 벌었던 쓰라린 경험담 등은 중국내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을 다녀온 조선족의 80% 이상이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표출(요녕신문 조사)
 - 조선족 신문에 『노무광상곡』, 『며나면 고향언덕』 등에 소개되고 있으며, 조선일보기사 『동포를 박대한 민족』 등이 그대로 전재되고 있는 실정

6. 결 론

- 중국내 조선동포 주 거주지역인 동북3성은 타 지역과 달리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재중 조선족의 80%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북한과 인적교류, 변경무역 및 개인 행상을 활발히 추진
 - 언어, 사고방식 등이 정서적으로 북한주민과 유사하며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접경

- 북경대사관의 입국수속 강화에 따라 출국 신청자의 25%만이 한국입국
- 주로 동북3성 지방에서 북경대사관에까지 가서 출국수속을 밟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조선족들의 불만이 증폭
- 같은 민족으로 한국행 입국도 어렵고, 갔다온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에서 돈을 벌었던 쓰라린 경험담 등은 중국내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을 다녀온 조선족의 80% 이상이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표출(요녕신문 조사)
 - 조선족 신문에 『노무광상곡』, 『며나면 고향언덕』 등에 소개되고 있으며, 조선일보기사 『동포를 박대한 민족』 등이 그대로 전재되고 있는 실정

6. 결 론

- 중국내 조선동포 주 거주지역인 동북3성은 타 지역과 달리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재중 조선족의 80%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북한과 인적교류, 변경무역 및 개인 행상을 활발히 추진
 - 언어, 사고방식 등이 정서적으로 북한주민과 유사하며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접경

- 이러한 특성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재편과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그리고 남북통일과정에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두보로 조선족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그러나 중국내 조선족에 대한 막연한 감정적 접근은 조선족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 조선족은 우리민족이지만 엄연히 중국국민(공민)이라는 점과 다음 같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고려하여 추진

< 소수민족정책 기본방향 >

- 55개 소수민족(9,120만명)을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동화·통합시키기 위한 『평등·단결·공동발전』 정책을 추진, 독자적 민족주의 고취에 의한 민족분열은 절대 불용
- 문화·교육면에서 『민족구역 자치법』(84.5)에 근거, 각 소수민족 고유의 관습·언어장려 등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인정
- 종교면에서는 信敎의 자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종교활동 장소 및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조례』(94.1)에 의거하여 사원·교회내 반중국활동, 외국인 선교사의 중국인 개종등은 원천적으로 봉쇄

- 이에 따라 중국당국은 한국인들의 조선족 거주지역에서의 활동과 접촉·연계를 의구심을 가지고 경계

※예 : 한국인의 고구려 유적 조사·취재 제한
 조선족 교직원들의 한국 단독연수 통제
 대통령방중시 연변자치주 방문 및 대표접견 불허
 한국 대중가수의 조선족 노인위안공연 불허
 심양(요년성)총영사관 설치 불허 등

○ 이와같은 점을 고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중국내 조선족 동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임.

- 중국 전체속에서의 조선족을 인식, 그들로 하여금 한족 중심의 중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조선족들로 하여금 중국의 공민임을 망각케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됨.

- 민족동질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알릴 수 있는 민간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성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 조선족의 생활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지원책 강구(중국동포의 한국입국절차 간소화 등)

대만문제와 중국의 통일

○ '93.8.31 중국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발표

前 文

국가통일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주권국가의 신성한 권리이며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이기도 함. UN헌장에는 UN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보전이나 정치독립을 침해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他國의 관할권에 속하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UN은 『각국이 UN헌장에 의거 우호·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에서 국가통일·영토보전·정치독립의 일부 혹은 완전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모두 UN헌장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中國근대사는 침략·분할·능욕의 歷史인 동시에 中國인민이 민족독립 쟁취, 국가주권, 영토보전, 민족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영웅적으로 투쟁해 온 歷史임. 臺灣문제 발생 및 진전과정은 모두가 이러한 歷史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몇가지 이유로 臺灣이 아직도 대륙과 분리상태에 있는 바, 이 상태는 하루이틀에 매듭지어질 것도 아니며 中華民族이 겪고 있는 상처 또한 하루이틀에 치유될 수도 없으며 中國인민의 국가통일과 영토보전을 위한 투쟁도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님.

臺灣문제 실태와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臺灣문제의 해결을 위한 中國정부의 입장과 주장은 무엇인가?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문제에 대해 記述할 필요가 있음.

1. 臺灣은 中國의 불가분의 一部

臺灣은 中國대륙의 동남편에 놓여 있는 中國 제1의 큰 섬으로서 대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臺灣은 古代부터 中國에 歸屬

臺灣의 옛명칭은 『夷州』 또는 『流求』로 불려 왔으며 많은 史書와 문헌에는 中國인이 일찌기 臺灣을 개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 1700여 년전 3국시대 吳나라의 沈瑩이 지은 『臨海水土誌』 등에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臺灣歷史에 관한 세계최초의 기록임. 서기 3세기와 7세기 3국시대의 孫吳정권과 隋나라 朝廷에서는 만여명을 臺灣에 파견시켰으며, 17세기이후에 들어서는 中國인의 臺灣에 대한 개척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17세기말에는 10만명이상의 대륙인이 臺灣에 파견되었으며 서기 1893년 (淸朝 光緒19년) 臺灣의 總家口數는 50만 7,000여호, 人口는 254만명에 달했음. 즉 200년간 臺灣人口가 25배 증가했음. 그들은 선진 생산기술을 도입해 臺灣 전지역에 대한 개발속도를 크게 가속시켰음.

이러한 역사적 설명은 中國의 기타 省과 마찬가지로 臺灣도 中國 민족이 개척·定住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음. 臺灣의 사회발전은 시종 中華文化 전통을 이어 왔으며 비록 日帝 50년간의 침략시기에도 이러한 기본전통은 변하지 않았음. 臺灣개척의 歷史는 당시 원주민과 中國인의 피와 땀 및 지혜가 응집되어 있음.

中國의 歷代政府는 臺灣에 행정기구를 조직해 관할해 왔으며 12세기 중엽 宋나라는 군대를 澎湖에 파병, 주둔시켰으며 澎湖지역을 복건성 泉州 보강縣의 관할하에 두었음. 元나라 시대에는 澎湖에 『巡檢司』라는 행정관리기구를 두었고 明나라 시대에는 16세기중엽에 일시 폐지되었던 『巡檢司』제도를 부활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澎湖에 군대를 증파했음.

1662년(淸 康熙元年)에 鄭成功이 臺灣에 『承天府』를 설치한 후 점차 행정기구를 확대 설치해 臺灣을 통치해 왔음. 1684년(康熙 23년)에 『分巡臺廈兵備道』 및 『臺灣府』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臺灣(현 臺南), 鳳山(현 高雄), 緒羅(현 嘉義)의 3개縣을 두고 이를 복건성 관할내에 두었음.

1714년 淸나라는 측량기술자를 파견하여 臺灣地圖를 만들어 섬의 크기를 계산했으며 1721년에는 『巡視臺灣監察御史』를 증설하였고 『彰化縣』과 『淡水府』를 증설했음. 1727년 淸나라 雍正五年에 『分巡臺廈道』를 『分巡臺灣道』(후일에 다시 『分巡臺灣兵備道』로 고침)로 고치고 『澎湖府』를 증설한 후 『臺灣』을 공식 명칭으로 정했음.

1875년 淸 정부는 臺灣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臺北府』 및 『淡水』, 『新竹』, 『宜蘭』 등 3개縣과 『基隆廳』을 두었음.

1885년 淸朝는 臺灣을 1개 省으로 승격, 劉銘傳을 초대 巡撫로 임명하고 행정구역을 3부 1주 11현 5청으로 확대했음. 劉銘傳은 임기중 철도 부설, 광산개발, 전선 설치, 선박 건조, 학교건설 등으로 臺灣의 사회·경제·문화 발전을 크게 진전시켰음.

1945년 中國인민의 항일전쟁 승리후 中國정부는 臺灣省의 행정관리기구를 다시 회복시켰음.

海峽兩岸 中國人은 외국의 臺灣점령에 반대, 장기간 투쟁해 왔음

15세기말부터 서구 식민주의자가 식민지를 대거 약탈하였으며, 1624년 네덜란드가 臺灣 남부를 점령했고 1626년에는 스페인이 臺灣북부를 침략했으며 1642년에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북부를 점령하였음. 兩岸 동포는 외국의 臺灣점령에 반대, 장기간 무장봉기를 비롯 각종 방식의 투쟁을 전개했음.

1661년 鄭成功이 臺灣을 공략하여 이듬해 臺灣을 괴롭혀 온 네덜란드를 몰아냈음. 1894년 일본이 中國을 침략한 『甲午戰爭』이 발발하였고 다음 해 淸나라가 패배, 굴욕적인 시모노세끼조약에 의해 강제적으로 臺灣을 日本에 할양하자 전국이 분노했음.

北京에서 臺灣을 포함한 18개성 1,000여명의 과거시험 응시자들이 臺灣 할양을 반대하는 上書を 발표하였고, 臺灣省内에서는 방성대곡으로 省 전체가 떠들썩했음. 臺灣에 주둔해 있던 淸나라 장군인 劉永福은 臺灣 동포와 함께 일본 주둔군에 대항해 목숨을 걸고 싸웠음.

中國대륙 동남부지역 주민들도 자금지원과 무장인원 파견 등을 통해 反日투쟁에 참여했음. 일본의 臺灣 강점기간에 臺灣동포는 용감히 항쟁하였는 바, 초기에는 의용군과 무장유격대를 조직해 7년간 日軍에 대항했음. 이어 辛亥革命으로 淸나라가 막을 내린후 大陸·臺灣 동포들이 전후 10차례 걸쳐 무장궐기를 했는 바, 1920-30년대에 걸쳐 臺灣의 반일항쟁운동은 극에 달했음.

1937년 中國인민이 전국적인 항일전쟁을 개시하였으며 中國정부는 對日 선전포고를 통해 中·日간에 체결된 일체의 조약·협정·계약을 모두 파기한다고 선포했음. 이로써 시모노세끼조약은 폐지되었음. 이 포고문에는 또 中國은 장차 『臺灣, 澎湖, 東北 4省을 수복한다』고 엄숙히 선언했음. 中國인민은 8년동안의 항일전쟁을 통해 1945년 최후의 승리를 얻었고 잃었던 臺灣을 수복했음. 臺灣동포는 축포를 터트리고 축제행사와 함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臺灣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 온 위대한 승리를 경축했음.

國際社會는 臺灣이 中國의 一部임을 公認

中國의 항일전쟁은 세계의 반파쇼투쟁의 한 부분으로서 세계인민의 광범한 지지를 얻었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일본, 이태리 등 파시즘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中國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과 동맹을 결성했음. 1943년 12월 1일 중, 미, 영 3국이 『카이로선언』을 발표하였는 바, 이는 일본이 1914년 1차세계대전 이후 태평양에서 점령한 모든 島嶼를 반환하고 中國에서 강점한 滿洲, 臺灣, 澎湖열도 등도 中國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45. 7. 26 미. 영. 중. 소련이 참가한 『포츠담선언』에서 다시 『카이로 선언』의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음. '45. 8. 15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받아 들일 것을 대내외에 공표하였음. '45. 10. 25 동맹국은 臺灣省内 일본군의 降伏接收樣式을 臺北에서 거행하였음.

中國정부는 그날부터 臺灣 및 澎湖열도를 정식으로 中國영토로 편입시켰으며 토지. 인민. 政務를 모두 中國 주권하에 둔다고 선언했음. 이에 따라 臺灣. 澎湖는 中國 주권의 관할하에 되돌아 왔음.

中華人民共和國 성립이래 157개 국가가 中國과 국교를 맺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中國은 하나이며 中華人民共和國 정부가 中國의 유일합법 정부이며 臺灣은 中國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있음.

2. 臺灣問題의 由來

臺灣은 2차대전후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미 中國에 복귀되었음. 臺灣문제의 발생은 中國 국민당이 일으킨 內戰과 관계가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외세개입 문제임.

臺灣問題와 國共 內戰

항일전쟁기간중 中國공산당과 기타 애국역량의 지지하에 中國 국민당과 中國공산당이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공동대항하였으며, 항일전쟁 승리후 兩黨은 계속 제휴하여 中華民族의 대업을 이루었어야 했으나 蔣介石을 수반으로 한 국민당 집단이 美國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국 인민의 평화염원과 독립, 민주, 부강한 『新中國』건설의 강렬한 희망을 저버리고 國·共양당이 체결한 『雙十協定』을 파기하고 전국 규모의 反人民的 內戰을 일으켰음. 국민당 집단이 이러한 반역조치를 취함에 따라 전국 인민이 南京의 中華民國政府를 마침내 전복시켰음.

1949. 10. 1 中華人民共和國이 中國의 유일합법정부로 성립되었으며 국민당 집단의 일부 軍.政 要人이 臺灣으로 패주하였음. 그들은 美國의 지지 밑에서 臺灣海峽兩岸의 분단상태를 조성했음.

臺灣問題와 美國政府의 責任

제2차대전후 당시 東西 양대진영 대치하에서 美國정부는 그들의 전세계 전략 및 自國 이익을 고려해 자금과 무력, 인원을 동원, 국민당 집단의 內戰을 전력 지지함으로써 中國인민의 혁명사업을 방해했음. 그러나 美國은 끝내 그들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음.

美 국무성이 1949년 발표한 『美·中관계』백서와 『애치슨』 국무장관이 『트루만』 대통령에 보내는 書信에서도 美國은 이를 인정하고 있음. 『애치슨』의 書信속에서는 『中國 내전의 결과가 美國의 통제능력에서 벗어난 점이 애석할 뿐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로 발생했는 바 이는 결코 우리들이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中國내부의 각종 역량에서 비롯된 산물임. 우리는 벌써부터 이러한 역량을 통제할 계획을 마련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記述하고 있음.

中華人民共和國 탄생이후 당시 美國은 당초 中國內戰의 와중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新中國』에 대한 고립. 제재정책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韓國戰爭 발발후 中國 내정문제인 海峽兩岸關係에 대해 계속 간섭해 왔음. 1950. 6.27 美國 『트루만』 대통령은 미 7함대에 臺灣을 침략하는 어떠한 공격도 저지할 것을 명령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미 7함대와 제13항공대가 臺灣에 진주하게 되었음. '54.12. 美國은 臺灣 당국과 소위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하여 中國領인 臺灣省을 美國의 보호하에 두었음.

美國은 계속 中國내정에 간섭해 왔으며 臺灣해협에 장기간의 대치국면이 조성되어 왔으며 臺灣문제가 이때부터 中.美 양국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臺灣해협지구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中.美간 쟁점해결 모색과정은 中國이 50年代中期부터 美國과 대화를 개시하면서부터임. '55.8 - '70.2 中.美 양국은 136차에 걸쳐 大使級 회담을 개최했으나 臺灣해협 긴장완화면에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음. 60-70대초 국제정세의 변화와 新中國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 美國은 對中政策을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양국관계가 해빙의 추세에 접어들게 되었음.

1971년 10월, 제26차 UN총회에서 中華人民共和國이 UN의 모든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臺灣 당국의 대표를 축출하는 제2758호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1972년 2월 『닉슨』 美대통령이 訪中, 발표한 美.中 上海공동성명 내용에서 美國은 臺灣해협양안의 모든 중국인이 中國은 하나이며 臺灣은 中國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한데 대해 美國정부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

1978.12 美國정부는 中國정부가 제시한 美國.臺灣 단교, 공동방위조약 폐기, 臺灣내 미군철수 등의 수교3원칙을 받아 들였음. 이로써, 美.中 양국은 '79.1.1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음.

美.中 수교 공동성명에서 『아메리카合衆國은 中華人民共和國이 中國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승인하며 美國인민은 臺灣과 문화.상업 및 기타 비공식관계를 유지하고 아메리카합중국정부는 中國은 하나이며 臺灣은 中國의 일부라는 中國의 입장을 인정함』으로써 美.中 관계정상화가 실현되었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美.中수교 3개월도 안되어 美國의회는 『臺灣관계법』을 통과시키고 美대통령이 이를 서명, 발표시켰음. 이 『臺灣관계법』은 美國 국내입법 형식으로서 美.中 수교성명 및 국제법 규정을 위반해 中國인민의 권익에 심각한 손상을 끼쳤음. 美國정부는 이 관계법을 근거로 臺灣에 무기판매와 中國 내정간섭을 계속해 中國대륙과 臺灣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음.

美國의 對臺灣 무기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美.中 양국 정부는 '82년 협의를 통해 『8.17성명』을 발표했다. 美國정부는 이 성명에서 對臺灣 무기판매 정책을 중지하고 對臺灣 판매 무기성능 및 수량은 수교후 몇년간 제공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對臺灣 무기판매를 점차 축소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으나, 공동성명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성명 위반행위를 계속 자행하였음.

아울러 美國정부는 1992년 9월 臺灣에 F-16 고성능전투기 150대를 판매키로 결정하는 등 美.中관계 발전과 臺灣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정책을 결정한 바 있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臺灣문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美國정부에 책임이 있음. 70년대이래 美國 朝野의 대다수 인사들이 臺灣문제를 둘러싼 美.中간의 견해차를 좁히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는데 上記 3개의 공동성명도 모두 그들의 노력에 의한 것임. 中國정부와 인민은 이를 크게 찬양하고 있으나, 美國은 中國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인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臺灣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음.

中國정부는 美國인민과 中國인민이 우호적이라고 믿고 있음. 양국관계의 정상적 발전은 양국 인민의 장기이익에 부합되며 공동염원이기도 함. 美.中 양국 공히 어렵게 얻어 낸 양국 관계발전의 3개 공동성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함. 만약 쌍방이 모두 3개 공동성명의 원칙인 상호존중과 大勢를 중시하는 원칙이 준수된다면 歷史的 未濟로 남아있는 臺灣문제의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美.中 관계도 반드시 개선되고 발전될 것임.

3. 中國정부의 臺灣문제 해결 基本方針

臺灣문제 해결과 국가통일 실현은 전체 中國인민의 장엄하고도 신성한 사명임. 中華人民共和國 성립후 中國정부는 이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는 바 中國정부의 臺灣문제 해결 기본방침은 『平和統一, 一國兩制』임.

『平和統一, 一國兩制』방침의 형성

일찌기 50년대 中國정부는 이미 평화적 방법으로 臺灣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획해 왔음. '55년 5월 周恩來총리는 全人代 常務委 會議에서 中國인민은 臺灣문제를 전쟁과 평화의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 中國인민은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제시했음. '56년 4월 毛澤東주석도 『평화는 고귀한 것이며 애국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으며 선후 분별이 없다』는 정책을 주장했으나 일부 외세의 간섭 등 원인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실천되지 않고 있음.

70년대말부터 국제 및 국내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음. 美. 中간 국교가 수립되었으며 中國공산당 11期 3中全會에서 당과 국가의 중점업무 방향을 현대화 경제건설에 두기로 결정했음. 이와 동시에 海峽兩岸의 中國人, 홍콩·마카오 동포, 해외화교 모두가 海峽兩岸이 손을 잡고 협력해 中華民族의 발전을 이루도록 苦待해 왔음.

이러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中國정부는 전체 국가민족의 이익과 앞날을 고려, 역사와 현실 존중, 實事求是 및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平和統一, 一國兩制』방침을 제시했음.

1979. 1. 1 中華人民共和國 全人代 常務委가 발표한 『臺灣동포에 고함』이라는 문장에는 中國정부가 臺灣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침을 정중히 선포했으며 兩岸간에 군사대치상태를 종식시키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호소했음. 中國은 국가통일 과정에서 臺灣의 현실과 臺灣 각계인사의 의견을 존중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표시했음.

1981. 9. 30 全人代 常務委 위원장 葉劍英은 진일보된 臺灣문제 해결방침을 천명했는 바, 국가통일 실현후 臺灣은 特別行政區로서 高度의 自治權을 향유할 수 있다고 표시했고 兩岸 執權黨인 國·共 兩黨이 대등한 입장에서 담판을 벌일 것을 제의했음.

1982. 1. 11 中國의 지도자 鄧小平은 葉劍英이 제시한 안을 『1個國家, 2個制度』로 규정하고 국가통일 실현의 大前提하에서 中國은 사회주의 제도를 실천하고 臺灣은 자본주의제도를 실천하자는 談話를 발표하였음.

'83. 6. 26 鄧小平은 臺灣, 大陸간 평화통일 실현에 관한 구상을 발표, 中國통일과 臺灣特別行政區 설치문제에 대한 中國政府의 기본입장을 천명 하였음.

'92. 10. 12 江澤民 총서기는 『우리는 平和統一, 一國兩制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조국통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우리는 中國 공산당이 국민당과 하루빨리 접촉을 갖고 조건을 성숙시켜 兩岸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점차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담판을 실시할 것을 재차 제의하였으며 협상시 兩岸의 기타 정당, 단체, 각계대표 인사가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음.

『平和統一, 一國兩制』의 基本點

『平和統一, 一國兩制』는 中國特色의 社會主義 건설이론과 실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서 中國정부의 불변의 기본국책임. 이러한 방침에는 다음의 基本點을 갖고 있음.

(1) 하나의 中國

中國은 하나이며 臺灣은 中國의 불가분의 일부분으로서 중앙정부는 北京에 있음. 이것은 온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며 또한 臺灣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前提임.

中國정부는 中國의 주권 및 영토보전을 손상시키는 어떠한 언행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2個中國』, 『1中1臺』 혹은 『1國兩府』를 반대하고 『臺灣독립』을 초래하는 일체 행동에도 반대함. 海峽兩岸 中國인민이 모두 『하나의 中國』만을 주장하며 국가의 통일을 옹호하고 있고 臺灣이 中國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사실이 확정적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인 바, 소위 『自決』문제는 존재할 수 없음.

(2) 兩制共存

하나의 中國前提下에 대륙 사회주의제도와 臺灣의 자본주의제도가 장기간 공존하고 공동발전하며 누가 누구를 먹여 치우는 것이 아님. 이러한 발상이 나온 것은 臺灣의 현실과 臺灣 동포의 실제 이익을 고려한데 기초하고 있음. 이는 앞으로 통일후 中國의 국가체제가 갖는 중요한 특징임.

兩岸통일이 실현된 후 臺灣의 현 사회경제제도 및 생활방식은 불변이며 외국과의 경제·문화관계도 불변임. 예를 들면 개인재산, 주택, 토지, 기업 소유권, 합법 상속권, 화교 및 외국인 투자 등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음.

(3) 高度自治

통일후 臺灣은 『特別行政區』가 되며 中國의 기타 省·區와 달리 高度의 自治權을 향유함. 『特別行政區』는 臺灣의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 사법권 및 終審權, 당·정·군·경·재정방면 업무의 자주관리 및 자위군대 유지 등 권한을 보유하고 대륙은 군대와 행정요원을 臺灣에 파견해 주둔할 수 없음. 『特別行政區』정부는 臺灣 각계 대표인사에게 어떠한 국가기구의 職責도 맡는 것을 허용하고 전국 행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4) 平和談判

접촉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국가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전체 中國人의 희망임. 만일 中國의 주권 및 영토가 외세에 의해 분리되어 상호투쟁, 骨肉相爭으로 대처하면 兩岸 동포는 극히 불행한 것임. 전민족 대단결, 臺灣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 全 中國의 부강을 위해 평화통일이 절실히 요망됨.

敵對狀態 해소와 平和統一 실현을 위해 兩岸은 조속한 시일내에 접촉 담판을 해야 함. 하나의 中國 前提下에 담판방식을 포함, 참가당파, 단체 및 각계 대표인사 및 臺灣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타 모든 問題 등 어떠한 問題도 담판할 수 있음. 兩岸이 대좌하여 담판하면 쌍방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兩岸의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中國정부는 통일이전에 쌍방이 상호존중, 상호보완,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兩岸 경제협력 등 각 방면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직접 通郵, 通商, 通航을 실시하고 국가의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주장함.

平和統一은 中國정부의 기존방침이나, 모든 주권국가는 軍事手段을 포함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수단으로 自國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 中國정부는 自國 内部問題를 처리하는데 어느방식을 채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어떤 나라 또는 中國분열을 기도하는 자의 승락을 받을 의무가 없음.

臺灣問題는 中國 内政問題이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협의를 거쳐 형성된 獨逸問題와 韓國問題와는 성격이 다름. 따라서 臺灣問題는 獨逸과 韓國問題와 같은 맥락으로 논의할 수 없는 것임. 中國정부는 獨逸問題와 韓國問題 처리방식을 원용해 臺灣問題를 처리하는데 대해 계속 반대해 왔음. 臺灣問題는 마땅히 兩岸간의 협상을 거쳐 『하나의 中國』테두리내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구해야만 함.

4. 臺灣 海峽兩岸관계의 發展 및 障礙

臺灣 海峽兩岸의 분리상태는 中華民族의 불행임. 모든 中國人은 이러한 비통한 국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 兩岸 인민의 정상적 왕래와 국가통일을 위해 中國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는 동시에 兩岸관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음.

정책조정을 통해 兩岸간의 정치적 적대감정을 해소했음.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中華人民共和國 성립 이전 臺灣人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군사분야에서는 능동적으로 兩岸의 군사대치상태를 완화하고 金門島 등 島嶼에 대한 포격을 중지함과 아울러 福建地域 해안의 진지·관측소를 경제개발구와 관광위락지구로 전환하였음.

경제분야에서는 개방과 교류 촉진으로 臺灣 상인의 對大陸 투자 및 무역활동을 환영하며 우대조건 제공과 함께 법률적 보호를 보장하였음.

기타 인적교류·우편통신·과학기술·문화·체육·학술·뉴스교류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中國정부는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兩岸간 제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였음. 또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기구인 『海峽兩岸關係協會』를 설립하여 臺灣의 『海峽交流基金會』와 접촉을 통해 兩岸 인민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兩岸관계 발전을 도모하였음.

中國정부의 對臺灣 정책 및 조치는 점점 더 臺灣동포, 홍콩·마카오동포, 해외동포 및 中國人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많은 臺灣동포들이 兩岸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 臺灣 당국은 최근 수년간 이에 상응한 對大陸 정책을 조정하고 유화 조치를 취했는 바, 이는 臺灣 민중의 大陸探親 허용과 兩岸교류 제한 완화, 간접무역 확대, 간접투자허용, 兩岸동포간 通話, 通郵, 送金手續 간소화 등임.

이러한 조치는 상호왕래에 유리한 것으로, 이와 관련 최근 兩岸의 경제 무역이 급속히 발전되었으며 인적교류 및 각종교류활동이 꾸준히 확대되었음. 1993년 4월 실시된 『汪辜會談』에서 中國과 臺灣 양측대표가 4개항의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兩岸관계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一步를 내딛었음. 臺灣海峽은 40여년간 볼 수 없었던 화해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평화통일에 유리한 것임.

필히 지적할 것은 臺灣당국이 兩岸관계에 다소 유연해졌으나 현행 대륙정책은 아직도 兩岸관계 발전 및 국가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 그들은 입으로는 中國의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中國』원칙을 위반하고, 平和統一問題를 협상하는 것을 거절하는 등 兩岸 교류의 진일보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최근 들어 臺灣내 『臺灣獨立』주장이 나날이 확대되어 兩岸관계 발전 및 국가 平和統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음. 『臺灣獨立』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복잡한 사회·역사적 근원 및 국제적 요인이 있으며 臺灣당국은 담판거절과 왕래를 제한하고 국제적으로 『二重承認』 및 『2個中國』정책을 추진하는 등 『臺灣獨立』활동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臺灣동포가 요구하는 臺灣의 주체적 관리 희망은 합리적이며 정당한 것이나 이는 『臺灣獨立』과는 다른 것임. 극소수 인사들이 주장하는 『臺灣獨立』요구는 臺灣주민의 진정한 요구라고 볼 수 없음. 극소수 『臺灣獨立』분자는 臺灣독립을 부르짖으면서 심지어 외국에 의존해 臺灣을 中國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망상을 갖고 있음. 이는 臺灣동포를 포함한 전체 中國인의 근본이익에 위배되는 행위임.

中國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며 臺灣 독립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

일부 외부세력은 中國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中國內政에 백방으로 간섭하고 있고 臺灣당국의 『反共·平和交渉 拒否』정책과 臺灣내 분열세력을 지지해 中國 平和統一에 장애를 초래, 中國인민의 민족감정에 엄중한 상처를 입혔음.

中國정부는 대부분의 臺灣동포가 국가통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대다수 臺灣의 朝野 정치역량 역시 국가통일을 주장하고 있음. 兩岸 인민의 공동노력하에 以上에서 밝힌 장애와 저항이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兩岸관계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임.

5. 國際關係에서의 臺灣關係 問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에는 하나의 中國만이 있으며 臺灣은 中國의 불가분의 一部分임. 中華人民共和國정부는 전 中國인민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로서 UN 및 세계 각국의 보편적 승인을 얻었음.

국가주권 유지와 국가통일 실현을 위해 中國정부는 국제업무중 臺灣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때 시종일관 『1個中國』原則을 지켜왔으며 臺灣동포의 이익을 일관되게 보호해 왔음. 中國정부는 이러한 中國의 입장이 각국 정부와 인민의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

여기에서 中國정부는 아래의 몇가지 입장과 정책을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 中國 修交國과 臺灣간 關係問題

현재 세계에 中國과 수교한 나라는 모두 국제법과 『1個中國』원칙을 준수하며 中國정부와 臺灣문제를 정식 협의와 양해를 통해 해결하고 臺灣과는 정부간의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도 갖지 않을 것을 수락했음.

국제법에 의하면 一個 주권국가에는 하나의 중앙정부만이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中國의 일부분인 臺灣이 국제적으로 中國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외국과 외교관계 수립 및 공식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

그러나 臺灣 경제발전의 필요성과 臺灣동포의 실제 이익을 고려해 臺灣 외국간의 민간경제, 문화왕래에 대해서는 中國정부가 이의를 갖지 않음.

최근 몇년간 臺灣당국이 국제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實務外交』는 中國과 수교한 일부 국가와 공식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二重承認』을 추진하여 『2個中國』, 『1中1臺』의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대해 中國정부는 단호히 반대함.

세계의 절대다수 국가가 中國과의 우호관계를 소중히 여겨 臺灣문제와 관련 中國과 합의한 협의 및 양해를 각별히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中國정부는 이에 대해 찬사를 보냄.

그러나 어떤 국가는 국제적 신망을 저버리고 中華人民共和國과 修交時 맺었던 약속을 위반, 臺灣과 공식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中國통일사업에 장애를 낳게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中國정부는 有關 국가정부가 이러한 행동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함.

(2) 國際組織과 臺灣간 關係問題

각 국가의 주권은 완전한 것으로 분할할 수도 없으며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것임. 中華人民共和國정부는 中國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국제조직에서 국가주권 행사와 전체 中國을 대표할 권리와 의무를 갖음. 臺灣당국이 일부 주권국가들만이 참가하는 국제조직에서 소위 『1國兩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2個中國』을 조성하는 것인 바, 中國정부는 이와 같은 작태를 단호히 반대함.

이러한 원칙과 입장은 臺灣동포 및 해외교포를 포함한 전체 中國인의 근본이익과 완전 부합되는 것임.

하나의 中國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하에서만 中國정부는 有關 국제조직의 성질·규정·규약 및 실제정황에 근거해 中國정부가 동의·접수한 방식으로서 일부 국제조직 활동에 臺灣이 참가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음.

UN산하의 모든 기구는 주권국가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조직임. 中華人民共和國이 UN에서 합법적 권리를 회복한 후에 UN산하 모든 기구도 中華人民共和國이 향유하는 합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臺灣당국의 代表權을 박탈키로 하는 정식 결의를 통과시켰음. 이로써 UN조직에서 中國 代表權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근본적으로 臺灣의 再加入 문제가 다시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들어 臺灣당국의 일부 인사가 다시 UN에 복귀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임. 분명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가주권분열을 기도하는 일종의 망상적 행동으로 법리상이나 실제상으로나 모두 통하지 않는 것임. 中國정부는 각국 정부와 UN산하조직이 이러한 기도를 간파해 中國의 주권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

기타 정부간 국제조직에는 원칙적으로 臺灣이 참가할 권리가 없음. 臺灣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 등 지역경제조직 가입은 中國정부가 각 유관분야와 협의·양해하에 가능하였으며, 中華人民共和國이 주권국가로 참가하고 臺灣은 단지 中國의 일개지구로서 『中國臺北』(영문: TAIPEI, CHINA;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는 CHINESE TAIPEI)의 명칭으로 참가활동을 한다는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임.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서 기타 정부간에 구성된 국제조직 및 국제활동에서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될 수 없음.

中國의 전국적 조직이 中國의 명의로 참가한 민간성격의 國際組織에서 中華人民共和國의 상응하는 조직이 유관부서와 협의·양해를 얻었을 경우 臺灣의 상응하는 조직은 『中國臺北』(TAIPEI, CHINA) 혹은 『中國臺灣』(TAIWAN, CHINA)의 명칭으로 참가할 수 있음.

(3) 中國 수교국과 臺灣간 通航問題

한 국가의 영공은 그 나라 영토의 주요 구성부분임. 1919년 공포한 『파리항공협정』과 1944년 서명한 『시카고협정』에서 모든 국가는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원칙이 있다고 밝혔음.

이로서 中國 수교국가의 모든 항공공사는 비록 개인항공사일지라도 臺灣과 通航하는 것은 모두 中國주권에 관계되는 政治問題이며 일반적 민간 관계가 아님. 中國 수교국가의 국영항공사는 당연히 臺灣과 通航이 불가하며 필히 中國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함.

中國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에 민간항공공사는 臺灣의 민간항공공사와 상호 운항할 수 있음. 실제로上記 원칙에 근거 中國정부는 이미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민간항공공사와 臺灣의 민간항공사간의 通航을 동의했음.

中華人民共和國과 수교전에 臺灣에 통항한 일부 국가는 中國정부와 협의를 거쳐 臺灣과 정부성격의 통항을 민간 상업차원으로 계속 운항할 수 있음.

(4) 中國 수교국의 對臺灣 武器販賣 問題

中國정부는 어떤 국가든지 臺灣에 대해 어떤 종류의 무기·장비를 판매하거나 무기 생산기술을 제공하는데 단호히 반대함.

中國과 수교한 국가는 주권존중, 영토보전,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하며 어떤 형식이나 핑계로도 臺灣에 무기를 공급해서는 안됨. 그렇지 않으면 국제관계준칙 위반이 되며 中國 내정에 간섭하는 것임. 세계 각국 특히 세계평화사업에 중책을 맡고 있는 大國은 UN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재래식 무기판매 확산 제한 원칙을 지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공헌해야 함.

그러나 臺灣海峽 兩岸관계가 날로 완화되는 추세하에서 일부 국가는 스스로 국제협약을 위배해 中國정부를 고려치 않고 臺灣에 무기를 판매, 海峽兩岸간에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음. 이는 中國안정에 엄중한 위협일뿐 아니라 中國 통일사업에도 역행하는 일이며 아시아 및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한 것임. 中國인민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대함.

국제업무중에서 中國정부는 일관되게 독립·자주적 평화외교정책을 추구하며 상호 주권존중 및 영토보전,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등 5개 원칙을 견지하며 세계 각국과 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다른 나라 이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음. 똑같이 中國정부도 각국 정부가 中國의 이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中國 內政에 간섭하지 않으며 臺灣관계 문제를 정확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함.

結 論

中國통일은 中華民族의 근본 희망임. 中國통일이 실현된 후 兩岸은 합작, 상호 보조, 경제발전, 中華發展을 이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

줄곧 곤란을 겪고 있는 臺灣의 각종 문제는 모두 하나의 中國 테두리내에서 합리적 해결을 얻을 수 있음.

臺灣동포는 장차 조국의 기타 지역 인민과 함께 하나의 위대한 국가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향유함. 장기간동안 臺灣문제는 계속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불안정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여 왔음.

中國의 통일은 中國 자신의 안정과 발전에도 유익할뿐 아니라 中國과 각국간 우호협력관계의 진일보 증진에도 유익하며 亞·太지역 및 전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임.

中國정부는 스스로의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사업에서 반드시 세계각국 정부와 인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

대만의 국가통일강령

- 민국 80년(1991년) 2월 23일 국가통일위원회 제3차 회의 통과
- 민국 80년(1991년) 3월 14일 행정원 제2223차 회의 통과

1. 서 언

국가의 부강과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중국의 통일은 국내외 모든 중국인의 공통된 소망이다. 대만과 대륙 양측은 이성과 평화, 대등, 호혜의 전제하에 적당한 시기에 솔직담백한 교류, 합작, 협상을 통하여 민주, 자유, 부의 균등에 대한 공통된 식견을 세우고 다함께 하나의 통일된 중국을 재건하여야 한다. 이런 인식을 기본으로 하여 특별히 본 강령을 제정하는 바, 국내외 모든 중국인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다함께 본 강령을 철저히 실행할 것을 기약하자.

2. 목 표

민주, 자유, 균등한 부의 중국을 건립한다.

3. 원 칙

- (1) 대만과 대륙은 모두 중국의 영토이며 국가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중국인의 공통책임이다.
- (2) 중국의 통일은 모든 사람의 복지를 귀착점으로 하며 당파의 싸움에 그쳐서는 안된다.

- (3) 중국의 통일은 중화문화를 발양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기본인권을 보장하며 민주법치를 宗旨로 삼아 실천하는 것이다.
- (4) 중국의 통일은 그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대만지구 주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시키고, 이성과 평화, 대등, 호혜의 원칙하에서 한걸음씩 단계적으로 달성한다.

4. 진행과정

(1) 제1단계

- ① 교류를 통해 이해를 촉진시키고, 호혜로서 적의를 해소시키며, 교류중에 상대방의 안전에 위협이 미치지 않게 하고, 호혜중에 상대방의 정치실체를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다.
- ② 대만과 대륙의 교류질서를 세우고 교류규칙을 정하고 중개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양쪽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여러가지 제한을 조금씩 완화하고 양쪽 민간인들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쌍방의 사회번영을 촉진시킨다.
- ③ 국가통일의 목표아래서 양쪽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륙지구는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조금씩 여론을 개방하여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실행해야 한다. 대만지구는 헌정개혁을 가속화시켜 국가건설을 추진하고 均富 사회를 건립한다.
- ④ 양측은 적대관계를 버리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아래 모든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국제관계에서 상호존중하고 서로 배척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믿고 돕는 단계로 나아간다.

(2) 제2단계

- ① 양측은 대등한 지위에서 정부측이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 ② 대만과 대륙간에 직접 우편이 통하고, 항공로와 해로가 개통되고 통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하여 공동으로 대륙 동남연해지구를 개발시키고, 나아가서 기타 지구도 점차 개발해 나감으로써 양쪽 주민들의 생활의 격차를 줄인다.
- ③ 대만과 대륙은 서로 돕고 협력하여 국제조직과 활동에 참가한다.
- ④ 양측의 고위층 인사들이 상호방문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협상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3) 제3단계

양측에 협상통일기구를 설립하여 양쪽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정치, 자유경제, 평등사회 및 근대국가화의 원칙을 견지하고 통일대업을 함께 의논하고 헌정체제를 연구·결정함으로써 민주, 자유, 均富의 중국을 건립한다.

대만해협 양안관계 설명서(요지)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4년 7월 4일

1. 前 言

1949년부터 중국인민들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생활과 의식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두 지역간의 대립과 단절을 제거하고 민족의 부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화민국정부는 1987년부터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하여 양안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1991년 2월에는 『국가통일강령』을 제정하여 전민족의 공통된 인식을 응집시키고 통일을 향한 일보를 내 디었다. 중화민국정부는 특별히 양안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제기해 국내외 인사들이 중화민국 정부의 국가통일문제에 관한 사고방향과 입장과 방법을 심도있게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2. 대만해협 兩岸의 분단과 分治의 근원과 본질

아편전쟁후, 중국의 지식인들은 孫中山 선생의 영도아래 1912년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중화민국 건국 초기는 안으로는 군벌이 할거하고 밖으로는 의세가 준동하는 등 정세가 혼란하였다. 孫中山 선생은 중국을 구하고 부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三民主義를 창안하였다. 三民主義의 이상은 아편전쟁이후 중국의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을 제공한 것이었다.

1919년 소련공산당은 第3國際(The Third International)를 구성하고 세계혁명을 추진하였는 바, 인근의 중국이 그 첫번째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 1921년 7월 소수의 좌경지식인들이 중국공산당을 창당하였고 중국공산당은 第3國際의 중국 지부가 되었다.

이로부터 공산주의는 중국에서 만연되기 시작하였다. 북벌 기간동안, 중공은 군벌할거로 야기된 국내분쟁을 이용하여 대형폭동을 일으키고 ‘무장투쟁’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1931년 11월 중공은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따로 ‘임시 중앙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는 중국 재분열의 시작을 의미한다.

1937년 중국의 전면적인 대 일본항전 시기에 중공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근거지와 무력을 대폭 확장·증강하였다. 대일항전이 승리로 끝나자 공산당은 무장반란을 일으켜 본토를 석권하였다. 1949년 10월 중공은 북경에서 중화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중화민국정부는 대북으로 천도하였다.

이리하여 중국에서 대만해협을 경계로 일시적인 분단과 분치(각자 통치) 형태가 나타났다.

현재 양안간의 분단과 분치의 그 본질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중화문화를 기초로 한 ‘삼민주의 중국’과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근원을 둔 ‘공산주의 중국’ 사이의 경쟁이다. 이러한 상이한 정치·경제·사회제도 및 생활방식의 경쟁이 바로 대만해협 양안간 분열과 분치의 본질이며 오늘날 중국의 분열을 초래한 진정한 원인이다.

오늘날 중국이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중공이 말하는 것처럼 대만의 일부 주민이 중국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일부 국제세력의 간섭’ 때문은 더욱 아니다.

바로 중국본토의 정치제도, 경제수준 및 과거 여러차례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대규모의 투쟁이 중국본토에 대해 믿음을 잃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중화민국정부가 왜 계속해서 ‘중국문제만 있지 대만 문제는 없다’ 라고 주장하는가의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3. 대만해협 양안관계의 발전

중공은 오랫동안 대만의 무력해방을 시도하였다. 1949년부터 중공은 수차에 걸쳐 군사적 공세를 취하면서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공의 금문도에 대한 무력점거가 실패하고, 일련의 내정과 외교상의 곤경에 처하자 ‘대만의 평화적 해방’ 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진행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1979년 미국이 중공과의 수교로 말미암아 중화민국과 정식 외교관계가 단절되자 중공의 대 중화민국 책략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는 평화적인 허상을 조장하기 위해 대만에 대해 중공은 ‘대만해방’이라는 구호를 버리고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비록 ‘평화통일’이라는 미명을 쓰고 있으나 중공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통일문제의 무력해결 의사를 버리지 않고 있다.

중화민국정부는 시종 철저한 중국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본토의 제도변경이라고 여기고 있다. 1981년 4월 집권당인 중국국민당은 ‘三民主義로 중국을 통일한다’는 구호를 제기하였다. 이 구호와 주장은 중화민국정부의 대 본토정책의 핵심사상으로 전환되었다.

중화민국정부가 ‘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한다’ 라는 주장을 내세운 주요 이유는 경제실험의 결과 마르크스 - 레닌공산주의의 철저한 실패가 일찍이 증명되었고 삼민주의가 중국적 상황에 더 적합하며 ‘중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80년대 이후 대만지구의 경제자유화, 사회다원화, 정치민주화의 발전이 가속화되고,戒嚴해제 이후 일련의 개방적인 본토정책이 실시되었다. 이후 양안간의 상호관계는 이미 완전 단절상태에서 민간교류단계로 진전되었다.

1991년 4월 30일 李登輝 총통은 動員戡亂時期(국가비상시기)를 5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선포하였으며, 아울러 국민대회의 결의에 따라 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국가비상시기 임시헌법에 해당)도 폐지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선포는 두가지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나는 중화민국정부가 정식으로 솔선하여 무력방식에 대한 국가통일 추구를 버린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화민국정부는 더이상 국제무대에서 중공과 ‘중국 대표권’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화민국정부는 ‘중국은 오직 하나’ 이나 ‘대만과 중국본토는 모두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공은 중국과 같지 않다’ 라는 입장으로 중국이 최후의 통일을 달성하기 전에는 쌍방이 기존의 분치상태에서 각자가 동등하게 국제사회의 권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중화민국이 1912년 건국이래 국제사회에서 시종 하나의 독립주권국가였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양안관계의 처리에 있어 쌍방관계는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속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단순한 국내문제와도 다르다.

양안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중화민국정부는 현실적인 ‘정치실체’의 개념을 제기하고, 이를 양안간 상호 영향관계의 기초로 삼고 있다. 현재의 양안관계는 ‘主權爭議’ 문제를 잠시 다루지 않아야만 40여년간의 실마리를 풀고 순조롭게 통일을 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政治實體’ 개념은 바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는 열쇠이다.

중화민국정부는 전통적 관념상의 중국이 현재 이미 두개의 정치실체, 즉 자유민주체제를 실행하는 대만지구와 사회주의 제도를 실행하는 본토지구로 분열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중공의 견해는 그들이 지칭하는 ‘一國’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 것이며 중화민국 관할아래의 대만은 단지 중공 통치하의 일개 ‘特別行政區’로 비록 중공의 동의하에 제한적인 ‘高度自治’는 향유할 수 있으나 중공의 ‘헌법’과 중공 ‘중앙정부’의 宗旨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분명이 ‘一國兩制’의 목적은 중화민국을 중국정부에 완전히 귀속시키려 하는 것이며 대만지구민들이 일정 시간후에 민주 자유제도를 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중공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도 통용될 수 없다.

중화민주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확고히 주장하며, ‘두개의 중국’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에 반대한다.

동시에 중화민국정부는 양안의 분단과 분치라는 역사와 정치의 현실아래 쌍방은 각자의 통치권 행사를 충분히 인정하고 국제적으로도 병존하는 두개의 국제법인이라는 사실, 나아가서 쌍방관계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분단되고 분치하는 두 지역으로 ‘一國內部’ 또는 ‘中國內部’에 속하는 성질임을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은 아주 현실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두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양안간의 교류과정중 중공은 반드시 중화민국정부의 국가 통일 추구 목표와 결심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야 한다. 여하히 분단·분치상태의 현실기초하에서 적극적으로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두개의 상이한 ‘정치실체’를 점차 ‘하나의 중국’으로 융화시키는가가 중공당국이 시급히 고려해야 할 방향이다.

정부는 평화통일 이전에는 理性·平和·對等·互惠의 4개 원칙으로 양안관계를 처리할 것을 주장한다.

이성의 원칙은 바로 양안간 사무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사유 방식이어야 한다. 분단국가의 통일문제 처리시, 평화, 대등, 호혜는 이성의 최대 표현이다.

독일의 통일은 바로 동·서독이 대등한 상대로 호혜교류와 분쟁의 실마리를 평화적으로 푸는 이성의 원칙아래 완성된 것으로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성공사례이다.

평화의 원칙은 우리가 양안관계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대만해협 양안간의 상호 움직임은 이미 완전승리, 완전패배의 경쟁이 아니고, 쌍방이 각 일보씩 양보하여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동승리’ 경쟁이다. 무력으로 ‘영토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피상적인 사고로 민족주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자유·균부의 ‘제도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옹대하고 지속적인 민족주의이다.

대등의 원칙은 우리의 세번째 주장이다. 소위 대등이라 함은 대만지구와 본토의 중국인들이 동등한 존엄을 향유해야만 하고 동등한 존중을 받음을 가르킨다. 중화민국정부는 현재의 양안간 민간교류나 미래의 정부가 협상을 막론하고 고의로 상대방을 폄하해서는 안되며 모두 상대방 국민과 정부의 법을 존중하는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혜의 원칙은 우리 본토정책 추진의 네번째 입장이다. 양안간의 교류는 쌍방의 이익을 만족시켜야 한다. 쌍방의 관계는 절대 Zero-Sum 관계가 아니며 '공동승리'를 도모해야 하는 관계이다.

우리는 호혜에 바탕을 둔 쌍방교류만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호혜행위는 어느 일방 또는 지엽적인 사고가 아닌 쌍방 전체를 고려하는 데서 나와야 한다.

4.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환경 요소

양안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체로 국제적인 것과 본토·대만의 세가지 상이한 요소로 나눌수 있다.

국제요인을 보면, 1990년대 공산주의는 이미 인류에게 수용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소련의 해체 및 동구 비공산화의 기본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냉전체제 종식후 국제사회는 양안간의 분단과 분치현실을 이성적으로 보기시작 했으며, 중공 개혁·개방 과정에 있어서의 중화민국의 역할 및 대만 해협의 안전에 아시아 정세의 안정과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도 이해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제관계중의 경제의존성 역시 양안관계 정세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국제정치상의 통합과 분리추세도 양안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대만지구의 경우, ‘국가통일강령’의 통과를 우리의 사상조류 통합에 대한 긍정이며, 상대적으로 대만독립의 주장은 분리추세의 극단화이다.

중화민국정부는 주관적으로는 통합추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이 두 추세에 대한 대만지구 인민들의 수용정도에 따라 양안관계의 발전이 달려있는 것이다.

본토지역의 정세발전과 중공의 대만정책을 살펴 보자. 중공은 비록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4個堅持’를 고수하면서 중국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본토의 경제·재정위기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빈부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모두 ‘정치적 좌경화, 경제적 우경화’ 노선이 초래한 후유증이다. 향후 본토내부 정치정세의 방향은 대만지구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줄 것이다.

1949년부터 현재까지 중공의 지도자들은 대만에 대한 무력동원 협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밖에 중공은 시종 고의로 중화민국의 국제활동 공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중공의 적대감에 가득찬 행위는 중화민국의 대외관계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대만지구에서 중공정권에 대한 혐오심리를 더욱 증폭시켜 오히려 국가통일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미래 대만지구의 정치·경제의 발전을 보면, 최근 몇년간 중화민국은 대만에서 ‘조용한 혁명’의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두 중국 역사상 최초로 부유와 인권존중 및 법치 민주사회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였다.

오랫동안 축적된 경제력과 사회문화의 활력은 민주자유의 과정을 통해 표현되어 일면 세계를 향해 ‘務實外交’의 길을 열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본토를 향해 양안간의 각종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중공이 이러한 因果關係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대만지구의 민주화과정을 계속 기만하거나 능멸하면서 중화민국의 대외관계에 거칠게 간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처사는 최근 대만지구의 정치·경제발전 조류를 무시하는 것이며 대만지구민들의 진정한 희망과 복지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러한 것이 장기화되면 중국의 통일, 나아가서 양안간의 정상적인 교류에도 반드시 예측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대만지구는 이미 민주화된 다원사회로 야당도 입법원에서 상당비율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그 정치적 주장은 필연적으로 본토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국가인식과 양안관계 문제에 있어 조야 정당간에는 약간의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각당간의 본토정책에 비록 다른 견해가 있다하더라도 그 목적은 모두 대만지구민의 복지향상에 있다. 따라서 정치적 주장을 제기할 때는 각 정당은 모두 2천1백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만 한다.

5. 결 어

해협양안의 분단과 분치는 중화민족의 불행이다. 우리는 중공이 경제개혁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본토의 동포들을 하루속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춘 생활을 영위케 할 수 있다.

우리는 또 중공이 진솔하게 양안간의 일시적 분단과 분치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성·평화·대등·호혜의 원칙으로 양안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만이 양안의 평화통일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을 중공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무력위협과 전란이 절대로 전체 중국인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일임을 알고 있다. 통일의 이름을 빌려 무력에 호소하게 되면 반드시 중화민족의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통일의 최대 의의를 국가의 부강과 민족의 영구적인 발전 추구뿐 아니라 전체 중국인이 모두 민주·자유와 균부의 생활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통일은 추호의 가치와 의의가 없는 일이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건데, 중화민국정부는 계속해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힘을 다해 양안관계를 추진할 것이며 양안간의 양성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민이 지혜와 노력을 모은다면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고 본토지구의 정치·경제·사회의 현대화 발전을 가속화시켜 민주·자유·균부를 전제로 한 중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중국 · 대만의 통일정책 추진기구

< >

中央 臺灣工作領導小組

- 0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공식 협의체 (1949. 10 설립)
- 0 중국의 대만정책 · 통일정책을 심의 · 결정하는 최고 정책 결정기관
 - 당 통일전선부, 국무원 臺灣事務辦公室, 海峽兩岸關係協會 등의 정책 건의에 기초, 양안간 교류 · 협력 및 통일정책을 심의 · 결정
- 0 구성 : 국가주석,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치협상회의 주석, 외교부장, 대만사무관공실 주임, 국가안전부 부장 등 11인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 0 대만공작영도소조의 지침을 받아 대만정책, 통일정책과 관련된 각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고 각종 정책의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1988. 8 설립)

<국무원 대만관광실 조직·기능·인적구성>

내부조직	주요기능	책임자
비서국	조직내의 일반 사무	王富卿
聯絡局	대만 유력인사 접대 및 통일전선	王永海
統合局	대만 『海基會』와의 교섭업무 처리	趨哲開
교류국	양안간 교류활동의 안배 및 심사	張金成
交往局	대만인들의 대륙내 경제·무역활동 및 관광중에 파생된 문제처리	楊栢森
新聞局	대만에 대한 홍보 및 대만기자의 대륙취재 허용 심사	張銘清
경제·과학기술국	양안의 경제무역정책 및 과학기술 합작관련 사무처리	劉震濤
연구국	對대만정책 수립, 대만내부 정세 분석	邢魁山

海峽兩岸關係協會

- 0 『해협양안관계협회』 (海協會로 약칭)는 1990. 11 대만이 설립한 반관반민의 『海峽交流基金會』 (海基會로 약칭)의 교섭상대로 설립 (1991. 12 설립)

- 0 기능 : 대만이 三不政策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측 海基會와의 접촉을 통하여 양안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양안의 三通 및 정부차원의 협상분위기를 조성
- 0 조직 : 회장 (汪道涵), 부회장, 비서장, 연구부, 연락부, 협조부, 종합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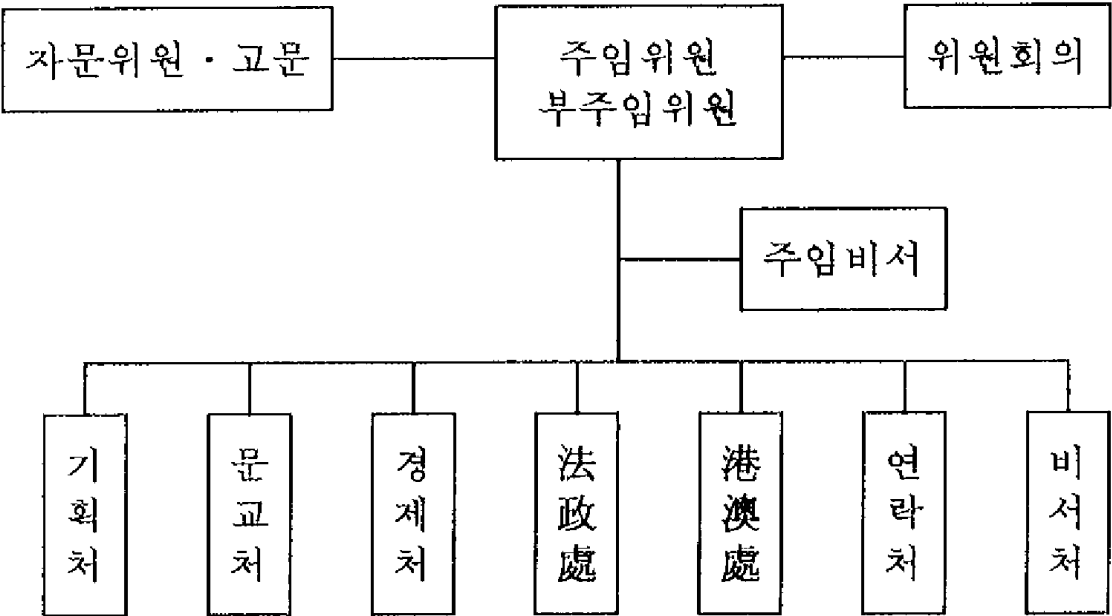
國家統一委員會

- 0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라기 보다는 최고지도부가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자문기관 (1990. 9 설립)
 - 형식적 지위와 관계없이 대만의 대륙정책·통일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 발휘 (중국의 『대만공작영도소조』의 기능과 유사)
- 0 조직 : 주임 (총통), 부주임 3명 (부총통, 행정원장, 총통의 초빙인사) 위원 (25-31명), 연구위원 등
- 0 운영 : 2개월마다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行政院 大陸委員會

0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만의 대륙정책, 통일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최고 실무기관('91. 1. 28 설립)

< 대륙위원회 조직도표 >



< 7개 처의 주요 업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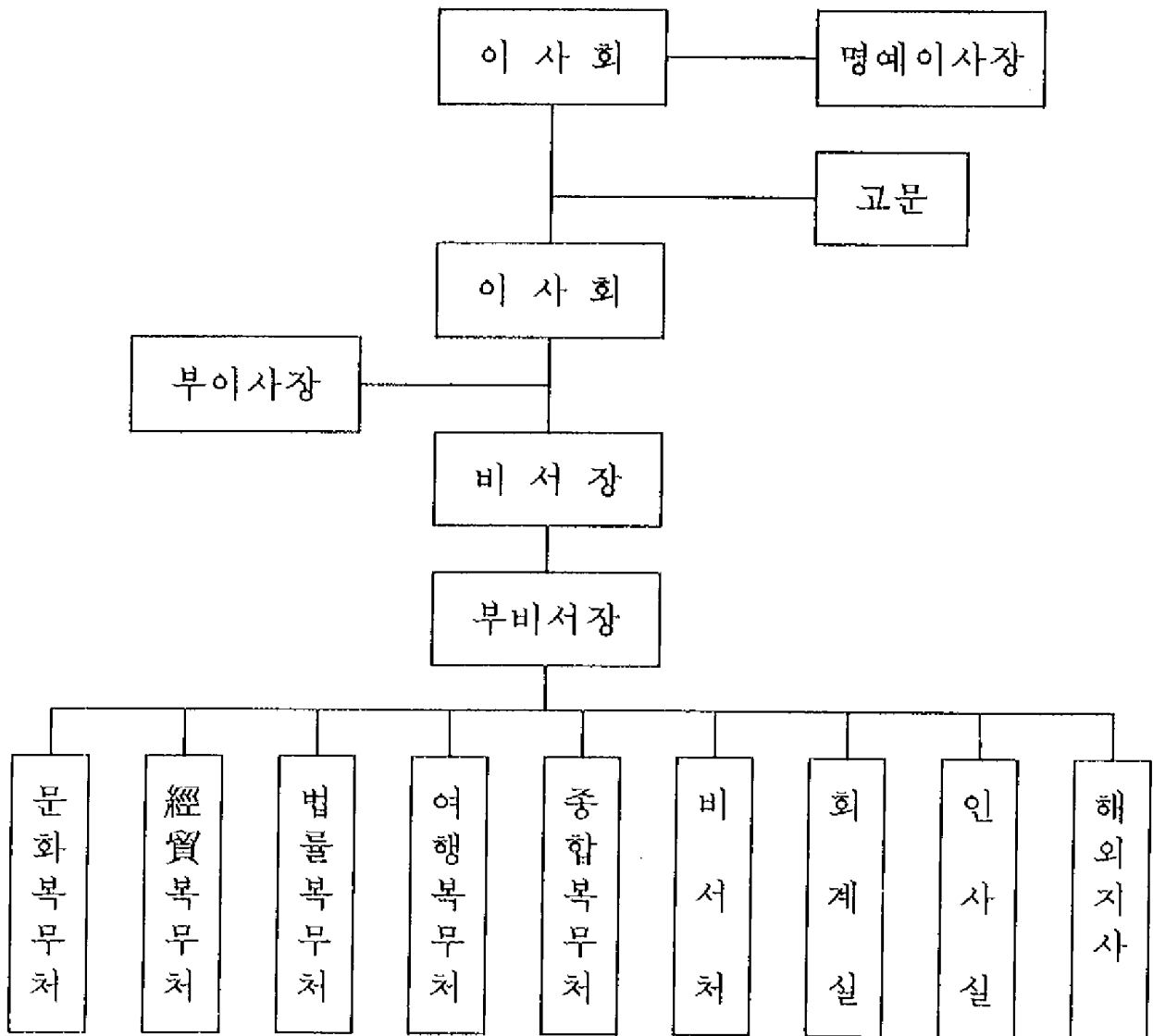
처 명	주 요 업 무
기획처	0 대륙정책의 연구 및 종합적 계획수립 0 대륙내 정세분석 0 해외 중국연구기관과의 접촉 0 중국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출판 0 양안의 자원이용·개발계획 수립

처 명	주 요 업 무
문교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양안의 학술·문화·교육·체육·언론교류의 심의 0 대륙정책중 문교와 관련된 정책 추진
경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양안의 재무·금융·경제무역·교통·농림수산업·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교류 추진 0 대륙정책중 경제관련 정책 추진
법정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양안의 법적·내정·위생 및 노무관련 업무추진 0 양안의 인적교류와 관련된 법규의 제정·심의 0 대륙의 법제 연구
항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對홍콩·마카오정책의 계획·수립 0 홍콩·마카오와 관련된 업무추진 0 홍콩·마카오주민들과의 연계 및 지원정책 추진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대륙정책의 홍보 0 해외에 거주하는 대륙주민·단체들과의 연계 추진 0 대륙관련 업무의 연락 담당
비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의사일정 및 사무관리 담당 0 각종 문서, 인사관리

海峽交流基金會

- 0 海基會는 대만정부가 중국과의 공식적인 협상을 거부하는 삼불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양안간 교류·협력 확대에서 파생되는 각종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묘책으로 설립 ('90. 11)
- 0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조직이나 실제로는 행정원 대륙 위원회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만정부를 대신하여 중국측 海協會의 협상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양안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

해협교류기금회 조직도표



0 주요업무

- ① 양안주민의 상호방문과 관련된 서류의 접수·심사 및 관련서류의 발급
- ②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의 심사, 신분관계 증명 및 소송서류의 송달, 양안간 범죄인 인도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
- ③ 중국내 경제무역관련 정보 수집·배포, 양안의 간접무역·투자상의 분류해결 협조
- ④ 양안주민의 문화교류 지원
- ⑤ 대만주민의 중국내 체류기간증 합법적인 권익보장 지원
- ⑥ 양안의 인적교류에 관한 자문
- ⑦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등

Mainland Policy & The Mainland Affairs Setup

Functions	Organizations	Areas of responsibility
<p>Consultation & re- search</p> <p>Policy-making</p> <p>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p> <p>Implementation (at present, direct con- tacts with the main- land authorities and business in the mainland are hand- led by the SEF)</p>	<pre> graph TD President[President] --- Coord1[...] Coord1 --- ExecutiveYuan[Executive Yuan] ExecutiveYuan --> MAC[Mainland Affairs Council] ExecutiveYuan --> OtherMinistries[Other ministries] ExecutiveYuan --- Coord2[...] Coord2 --- MAC MAC --> SEF[Straits Exchange Foundation (private body)] MAC --- Coord3[...] Coord3 --- SEF </pre> <p style="text-align: center;"> Coordination Direction </p>	<p>Deliberation of over- all unification policy</p> <p>Formulation of main- land policy and pro- motion of mainland affairs</p> <p>MAC: In charge of research, planning, evaluation, and coordination of overall mainland poli- cy and some aspects of policy implementa- tion.</p> <p>Other ministries: Research,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mainland policy within their individ- ual fields of compe- tence.</p> <p>SEF: Appointed by the government to offer technical and func- tional services re- lated to cross-Strait people-to-people ex- changes in areas touching on govern- ment authority.</p>

양안 교류현황(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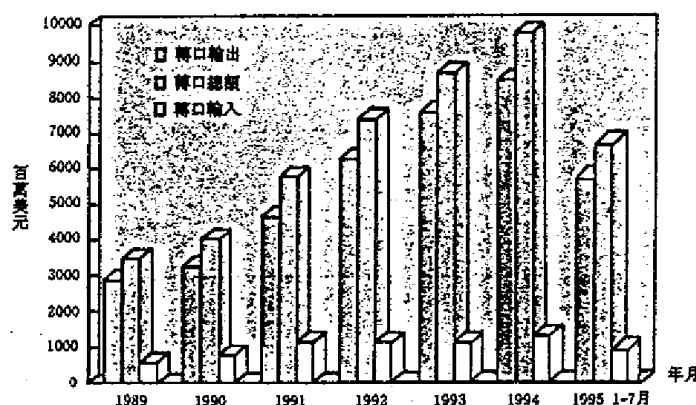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편

一. 提要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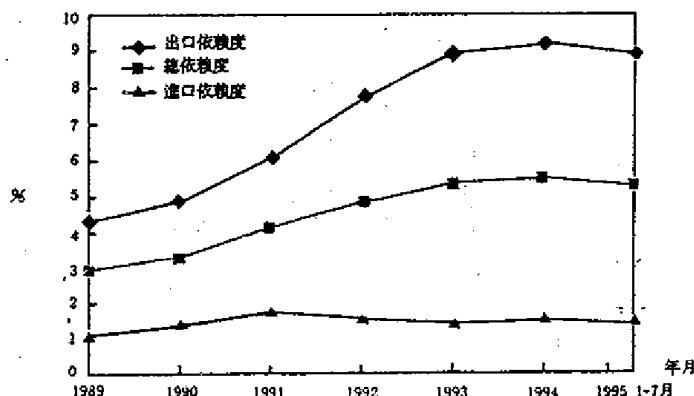
壹·兩岸交流重要經濟指標

一、兩岸間接貿易概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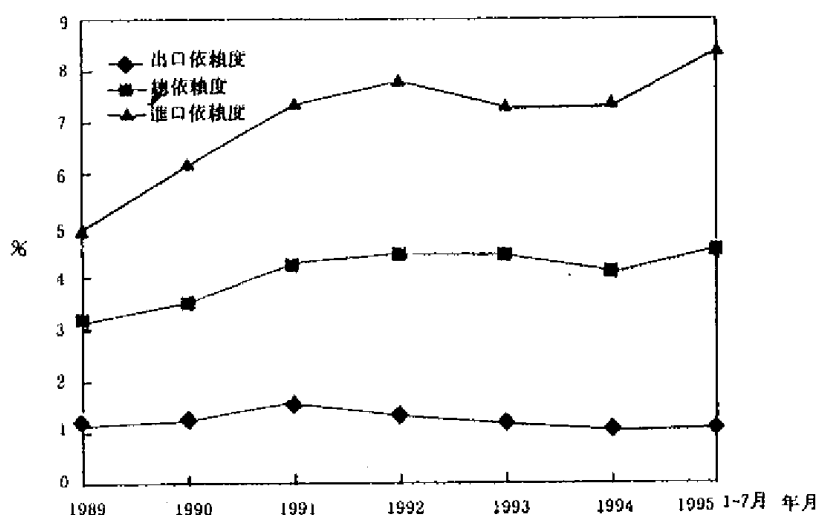
- 據香港海關統計，一九九五年一至七月兩岸經香港轉口貿易總額共計 65.9 億美元，較上年同期的 53.9 億美元，成長率為 22.2%。
其中，臺灣地區轉口輸出大陸地區金額為 57.0 億美元，較上年同期的 46.9 億美元，增加 21.4%；另轉口輸入為 8.9 億美元，較上年同期的 7.0 億美元，增加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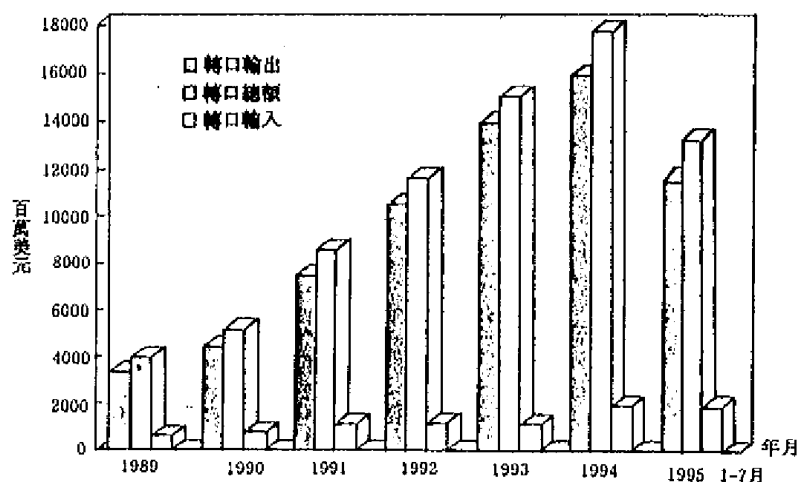
- 據香港海關統計，一九九五年一至七月臺灣地區對大陸地區的貿易總依賴度為 5.29%，與上年年底 5.50% 相較，降低 0.21 個百分點。
其中，出口依賴度為 8.97%，與上年年底 9.15% 相較，降低 0.18 個百分點；進口依賴度為 1.46%，與上年年底 1.51% 相較，降低 0.05 個百分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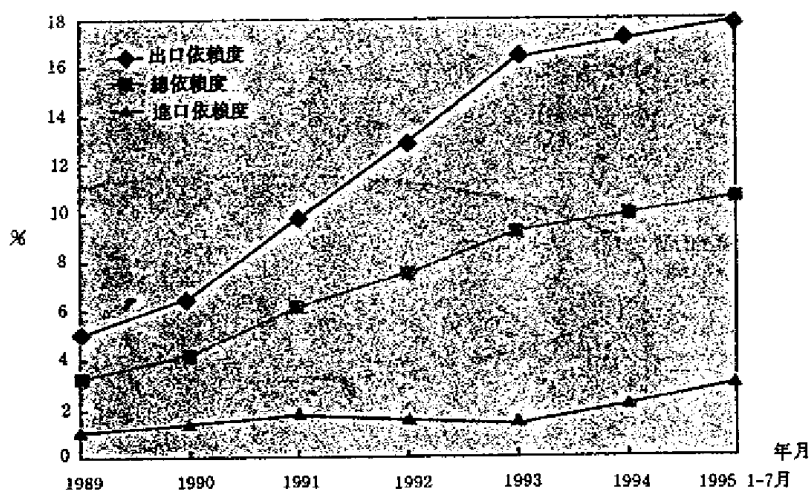
3. 據香港海關統計，一九九五年一至七月大陸地區對臺灣地區的貿易總依賴度為4.40%，與上年年底4.14%相較，提高0.26個百分點。其中，出口依賴度為1.09%，與上年年底1.07%相較，提高0.02個百分點；進口依賴度為8.42%，與上年年底7.36%相較，提高1.06個百分點。



4. 比較臺港統計資料，顯示我海關統計「臺灣對香港之輸出金額」鉅幅高於香港海關統計之「香港自臺灣進口金額」，因此若僅根據香港海關統計資料來計算，兩岸之貿易將有偏低現象。如將臺港統計差異值全數計為對大陸之輸出，而輸入方面採用我海關統計，則一九九五年一至七月兩岸貿易總額估計為132.94億美元，其中，我對大陸輸出估計為114.12億美元，輸入為18.82億美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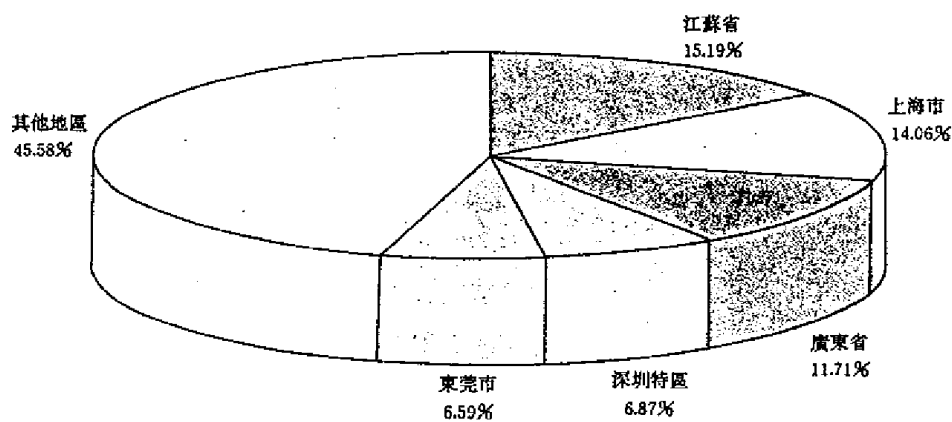
根據上述對兩岸貿易的估計，則一九九五年一至七月臺灣地區對大陸地區的貿易依賴度估計為10.67%，其中，出口依賴度為17.96%，進口依賴度為3.08%。



二、臺商赴大陸投資概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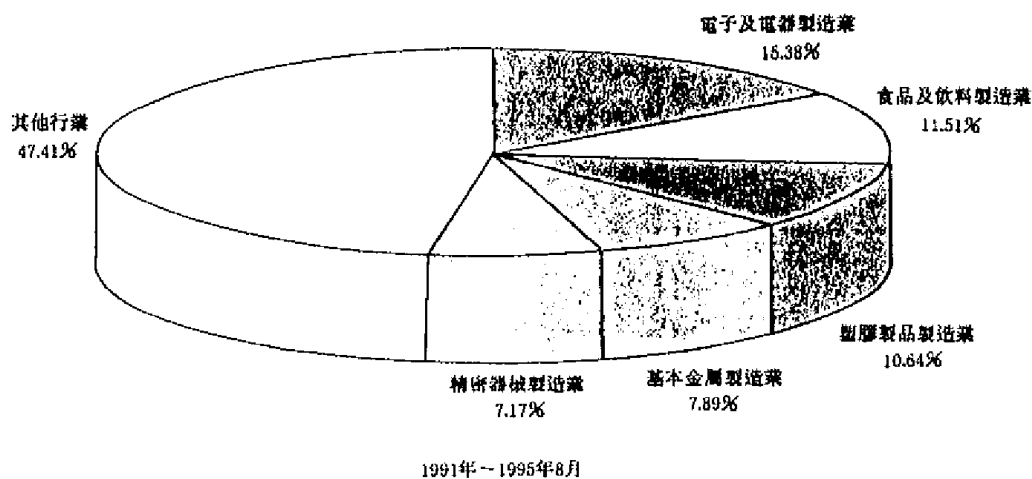
1. 據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統計，一九九五年一至八月臺商對大陸地區經核准間接投資件數共計344件，總核准金額為7.37億美元。

累計自一九九一年至一九九五年八月底止，臺商對大陸總核准投資件數為11,108件，總核准金額達52.89億美元。其中，臺商投資主要集中在江蘇省（不包括上海市）、上海市、廣東省（不包括深圳、東莞市、廣州市）、深圳特區、東莞市等地區，投資金額依序為9.23億美元（占總金額15.19%）、7.44億美元（占14.06%）、6.19億美元（占11.71%）、3.64億美元（占6.87%）、3.48億美元（占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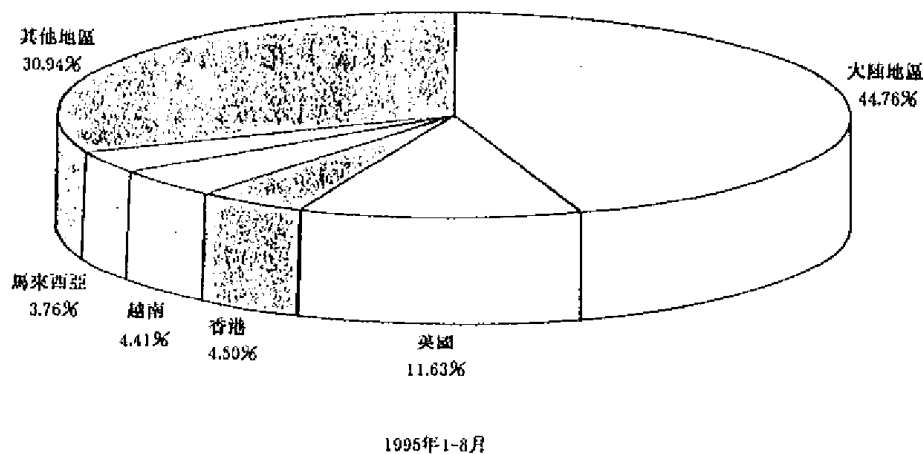


1991年~1995年8月

至於臺商投資行業主要分布於電子及電器製造業、食品及飲料製造業、塑膠製品製造業、基本金屬製造業、精密器械製造業等，投資金額依序為8.13億美元（占總金額15.38%）、6.09億美元（占11.51%）、5.63億美元（占10.64%）、4.17億美元（占7.89%）、3.79億美元（占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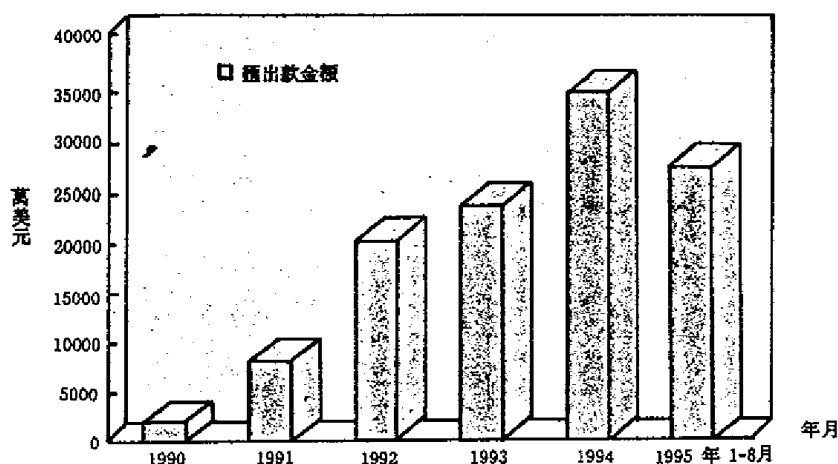
2. 據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統計，一九九五年一至八月臺灣地區核准對外投資金額（含對大陸地區投資）共計16.47億美元，其中核准赴大陸投資金額為7.37億美元，占我核准對外投資總額的44.76%，仍位居第一位。



三、臺灣地區開辦之間接匯款概況

1. 一九九五年一至八月臺灣民衆對大陸地區間接匯出款爲27,370.7萬美元，較上年同期增加26.98%，匯出件數共計72,524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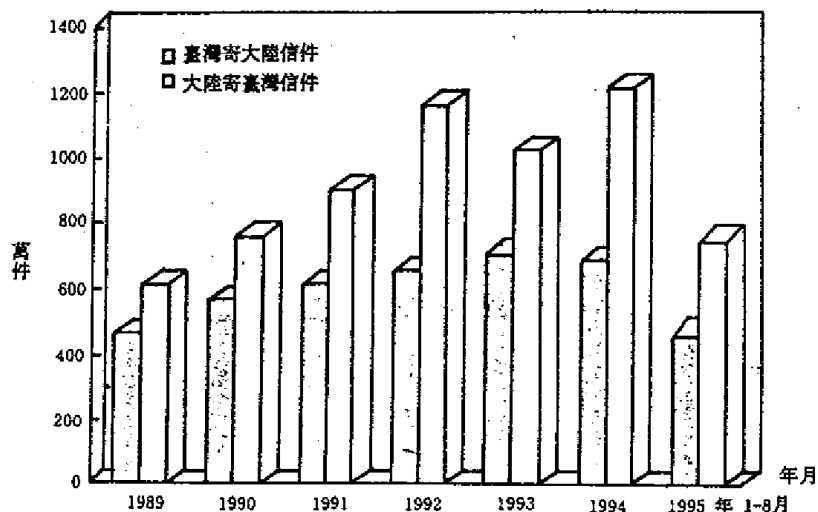
累計自一九九〇年五月至一九九五年八月止，臺灣對大陸個人間接匯出款總額爲11.68億美元，件數爲40.97萬件，平均每件金額2,850.02美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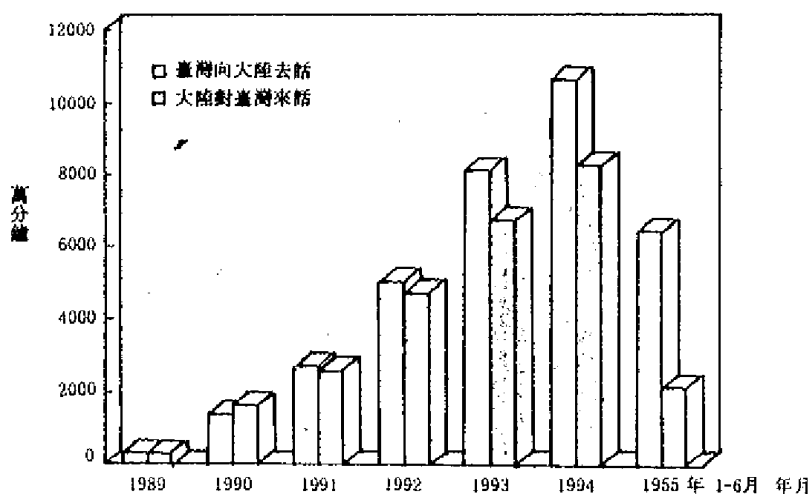
四、郵電往返概況

1. 一九九五年一至八月從臺灣地區寄往大陸地區信件共計4,494,353件，與上年同期的4,636,027件比較，成長率爲-3.1%，自一九八八年四月十八日收寄迄今，件數的增加已呈漸緩的趨勢，一九九四年甚至出現負成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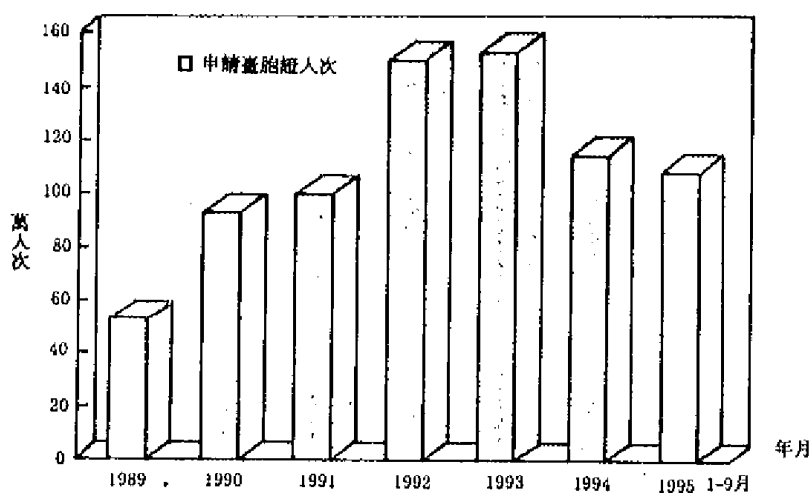
一九九五年一至八月自大陸地區寄至臺灣地區信件共計7,430,369件，與上年同期的8,675,325件比較，成長-14.4%。惟來函數量仍遠高於去函量。



2. 一九九五年一至六月臺灣地區對大陸地區通話次數為20,246,932通，通話時間為63,543,176分鐘，平均每通通話時間約3.0分鐘。
 一九九五年一至六月大陸地區對臺灣地區（來話因須與轉接國或地區拆帳方能獲得確實統計，故資料較為延遲）通話次數為7,288,589通，通話時間為22,044,451分鐘，平均每通通話時間約3.0分鐘。



- 五、據香港中國旅行社統計，一九九五年一至九月臺灣地區民衆申請臺胞證人次約達98.5萬人，較上年同期成長23.90%。
 累計自一九八七年至一九九五年九月底止，臺灣地區民衆申請臺胞證人次共計807.14萬人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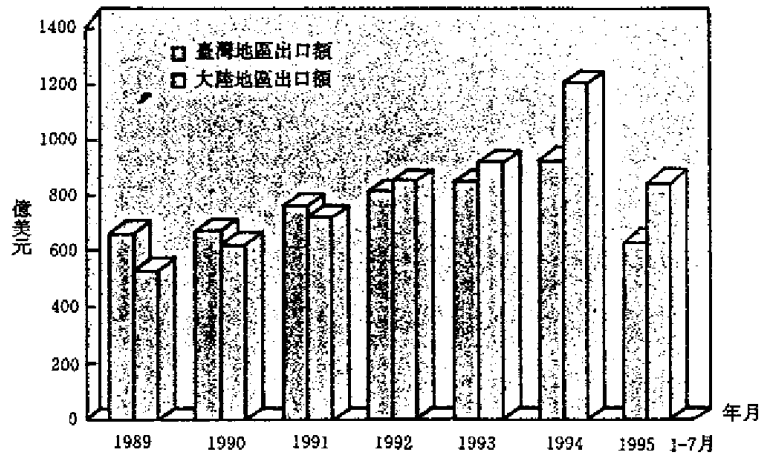


貳·兩岸重要經濟指標

一、兩岸對外貿易概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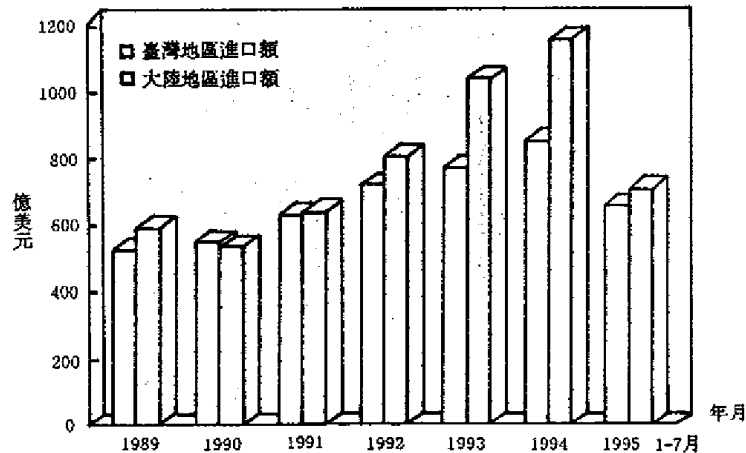
1. 據我國海關統計，一九九五年一至七月臺灣地區出口總額為635.3億美元，與上年同期之512.3億美元相較，成長率為24.0%。

據中共海關統計，一九九五年一至七月大陸地區出口總額820.6億美元，與上年同期之587.4億美元相較，成長率為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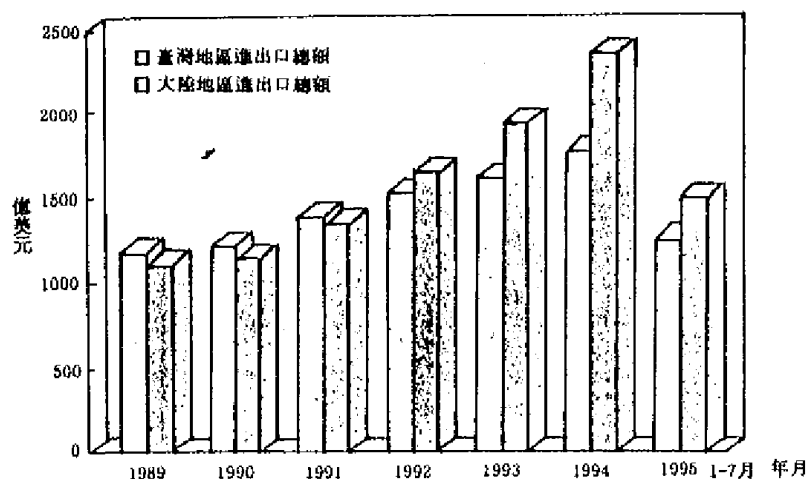


2. 據我國海關統計，一九九五年一至七月臺灣地區進口總額為610.1億美元，與上年同期之481.7億美元相較，成長率為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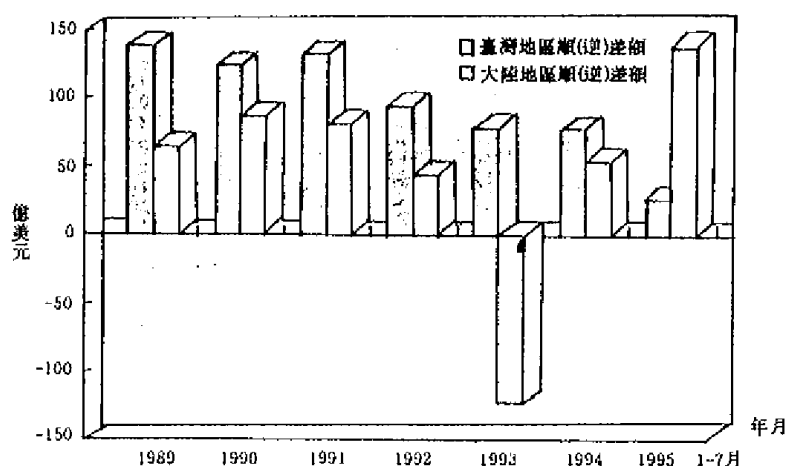
據中共海關統計，一九九五年一至七月大陸地區進口總額677.4億美元，與上年同期之588.1億美元相較，成長率為15.3%。



3. 據我國海關統計，一九九五年一至七月臺灣地區進出口總額為1,245.4 億美元，與上年同期之994.0 億美元相較，成長率為25.3%。
 據中共海關統計，一九九五年一至七月大陸地區進出口總額為1,498.0 億美元，與上年同期之1,175.4 億美元相較，成長率為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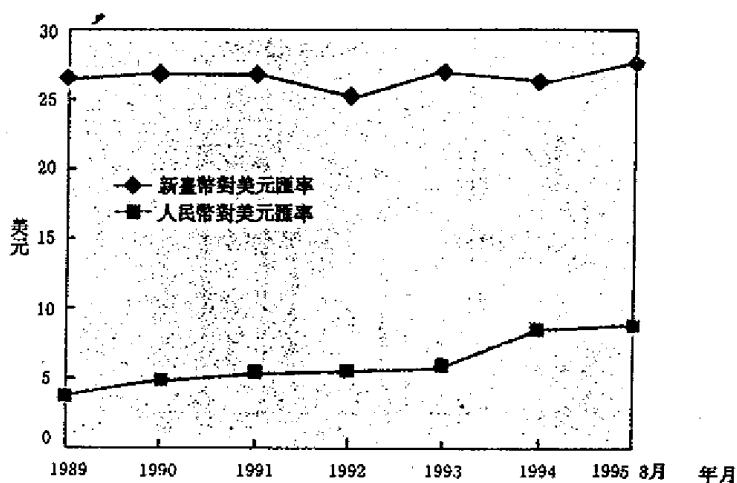
4. 據我國海關統計，一九九五年一至七月臺灣地區貿易順差為25.2 億美元。
 據中共海關統計，一九九五年一至七月大陸地區貿易順差為143.2 億美元。



二、金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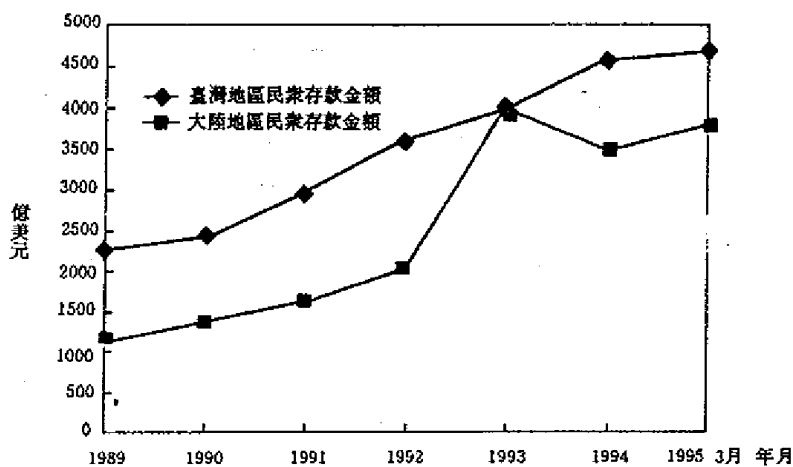
1. 一九九三年新臺幣對美元方面，1 美元兌新臺幣 26.93 元，大陸方面則為 1 美元兌人民幣 5.77 元，經美元折算後，1 元新臺幣換算 0.21 元人民幣，1 元人民幣則換算為 4.68 元新臺幣。

自一九九三年底中共「中國人民銀行」宣布自一九九四年一月一日起，結束人民幣匯率與調劑價分立的雙軌制，採「兩價合一」的作法後，人民幣貶值逾三成。以一九九五年八月底兩岸匯率經美元折算後，1 元新臺幣換算 0.30 元人民幣，1 元人民幣則換算為 3.31 元新臺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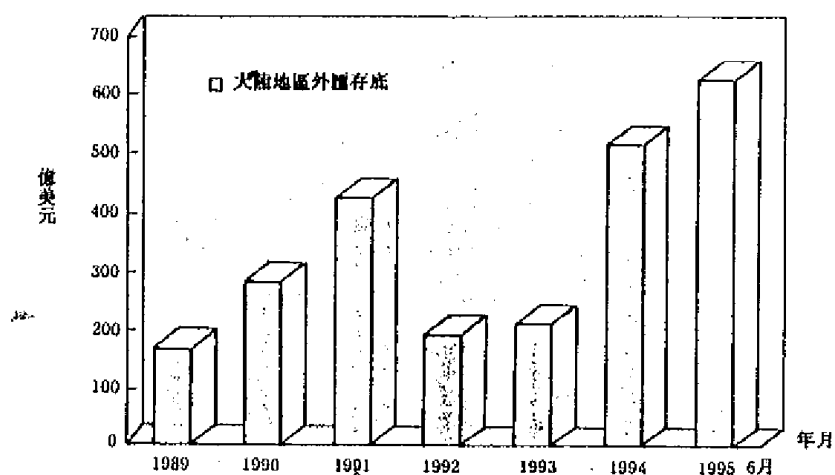
2. 一九九五年一至三月臺灣地區民衆存款餘額共達四千六百八十四億萬美元。

一九九五年一至三月大陸地區民衆存款餘額共計三千七百七十一億四千萬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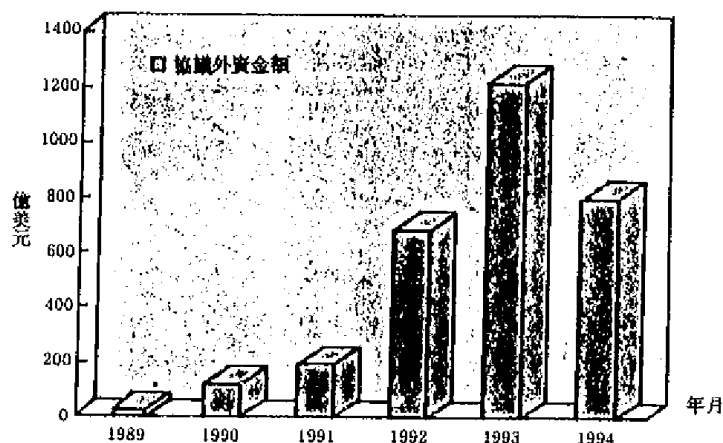
叁·大陸地區經濟概況

一、一九九二年年底大陸地區公布外匯存底為194.4 億美元，遠低於一九九一年底的426.65億美元，此係因大陸地區自一九九二年第三季起公布的外匯存底以國家外匯庫存為標準，未將「中國銀行」外匯結存列入計算之故。依上述標準，一九九三年底大陸地區公布的外匯存底為212 億美元，一九九四年底為516 億美元，一九九五年六月底達626.6 億美元，較上年年底增加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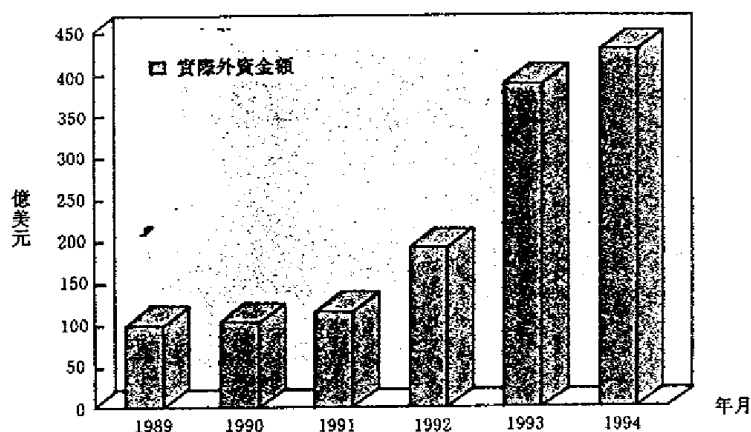


二、大陸地區利用外資概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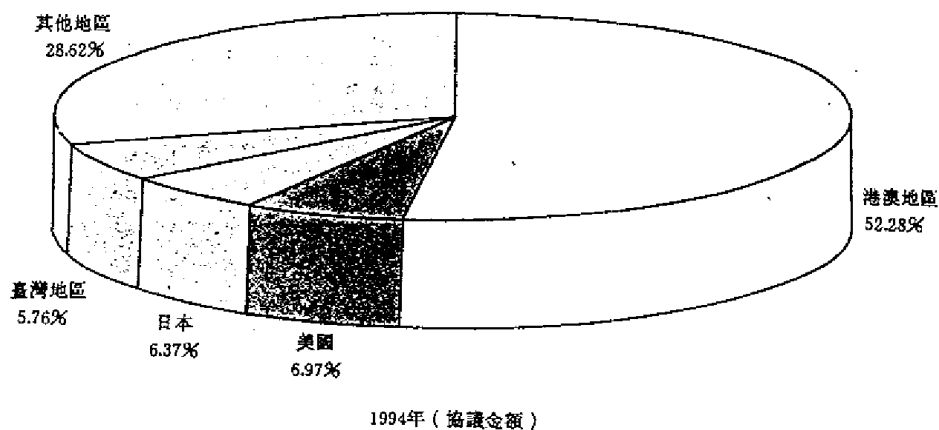
1. 據中共「對外貿易經濟合作部」統計，一九九四年大陸地區簽訂利用外資協議項目共計 47,646 項，金額達937.6 億美元，較上年同期減少23.94%。自一九七九年中共採取開放政策至一九九四年底止，外資協議金額累計達4,079.5 億美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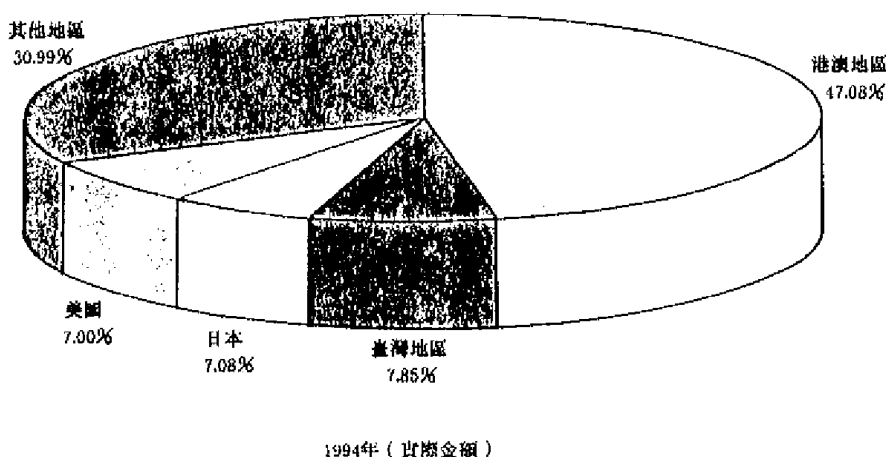
一九九四年大陸地區實際利用外資金額為432.1 億美元，較上年同期減少10.91%。自一九七九年迄一九九四年止，大陸地區實際利用外資金額累計達1,420.4 億美元。



2. 據中共「對外貿易經濟合作部」統計，一九九四年大陸地區簽訂利用外資協議金額為937.6億美元，其中引自臺灣地區金額為54.0 億美元，占外資協議總額之5.76%，次於港澳地區的52.28%、美國的6.97%以及日本的6.37%，位居第四位。



一九九四年大陸地區實際利用外資金額為432.1億美元，其中引自臺灣地區金額為33.9億美元，占實際利用外資總額7.85%，次於港、澳地區的47.08%，位居第二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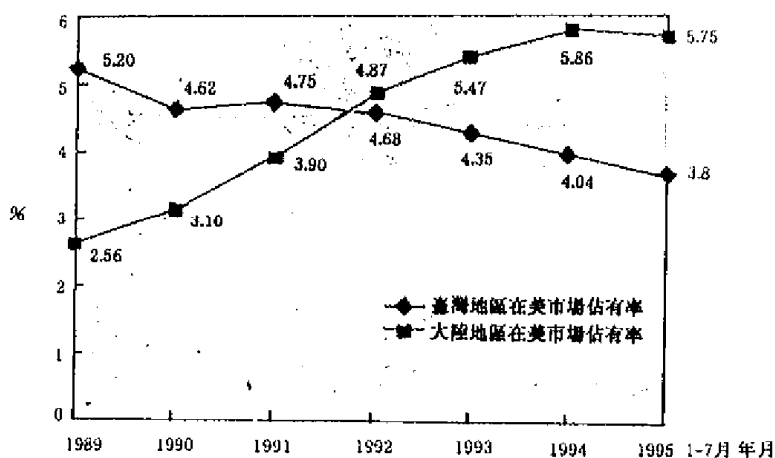
肆·兩岸在國際經濟活動之比較

一、在美市場占有率概況

一九九五年一至七月美國自臺灣進口160.81億美元，占其進口總額4,229億美元之3.80%，較一九九四年同期成長9.7%。

同期，美國自大陸進口243.18億美元，占其進口總額之5.75%，較一九九四年同期成長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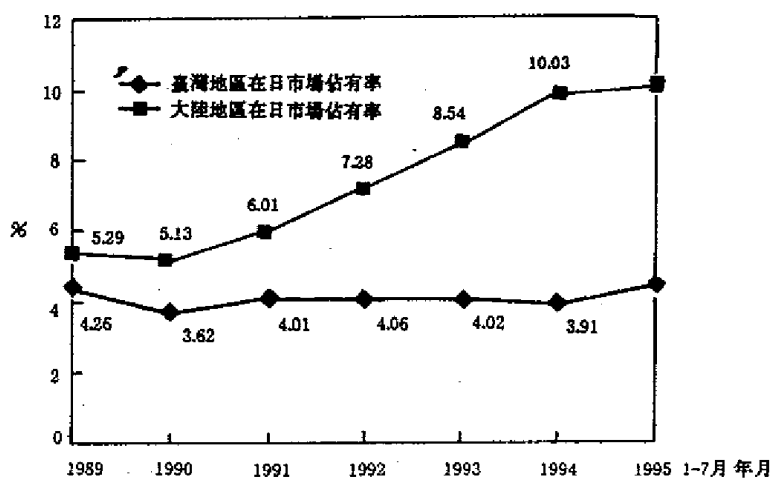
近年來大陸輸美金額年年大幅成長，我對美輸出則相對顯得停滯不前，一九九五年一至七月大陸在美市場之占有率仍超越我國，成為我在美市場之競爭對手。



二、在日市場占有率概況

一九九五年一至七月日本自臺灣進口79.94億美元，占其進口總額1,919億美元之4.16%，較一九九四年同期成長32.89%。

同期，日本自大陸進口190.86億美元，占其進口總額之9.95%，較一九九四年同期成長39.11%。自一九八二年起，大陸輸日金額即已領先臺灣並持續迄今。



二、統計表列

表一 臺灣對香港進出口與轉口大陸金額統計

單位：百萬美元

年度	香港自臺灣進口			香港出口至臺灣			臺港進出口合計		
	金額	其中：轉出口大陸		金額	其中：自大陸轉進口		金額	其中：對大陸轉口	
		金額	占對香港出口金額%		金額	占自香港進口金額%		金額	占香港進出口金額%
1979	1,207.0	21.5	1.8	346.0	56.3	16.3	1,553.0	77.8	5.0
1980	1,592.2	235.0	14.8	445.8	76.2	17.1	2,038.0	311.2	15.3
1981	1,921.8	384.2	20.0	432.1	75.2	17.4	2,353.9	459.4	19.5
1982	1,671.8	194.5	11.6	436.4	84.0	19.2	2,108.2	278.5	13.2
1983	1,705.2	157.8	9.3	473.2	89.9	19.0	2,178.4	247.7	11.4
1984	2,224.0	425.5	20.4	624.1	127.8	20.5	2,848.1	553.2	19.4
1985	2,679.2	986.9	36.8	554.5	115.9	20.9	3,233.7	1,102.7	34.1
1986	3,074.0	811.3	26.4	761.4	144.2	18.9	3,835.4	955.6	24.9
1987	4,274.0	1,226.5	28.7	1,241.7	288.9	23.3	5,515.7	1,515.5	27.5
1988	5,686.8	2,242.2	39.4	1,811.5	478.7	26.4	7,498.3	2,720.9	36.3
1989	6,613.7	2,869.5	43.4	2,112.6	586.9	27.8	8,726.3	3,483.4	39.9
1990	7,446.7	3,278.3	44.0	2,724.1	765.4	28.1	10,170.8	4,043.6	39.8
1991	9,563.0	4,667.2	48.8	3,175.0	1,126.0	35.5	12,738.0	5,793.1	45.5
1992	11,301.2	6,287.9	55.6	3,396.9	1,119.0	32.9	14,698.1	7,406.9	50.4
1993	12,203.7	7,585.4	62.2	3,658.6	1,103.6	30.2	15,862.3	8,689.0	54.8
1994	13,936.3	8,517.2	61.1	3,700.3	1,292.3	34.9	17,636.6	9,809.5	55.6
1995									
1-7月	9,447.3	5,698.5	60.3	2,568.5	893.4	34.8	12,015.8	6,591.9	54.9
7月	1,435.9	834.0	58.1	389.1	134.5	34.6	1,825.0	968.5	53.1

資料來源：香港政府統計處

表二 臺海兩岸經香港轉口貿易金額統計

單位：百萬美元

年 度	貿 易 總 額		經 香 港 轉 口				順(逆)差
			臺灣向大陸出口		臺灣從大陸進口		
	金 額	成長率(%)	金 額	成長率(%)	金 額	成長率(%)	
1979	77.8		21.5		56.3		-34.8
1980	311.2	300.2	235.0	994.4	76.2	35.4	158.8
1981	459.3	47.6	384.2	63.5	75.2	-1.4	309.0
1982	278.5	-39.4	194.5	-49.4	84.0	11.8	110.4
1983	247.7	-11.1	157.9	-18.8	89.9	6.9	68.0
1984	553.2	123.3	425.5	169.6	127.8	42.2	297.7
1985	1,102.7	99.3	986.9	132.0	115.9	-9.3	870.9
1986	955.6	-13.4	811.3	-17.8	144.2	24.4	667.1
1987	1,515.5	58.6	1,226.5	51.2	288.9	100.4	937.6
1988	2,720.9	79.5	2,242.2	82.9	478.7	65.7	1,763.5
1989	3,483.4	28.0	2,896.5	29.9	586.9	22.6	2,309.6
1990	4,043.6	16.1	3,278.3	13.2	765.4	30.4	2,512.9
1991	5,793.1	43.3	4,667.2	42.4	1,126.0	47.1	3,541.2
1992	7,406.9	27.9	6,287.9	34.7	1,119.0	-0.6	5,169.0
1993	8,689.0	17.3	7,585.4	20.6	1,103.6	-1.4	6,481.8
1994	9,809.5	12.9	8,517.2	12.3	1,292.3	17.1	7,224.9
1995							
1-7月	6,591.9	22.2	5,698.5	21.4	893.4	27.5	4,805.1
7月	968.5	17.3	834.0	14.3	134.5	39.8	699.5

註：成長率係指較上年同期增減比例。
資料來源：香港海關統計。

表三 臺灣經香港轉口輸往大陸前二十項產品統計

(一九九五年一至七月)

順序	HS 分類	商 品 名 稱	金額 (百萬美元)	比 重 (%)
1	590310	用聚氯乙烯浸漬、塗佈、被覆或黏合之棉紡織物	213.5	3.75
2	540233	聚酯加工絲紗，非供零售用者	206.2	3.62
3	540742	其他染色梭織物，含尼龍或其他聚醯氨絲重量在85%以上者	193.3	3.39
4	600293	人造纖維製其他針織品及鉤針織品	172.4	3.03
5	390330	丙乙烯-丁二烯-苯乙烯共聚合物，初級狀態	166.7	2.93
6	392042	可撓性聚氯乙烯塑膠板、片、薄膜、箔及扁條	150.6	2.64
7	850490	變壓器、靜電式變流器及整流器之零件	143.3	2.51
8	410422	不帶毛牛皮革，經鞣製（除植物外）而未進一步處理者	105.3	1.85
9	847330	其他自動資料處理機及其附屬單元、磁性或光學閱讀機、轉錄機器等之零件及附件	96.7	1.70
10	550320	聚酯纖維棉，未初梳、未精梳或未另行處理以供紡製用者	96.6	1.69
11	540752	精煉銅線	86.9	1.53
12	590320	其他染色梭織物，含聚酯加工絲重量在85%以上者	84.7	1.49
13	852990	其他用於無線傳輸、雷達、無線電航行輔助、接收器及電視器具等之零件	81.3	1.43
14	740811	最大橫斷面直徑超過6mm之精製銅線	78.8	1.38
15	871419	其他機器腳踏車之零件及附件	78.5	1.38
16	600243	人造纖維製其他經編織物（包括在裝飾織物機上作成者）	78.2	1.37
17	390319	其他聚苯乙烯，初級狀態	74.1	1.30
18	854211	數位單石積體電路	71.4	1.25
19	871120	機器腳踏車，裝有往復式內燃活塞引擎，其汽缸容量超過50立方公分但不超過250立方公分者	59.8	1.05
20	540760	其他梭織物，含未經加工之聚酯絲重量在85%及以上者	59.5	1.04
合 計			2,297.8	40.32

註：臺灣經香港輸往大陸產品結構統計自1995年6月起改採HS號列。
資料來源：香港海關統計

表四 臺灣自大陸地區輸入前二十項產品統計
(一九九五年一至七月)

順序	Hs code	商 品 名 稱	金額 (百萬美元)	比重 (%)
1	72071200003	其他鐵或非合金鋼半製品，以重量計含碳量小於0.25%，橫斷面為長方形者（正方形除外）	170.2	9.04
2	27011200004	煙煤	98.4	5.23
3	72071100004	鐵或非合金鋼半製品，以重量計含碳量小0.25%，橫斷面為長方形（包括正方形），寬度小於厚度二倍者	97.1	5.16
4	72071900006	其他鐵或非合金鋼半製品，以重量計含碳量小於0.25%者	96.5	5.13
5	79011100003	鋅，非合金者，含鋅量在99.99%以上者	92.6	4.92
6	05051000008	填充用之羽毛或羽絨	58.5	3.11
7	72011000001	非合金生鐵，以重量計含0.5%及以下之磷者	58.4	3.10
8	64061000202	皮製鞋面及其零件	57.0	3.03
9	85044019006	其他電源供應器	51.7	2.75
10	44012200001	木片或粒片，非針葉樹類	35.3	1.88
11	72072000101	鐵或非合金鋼半製品，以重量計含碳量0.25%及以上者，橫斷面為長方形（包括正方形），寬度小於厚度二倍者	34.9	1.85
12	85043100008	其他變壓器，容量未超過一仟伏安者	30.0	1.60
13	25161100000	花崗石、原石或略加修整	29.0	1.54
14	76011000007	鋁，非合金，未經塑性加工者	27.0	1.43
15	72072000904	其他鐵或非合金鋼半製品，以重量計含碳量0.25%及以上者	26.6	1.42
16	64062000102	橡膠製外底及鞋跟	22.1	1.17
17	85045010002	感應器，一百伏安以下	21.2	1.12
18	85411090009	其他二極體，光敏二極體或發光二極體除外	17.2	0.91
19	25291000006	長石	17.1	0.91
20	28046900002	其他年代超過100年之骨董	15.2	0.81
合 計			1,055.98	56.11

資料來源：我國海關統計

表五 兩岸間貿易金額之各種統計

單位：百萬美元

年度	香港海關統計			臺灣海關統計			大陸海關統計			本會估算		
	出口	進口	總額	出口	進口	總額	出口	進口	總額	出口	進口	總額
1989	2,896.5	568.9	3,483.4	-	-	-	-	-	-	3,331.9	586.9	3,918.8
1990	3,278.3	765.4	4,043.6	-	-	-	2,255.0	319.7	2,574.6	4,394.6	765.4	5,160.0
1991	4,667.2	1,126.0	5,793.1	-	597.5	597.5	3,639.0	594.8	4,233.9	7,493.5	1,125.9	8,619.4
1992	6,287.9	1,119.0	7,406.9	1.1	747.1	748.1	5,866.0	693.5	6,559.5	10,547.6	1,119.0	11,666.6
1993	7,585.4	1,103.6	8,689.0	16.2	1,015.5	1,031.7	12,933.1	1,461.8	14,394.9	13,993.1	1,103.6	15,096.7
1994	8,517.2	1,292.3	9,809.5	131.6	1,858.7	1,990.3	14,084.8	2,242.2	16,327.0	16,022.5	1,858.7	17,881.2
1995												
1-7月	5,698.5	893.4	6,591.9	159.3	1,882.0	2,041.3	8,148.2	1,728.6	9,876.8	11,412.4	1,882.0	13,294.4

註：1.表中「出口」係指我對大陸出口金額，「進口」係指我自大陸進口金額。

2.我國海關統計，在出口方面，因廠商常未據實填報最終目的地（大陸）卻填報香港為其目的地，致造成統計上極大的誤差；至於進口方面，過去因我限制大陸產品進口，部分大陸貨品可能以走私或偽造產地證明方式濫混進口，故統計有偏低現象，惟今我對大陸產品進口已大為開放，故此項統計可信度已大為提高。

3.大陸海關統計，以往並未認真執行按原產國及消費國來統計（而多以運自國及運往國作為統計標準），故在統計上常高估其對香港貿易的價值，而低估對其他各國之貿易值，惟一九九三年後已作調整，故該資料的參考性已較為提高。

4.本會估算詳見表六。

表六 本會對兩岸貿易金額之估算

單位：百萬美元

年 度	臺灣經香港 轉口輸往大陸 (1)	臺灣對 香港出口 F.O.B. (2)	香港自 臺灣進口 C.I.F. (3)	臺港統計· 差 異 (4)=(2)-(3)	臺灣對大陸 出口估計 (5)=(1)+(4)	臺灣自 大陸進口 (6)	臺海兩岸貿 易總額估計 (7)=(5)+(6)
1981	384.2	1,897.0	1,896.4	0.6	384.8	75.2	460.0
1982	194.5	1,565.3	1,570.1	-4.8	*194.5	84.0	278.5
1983	157.8	1,643.6	1,600.0	43.6	201.4	89.9	291.3
1984	425.5	2,087.1	2,217.5	-130.4	*425.5	127.8	553.3
1985	986.8	2,539.7	2,682.4	-142.7	*986.8	115.9	1,102.7
1986	811.3	2,921.3	3,072.8	-151.5	*811.3	144.2	955.5
1987	1,226.5	4,123.3	4,275.1	-151.8	*1,226.5	288.9	1,515.4
1988	2,242.2	5,587.1	5,682.4	-95.3	*2,242.2	478.7	2,720.9
1989	2,896.5	7,042.3	6,606.9	435.4	3,331.9	586.9	3,918.8
1990	3,278.3	8,556.2	7,439.9	1,116.3	4,394.6	765.4	5,160.0
1991	4,667.2	12,431.3	9,605.0	2,826.3	7,493.5	1,125.9	8,619.4
1992	6,287.9	15,416.0	11,156.3	4,259.7	10,547.6	1,119.0	11,666.6
1993	7,585.4	18,454.9	12,047.2	6,407.7	13,993.1	1,103.6	15,096.7
1994	8,517.2	21,263.0	13,757.7	7,505.3	16,022.5	1,858.7	17,881.2
1995							
1-7月	5,698.5	15,161.2	9,447.3	5,713.9	11,412.4	1,882.0	13,294.4
7月	834.0	2,324.5	1,435.9	888.6	1,722.6	296.7	2,019.3

註：*(4)為負數時不計入(4)而逕以(1)為(5)

資料來源：(1)(3)香港海關統計，(2)我國海關統計

(6)1993年以前採香港海關統計；1994年起改採我國海關統計

表七 臺灣對大陸、香港及全球貿易順差統計

單位：百萬美元

年 度	臺灣經港對大陸貿易之貿易順差				臺灣對香港貿易順差 (1)		臺灣對全球貿易淨順差額 (2)
	香港海關統計		本 會 估 算		金 額	比例(%)*	
	金 額	比例(%)*	金 額	比例(%)*			
1990	2,512.9	20.11	3,629.2	29.04	7,110.4	56.90	12,495.2
1991	3,541.2	26.63	6,367.6	47.88	10,436.0	78.47	13,299.1
1992	5,169.0	54.53	9,428.6	99.47	13,635.1	143.80	9,479.3
1993	6,481.9	82.36	12,889.5	163.78	16,726.8	212.54	7,869.8
1994	7,224.9	93.86	14,163.8	184.01	19,730.0	256.33	7,697.2
1995							
1-7月	4,805.1	190.79	9,530.4	378.42	14,117.1	560.54	2,518.5

註：*係表示本欄金額佔臺灣對全球順差金額之比例
資料來源：(1)(2)依據我國海關統計

表八 臺灣對大陸貿易依賴度統計

單位：%

年 度	香 港 轉 口 貿 易 統 計			本 會 估 算		
	出口依賴度	進口依賴度	貿易依賴度	出口依賴度	進口依賴度	貿易依賴度
1981	1.70	0.35	1.05	1.70	0.35	1.05
1982	0.88	0.44	0.68	0.88	0.44	0.68
1983	0.63	0.44	0.55	0.80	0.44	0.64
1984	1.4	0.58	1.06	1.40	0.58	1.06
1985	3.21	0.58	2.17	3.21	0.58	2.17
1986	2.04	0.60	1.49	2.04	0.60	1.49
1987	2.28	0.83	1.71	2.28	0.83	1.71
1988	3.70	0.96	2.47	3.70	0.96	2.47
1989	4.38	1.12	2.94	5.03	1.12	3.31
1990	4.88	1.40	3.32	6.54	1.40	4.23
1991	6.1	1.79	4.16	9.84	1.79	6.20
1992	7.72	1.55	4.83	12.95	1.55	7.60
1993	8.93	1.43	5.36	16.47	1.43	9.32
1994	9.15	1.51	5.50	17.22	2.18	10.02
1995						
1-7月	8.97	1.46	5.29	17.96	3.08	10.67

註：1.台灣對大陸出口依賴度係指台灣對大陸出口金額占台灣出口總額之比重。餘進口（貿易）依賴度類推。

2.本會估算方法，請參閱表六。

資料來源：香港海關統計、財政部進出口貿易統計

表九 大陸對臺灣貿易依賴度統計

單位：%

年 度	香 港 轉 口 貿 易 統 計			本 會 估 算		
	出口依賴度	進口依賴度	貿易依賴度	出口依賴度	進口依賴度	貿易依賴度
1981	0.34	1.75	1.04	0.34	1.75	1.04
1982	0.38	1.01	0.67	0.38	1.01	0.64
1983	0.40	0.74	0.67	0.40	0.94	0.67
1984	0.49	1.55	1.03	0.49	1.55	1.03
1985	0.42	2.34	1.58	0.42	2.34	1.58
1986	0.47	1.89	1.29	0.47	1.89	1.29
1987	0.73	2.84	1.83	0.73	2.84	2.06
1988	1.01	4.06	2.65	1.01	4.06	2.65
1989	1.12	4.90	3.12	1.12	5.63	3.51
1990	1.23	6.14	3.50	1.23	8.24	4.47
1991	1.57	7.32	4.27	1.57	11.75	6.35
1992	1.32	7.80	4.47	1.32	13.09	7.05
1993	1.20	7.30	4.44	1.20	13.46	7.71
1994	1.07	7.36	4.14	1.54	13.85	7.55
1995						
1-7月	1.09	8.42	4.40	2.29	16.86	8.87

註：本會估算方法，請參閱表六。

資料來源：香港海關統計、大陸海關統計

表十 臺商對大陸地區間接投資金額統計

單位：百萬美元

年 月	經濟部核准資料			大陸對外公佈資料				
	件 數	金 額	平均每 件金額	件 數	協議金額	平均每 件金額	實際金額	資金到 位率%
1991年	237	174.16	0.73	3,800	3,450	0.91	872	25.28%
					(含1991年以前)			
1992年	264	246.99	0.94	6,430	5,540	0.86	1,053	19.01%
1993年	9,329	3,168.41	0.34	10,948	9,970	0.91	3,139	31.48%
1994年	934	962.21	1.03	6,247	5,397	0.86	3,391	62.83%
累計至1994年止	10,764	4,551.78	0.43	27,425	24,357	0.89	8,455	34.71%
1995年1-8月	344	736.96	2.14	-	-	-	-	-
累計至1995年8月止	11,108	5,288.73	0.48	-	-	-	-	-

註：大陸對外公佈資料僅截至1994年底止。

資料來源：1.臺灣地區資料係根據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2.大陸對外公佈資料係根據「對外貿易經濟合作部」統計

表十一 臺商對大陸地區經核准間接投資統計 - 地區別

單位：千美元

年度 地區	1991~1994年			1995年1~8月			累 計		
	件 數	金 額	佔總金額%	件 數	金 額	佔總金額%	件 數	金 額	佔總金額%
江蘇省①	939	678,543	14.91%	50	124,574	16.90%	989	803,117	15.19%
上海市	1,224	606,791	13.33%	50	136,890	18.58%	1,274	743,681	14.06%
廣東省②	1,346	564,254	12.40%	31	54,861	7.44%	1,377	619,115	11.71%
深圳特區	884	348,601	7.66%	19	14,973	2.03%	903	363,574	6.87%
東莞市	746	309,908	6.81%	28	38,417	5.21%	774	348,325	6.59%
廈門市	578	274,939	6.04%	14	19,813	2.69%	592	294,752	5.57%
福建省③	795	248,795	5.47%	8	6,720	0.91%	803	255,515	4.83%
浙江省	560	202,795	4.46%	22	42,838	5.81%	582	245,633	4.64%
廣州市	454	203,301	4.47%	8	29,961	4.07%	462	233,262	4.41%
福州市	367	129,644	2.85%	5	32,572	4.42%	372	162,216	3.07%
其他地區	2,871	984,199	21.62%	109	235,338	31.93%	2,980	1,219,537	23.06%
合 計	10,764	4,551,770	100.00%	344	736,957	100.00%	11,108	5,288,727	100.00%

註：①江蘇省所列資料係指不包括上海市之其他地區。
 ②廣東省所列資料係指不包括深圳地區、東莞市、廣州市之其他地區。
 ③福建省所列資料係指不包括廈門市、福州市之其他地區。
 資料來源：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表十二 臺商對大陸地區經核准間接投資統計 - 行業別

單位：千美元

地區	1991~1994年			1995年1~8月			累 計		
	件 數	金 額	佔總金額%	件 數	金 額	佔總金額%	件 數	金 額	佔總金額%
電子及電器製造業	1,415	668,236	14.68%	56	144,923	19.67%	1,471	813,159	15.38%
食品及飲料製造業	913	534,710	11.75%	28	73,964	10.04%	941	608,674	11.51%
塑膠製品製造業	1,170	512,530	11.26%	17	50,305	6.83%	1,187	562,835	10.64%
基本金屬製品製造業	879	364,230	8.00%	34	52,848	7.17%	913	417,078	7.89%
精密器械製造業	1,305	355,421	7.81%	15	23,884	3.24%	1,320	379,305	7.17%
化學品製造業	716	294,711	6.47%	22	76,896	10.43%	738	371,607	7.03%
非金屬及礦產物製品製造業	466	274,533	6.03%	16	44,920	6.10%	482	319,453	6.04%
紡織業	543	265,833	5.84%	13	53,061	7.20%	556	318,894	6.03%
橡膠製品製造業	200	180,003	3.95%	6	37,113	5.04%	206	217,116	4.11%
木、竹、藤、柳製品製造業	476	181,248	3.98%	11	14,257	1.93%	487	195,505	3.70%
其他	2,681	920,315	20.22%	126	164,786	22.36%	2,807	1,085,101	20.52%
合 計	10,764	4,551,770	100.00%	344	736,957	100.00%	11,108	5,288,727	100.00%

資料來源：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表十三 臺灣核准對外投資統計

單位：千美元

年度	1995年1-8月		
	件數	金額	佔投資額比例
大陸地區	344	736,957	44.76%
美國	54	191,507	11.63%
香港	30	74,039	4.50%
新加坡	15	18,159	1.10%
賴比瑞亞	2	9,500	0.58%
印尼	8	31,917	1.94%
泰國	9	34,129	2.07%
越南	13	72,565	4.41%
馬來西亞	9	61,901	3.76%
日本	9	7,721	0.47%
英國	3	7,670	0.47%
澳大利亞	2	314	0.02%
其他地區	46	400,141	24.30%
合計	544	1,646,520	100%

註：對大陸地區係屬間接投資
資料來源：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表十四 對大陸地區個人間接匯出款統計

單位：美元

年 月	當 期		累 計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1990	15,815	18,903,697.93	15,815	18,903,697.93
1991	57,706	82,018,131.43	73,521	100,921,829.36
1992	90,290	204,473,361.19	163,811	305,395,190.55
1993	73,665	238,343,222.45	237,476	543,738,413.00
1994	99,665	350,107,310.90	337,141	893,845,723.90
1995 1月	16,741	40,796,508.04	353,882	934,642,231.94
2月	6,339	25,390,972.86	360,221	960,033,204.80
3月	8,091	32,837,400.00	368,312	992,870,604.80
4月	7,668	35,177,726.42	375,980	1,028,048,331.22
5月	8,277	37,724,813.34	384,257	1,065,773,114.56
6月	6,573	31,851,960.14	390,830	1,097,625,104.70
7月	10,873	40,194,400.84	401,703	1,137,819,505.54
8月	7,962	29,732,888.50	409,665	1,167,552,394.04
1-8月	72,524	273,706,670.14		
合 計	409,665	1,167,552,394.04	-	-

註：1.自79年5月21日起統計。

2.個人間接匯款包括家匯款、捐贈及其他移轉性支付。

3.旅行支出係由新匯人自行攜出，上述統計不包括此類匯款。

資料來源：中央銀行外匯局

表十五 對大陸地區廠商間接匯出款統計

單位：美元

年 月	當 期		累 計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1993	505	15,898,145.08	505	15,898,145.08
1994	2,521	100,396,939.79	3,026	116,295,084.87
1995 1月	275	8,321,230.24	3,301	124,616,315.11
2月	253	7,016,982.48	3,554	131,623,297.59
3月	349	10,812,862.70	3,903	142,446,160.29
4月	301	10,319,413.94	4,204	152,765,574.23
5月	293	10,550,580.82	4,497	163,316,155.05
6月	319	12,599,651.43	4,816	175,915,806.48
7月	294	11,760,342.10	5,110	187,676,148.58
8月	402	15,169,823.71	5,512	202,845,972.29
1-8月	2,486	86,551,647.42		
合 計	5,512	202,845,972.29	-	-

註：廠商間接匯出款業務於82.7.29開始辦理。
資料來源：中央銀行外匯局

表十六 自大陸地區間接匯入款統計

單位：美元

年 月	當 期		累 計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1993	809	26,132,382.27	809	26,132,382.27
1994	2,342	88,626,917.84	3,151	114,759,300.11
1995 1月	106	2,125,572.39	3,257	116,884,872.50
2月	46	1,854,572.55	3,303	118,739,445.05
3月	103	4,964,926.24	3,406	123,704,371.29
4月	91	4,532,493.56	3,497	128,236,864.85
5月	78	3,930,672.20	3,575	132,167,537.05
6月	76	7,686,336.79	3,651	139,853,873.84
7月	75	8,443,900.49	3,726	148,297,774.33
8月	173	5,838,925.53	3,449	154,136,699.86
1-8月	748	39,377,399.75		
合 計	3,449	154,136,699.86	-	-

註：大陸地區間接匯入款業務於82.7.29開始辦理。
資料來源：中央銀行外匯局

表十七 兩岸信件往返資料統計

年 月	臺 灣 寄 大 陸 信 件				大 陸 寄 臺 灣 信 件				合 計
	總信件數	成長率(%)	掛號信件數	比重(%)	總信件數	成長率(%)	掛號信件數	比重(%)	
1988	1,982,655	-	-	-	2,034,984	-	-	-	4,017,639
1989	4,683,529	136.2%	-	-	6,127,164	201.1%	-	-	10,810,693
1990	5,663,116	20.9%	-	-	7,586,429	23.8%	-	-	13,249,545
1991	6,127,753	8.2%	-	-	9,042,374	19.2%	-	-	15,170,127
1992	6,561,811	7.2%	-	-	11,661,303	17.9%	-	-	18,223,114
1993	7,104,266	8.3%	188,229	-	10,298,221	-3.4%	176,868	-	17,402,487
1994	6,887,026	-3.1%	287,080	4.17%	12,224,631	18.7%	322,234	2.63%	19,111,657
1995									
1月	954,467	7.3%	29,548	3.10%	1,438,826	-10.7%	26,836	1.87%	2,393,293
2月	566,664	-10.3%	22,012	3.88%	1,004,476	-29.6%	22,276	2.22%	1,571,140
3月	529,447	-7.4%	31,398	5.93%	831,626	-16.5%	23,666	2.85%	1,361,073
4月	494,368	-6.2%	23,505	4.75%	841,501	-21.9%	24,381	2.90%	1,335,869
5月	505,837	-3.3%	26,105	5.16%	867,662	-8.0%	24,162	2.78%	1,373,499
6月	480,632	-9.9%	26,034	5.42%	817,753	-9.4%	24,293	2.97%	1,298,385
7月	505,442	-1.9%	28,139	5.57%	806,011	-7.3%	27,844	3.45%	1,311,453
8月	457,496	-5.4%	26,049	5.69%	822,514	-3.1%	25,042	3.45%	1,280,010
1-8月	4,494,353	-3.1%	212,790	4.73%	7,430,369	-14.4%	198,500	2.67%	11,924,722
合 計	43,504,509	-	739,659	-	66,405,475	-	819,492	-	109,909,984

註：1.往大陸信件自1988.4.18起收寄，來臺信件自1988.3.19起遞送。

2.掛號信件往返係自1993年6月起寄送。

3.成長率係指與上年同期增減相較。

4.比重係指掛號信件數占總信件數之比例。

資料來源：交通部郵政總局

表十八 兩岸來去電話量統計

年 月	來 話			去 話		
	次 數 (A)	分 鐘 數 (B)	平 均 (B)/(A)	次 數 (C)	分 鐘 數 (D)	平 均 (D)/(C)
1989	767,606	2,938,639	3.8	730,351	3,074,102	4.2
1990	4,408,508	16,397,167	3.7	4,421,585	13,998,565	3.2
1991	8,025,958	26,257,083	3.3	8,719,209	26,989,763	3.1
1992	14,305,592	47,070,841	3.3	16,204,107	50,272,151	3.1
1993	21,168,576	67,246,604	3.2	26,790,107	81,144,874	3.0
1994	26,973,808	82,246,043	3.0	34,191,993	105,995,888	3.1
1995 1月	*1,274,367	*3,936,036	3.1	2,967,151	9,125,424	3.1
2月	*1,089,480	*3,253,829	3.0	2,577,683	9,004,950	3.5
3月	*1,325,200	*4,011,000	3.0	3,544,933	11,069,734	3.1
4月	*1,202,805	*3,613,231	3.0	3,453,238	10,822,575	3.1
5月	*1,250,446	*3,759,184	3.0	3,959,130	11,737,754	3.0
6月	*1,146,291	*3,471,171	3.0	3,744,797	11,782,739	3.1
7月				3,983,231	11,602,123	2.9
8月				3,800,010	11,606,199	3.1
1- 6月	*7,288,589	*22,044,451	3.0			
1- 8月				28,030,173	86,751,498	3.1
合 計	*82,938,637	*264,200,828	3.2	119,087,525	368,226,841	3.1

註：1.兩岸電話係自1989年6月起開放。

2.*因轉接國或地區帳單尚未到齊，故為初步統計資料。

資料來源：交通部國際電信管理局

表十九 申請臺胞證人次統計

單位：人次

年 月	當 期		累 計
	人 次	成長率*	
1988	430,766	-	430,766
1989	530,534	23.16%	961,300
1990	925,768	74.50%	1,887,068
1991	995,714	7.45%	2,882,782
1992	1,511,990	52.0%	4,394,772
1993	1,541,628	2.0%	5,936,400
1994	1,150,000	-19.67%	7,086,400
1995 1月	93,000	-15.45%	7,179,400
2月	83,000	3.75%	7,262,400
3月	140,000	-6.67%	7,402,400
4月	99,000	3.13%	7,501,400
5月	110,000	37.50%	7,611,400
6月	110,000	71.88%	7,721,400
7月	120,000	26.32%	7,841,400
8月	130,000	30.00%	7,971,400
9月	100,000	-	8,071,400
1-9月	985,000	23.90%	
合 計	8,071,400	-	-

註：1.國人赴大陸探親自民國76年起開放。

2.*成長率係指較上年同期增減比例。

資料來源：香港中國旅行社

表二十 兩岸人民往返（入出境）人次統計

單位：人次

年 度	大 陸 地 區 人 民 來 臺	臺 灣 地 區 人 民 前 往 大 陸
1987	28	6,905
1988	381	223,647
1989	4,838	188,372
1990	7,520	70,395
1991	11,074	14,350
1992	13,134	8,141
1993	18,343	384,081
1994	23,562	413,026
1995		
1月	2,628	40,423
2月	2,034	26,705
3月	2,681	32,050
4月	2,842	47,235
5月	2,715	24,585
6月	3,010	23,955
7月	3,607	30,114
8月	4,649	16,082
9月	5,260	25,680
1-9月	29,426	296,829
合 計	108,306	1,599,701

註：本表係依據「入出境申請書」、「赴大陸地區登記表」統計，國人持護照及入出境許可前往大陸未報備登記者，未予列入，故與實際前往大陸地區人數差距甚大。

資料來源：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

表二十一 大陸地區非法入境人民留置時間統計

留置 時間	一 個 月 以 內	一 至 二 個 月	二 至 三 個 月	三 至 四 個 月	四 至 五 個 月	五 至 六 個 月	六 個 月 以 上	合 計 (人)
宜 蘭	93	61	91	26	2	18	9	300
新 竹	94	82	55	56	138	54	51	530
馬 祖	26	0	0	3	12	77	185	303
合 計	213	143	146	85	152	149	245	1,133

資料日期：截至84年9月30日止。

資料來源：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

表二十二 大陸地區非法入境人民地區別、年齡別分析統計

籍貫	福建省										其他 省份	合計 (人)
	平潭	長樂	晉江	福州	惠安	泉州	南安	福清	廈門	其他縣		
(人 人 數)	13,751	1,969	306	733	835	440	264	770	187	2,714	578	22,547
(比 % 重)	61.0	8.7	1.4	3.3	3.7	2.0	1.2	3.4	0.8	12.0	2.6	100.0
年 齡	15 歲 以 下	16 20 歲	21 25 歲	26 30 歲	31 35 歲	36 40 歲	41 45 歲	46 50 歲	51 55 歲	56 歲 以 上	不 詳	合 計
(人 人 數)	121	1,854	4,257	5,042	4,487	2,795	2,000	895	278	190	628	22,547
(比 % 重)	0.5	8.2	18.9	22.4	19.9	12.4	8.9	4.0	1.2	0.8	2.8	100.0

資料日期：79年7月1日至84年9月30日止。

資料來源：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

表二十三 大陸地區人民非法入境查獲、遣返人數統計

單位：人

年	月	查獲收容	遣返
1987		762	760
1988		2,260	1,978
1989		3,384	3,664
1990		5,626	5,057
1991		3,998	4,409
1992		5,446	3,445
1993		5,944	5,986
1994		3,216	4,710
1995	1月	182	0
	2月	155	0
	3月	90	141
	4月	131	0
	5月	213	412
	6月	69	0
	7月	171	219
	8月	151	0
	9月	222	0
	1-9月	1,384	772
合 計		32,020	30,781

資料日期：76年9月20日至84年9月30日止。

資料來源：內政部警政署入出境管理局

表二十四 大陸地區重要經濟指標資料(1995年1~9月)

項 目	單 位	實 績	比去年同 期增長%	備 註
國內生產總值	人民幣億元	36,495	9.8%	
工業增加值	人民幣億元	12,820	13.4%	
農業增加值		5,790	5%	
全社會固定資產投資額 其中：國有單位投資	人民幣億元	6,892	17.6%	
社會商品零售價格			16.6%	
居民消費品零售價格				
社會消費品零售總額	人民幣億元	14,418	29.6%	扣除物價因素，實 際銷量增長11.1%
進出口總額		1,976.6	25.5%	
出口額	億美元	1,070.4	34.8%	
進口額		906.2	16.2%	
逆差		+164.2		
城鎮居民人均生活費收入	人民幣元	2,880	25.5%	扣除物價因素，實 際增長5.8%
農民人均現金收入	人民幣元	1,120	34%	扣除物價因素，實 際增長10%

資料來源：大陸「中國經濟新聞」、人民日報、「國家統計局」統計。

중국·양국간 홍콩반환 협정

1984年 12月 19日 調印되었으며, 1985年 5月 27日 北京에서 英·中兩國의 批准書가 交換됨으로써 그날자로 正式發效가 된 香港返還에 關한 英國과 中共間의 協定은 8個項의 「香港問題에 關한 英·中 共同宣言」(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과 第1, 第2 및 第3 附屬書(Annex I to the Joint Declaration, Annex II and Annex III), 그리고 英·中間에 交換된 英國側과 中共側覺書(United Kingdom Memorandum and Chinese Memorandum)로 構成되어 있다.⁴⁴⁾

8個項의 共同宣言文 內容을 各項別로 簡略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英·中 共同宣言

英國과 中共은 歴史的으로 남겨진 香港問題를 協議를 통하여 妥當하게 解決하는 것이 香港의 繁榮과 安定에 有益하며, 兩國關係를 한층더 強化시키고 發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見解를 같이하여 兩國代表는 會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宣言하기로 合意하였다.

1) 中共은 香港地域의 回復이 全中國人의 念願임을 宣言하며, 또한 1997年 7月 1日부터 香港에 對한 主權行使를 繼續하기로 決定하였음을 宣言한다.(香港島, 九龍, 新界地를 包含하여 以下 香港이라 한다.)

2) 英國은 1997年7月1日에 香港을 中共에 返還할 것을 宣言한다.

3) 中共은 香港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基本方針과 政策을 取할 것을 宣言한다.

- ① 中共은 香港에 對한 主權을 回復함에 따라 中共憲法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香港特別行政區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SAR) 를 設定한다.
- ② 香港特別行政區는 外交, 國防을 除外한 高度의 自治權을 享有한다.
- ③ 香港特別行政區는 行政管理權, 立法權과 獨立된 司法權 및 終審權을 享有하며 現行法律은 基本的으로 變하지 않는다.
- ④ 香港特別行政區 政府는 香港住民들로 構成되며, 特別行政區 行政長官 (Chief Executive) 은 香港內에서의 選舉 또는 協議에 依據, 中共中央政府가 任命한다. 主要公務員은 香港特別行政區 行政長官이 指名하고 中共中央政府가 任命하며 外國籍者도 雇傭될 수 있다.
- ⑤ 香港의 現行社會制度, 經濟制度 및 生活樣式은 不變하며 모든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고, 私有財產, 企業所有 그리고 外國人投資도 法에 依해 保護한다.
- ⑥ 香港特別行政區는 自由港과 別途 關稅地域으로서의 地位를 維持한다.
- ⑦ 香港特別行政區는 國際金融센터의 地位를 維持하며, 資本의 自由移動, 兌換貨幣로서 香港달러의 自由流通制度를 維持한다.
- ⑧ 香港特別行政區는 獨自的財政을 갖고 中共中央政府는 稅金을 賦課하지 않는다.

⑨ 香港特別行政區는 英國 및 其他國家들과 相互有益한 經濟關係를 樹立하고 그들의 香港內 經濟的利益도 充分히 配慮한다.

⑩ 香港特別行政區는 「Hong Kong, China」의 名稱下에 外國, 地域, 또는 關係國際機構와 獨自的으로 經濟, 文化關係를 維持, 發展시키고 適切한 協定을 締結할 수 있으며, 獨自的으로 香港出入 旅行證을 發給할 수 있다.

⑪ 香港特別行政區의 公安維持는 香港特別行政區 政府가 責任진다.

⑫ 前記한 中共의 香港에 關한 基本政策과 第1附屬書 內容은 中共의 香港關係 基本法에 規定될 것이며, 그것은 50年間 不變할 것이다.

4) 1997年 6月 30日까지의 過渡期間中の 香港에 對한 行政責任은 英國政府가 지며 中共政府도 이에 協力을 提供할 것을 宣言한다.

5) 1997年의 順調로운 政權移讓과, 共同宣言의 效果的인 履行을 爲하여 英·中 共同連絡委員會 (Joint Liaison Group)를 共同宣言發效와 同時에 設置한다. 本共同宣言의 第2附屬書規定에 따라 英·中 共同連絡委員會가 設立되며 그 機能을 다할 것이다.

6) 英國과 中共은 香港의 土地賃借 契約과 其他 關聯事項에 關하여 本共同宣言의 第3附屬書에 規定된 바에 따라 處理한다.

7) 英國과 中共은 本共同宣言과 附屬書內容 全部를 實施할 것에 合意한다.

8) 本共同宣言은 批准書交換日로부터 發效하며 批准書는 1985年 6月 30日以前에 北京에서 交換된다. 本共同宣言과 附屬書는 同一한 拘束力을 가진다.

2. 附屬書

第1附屬書는 「中共政府의 香港에 對한 基本方針, 政策의 具體的 說明」을 內容으로한 14個項과 第2附屬書는 「英·中 共同連絡委員會」에 關한 規定 13個項 및 第3附屬書는 「土地契約」에 關한 8個項으로 構成되어 있는바 各附屬書內容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1) 第1附屬書

中共의 香港에 對한 基本政策에 關한 說明이다.

① 中共은 中共憲法 31條에 依하여 1997年7月1日부터 中共의 香港特別行政區를 設置하며, 中共 全國人民代表會議는 特別行政區基本法을 制定 公布하고 그後 社會主義制度와 政策을 實施하지 않고 香港의 既存資本主義制度와 生活樣式을 維持토록하며 50年間 變更하지 않을 것을 法律로 規定한다.

香港特別行政區는 中共中央政府의 直轄下에, 高度의 自治權을 享有하며 外交, 國防以外的 行政, 立法, 獨立司法權(終審權 包含)을 가진다. 中央政府는 第1附屬書 11項에 規定된 涉外事務를 獨自적으로 處理할 수 있는 權限을 香港特別行政區에 賦與한다. 香港特別行政區의 政府와 立法機關은 香港現地人으로 構成되며 香港特別行政區 行政長官은 現地에서 選舉 또는 協議를 通하여 選出하고 中共中央政府가 任命한다. 特別行政區 立法機關은 選舉를 通하여 選出되며, 行政機關은 立法機關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香港特別行政區는 中國語外에 英語를 使用할 수 있으며 中共의 國旗와 國章을 揭揚함과 아울러 區旗와 區章을 使用할 수 있다.

② 香港特別行政區 成立後 基本法과 相衝하는 法律 및 香港特別行政區 立法機關이 改正하는 法令을 除外하고는 現行法令이 繼續 維持된다. 特別行政區의 立法權은 香港特別行政區의 立法機關에 屬한다.

③ 香港特別行政區 成立後 香港特別行政區 裁判소가 終審權을 享有함으로써 發生한 變化를 除外하고는 그때까지 香港에서 實施되고 있던 司法體制는 그대로 維持된다. 香港特別行政區의 裁判權은 香港特別行政區의 裁判소에 屬하며 香港特別行政區 裁判소는 獨自的으로 裁判하며 如何한 干涉도 받지 않는다.

香港特別行政區의 檢察機關은 外部의 干涉을 받지 않고 刑事檢察活動을 主管한다.

④ 香港特別行政區 成立後 그때까지 香港政府에 勤務하고 있는 公務員과 司法要員(警察包含)은 繼續勤務하며, 現在와 同一한 各種手當, 惠澤을 附與받는다. 香港特別行政區政府는 現在雇用中인 外國人을 繼續雇用할수 있으며, 또는 追加雇用도 可能하다.

(但 警察部門을 包含한 政廳의 長官級 主要部署의 長과 一部 主要部署의 次席은 除外된다.)

⑤ 香港特別行政區의 財源, 豫算, 決算編成을 包含하는 財政事務를 獨自的으로 管理하며, 豫算·決算은 記錄을 爲하여 中央政府에 報告해야 한다. 中央政府는 香港特別行政區에 稅金을 賦課하지 않는다.

⑥ 香港特別行政區는 香港特別行政區 發足以前에 取하고 있던 資本主義經濟制度와 貿易制度를 그대로 維持하며 貿易, 經濟政策을 獨自的으로 樹立할 수 있으며 獨自的 關稅制度를 維持한다. 國際機構 및 國際貿易協定參加가 可能하다.

⑦ 香港特別行政區는 國際金融센터의 地位를 維持하며 香港貨幣를 法定貨幣로서 發行하며 兌換이 可能하다.

⑧ 現行 海運管理와 經營은 繼續 維持되며 「Hong Kong, China」 名義로 船舶登記를 行한다.

⑨ 香港特別行政區는 國際 및 地域 航空센타로서의 地位를 維持한다. 中央政府로부터 特別許可를 받아 現行航空協定을 更新, 改正하고 協定이 없는 外國과는 暫定航空協定을 交渉, 締結할 수 있다.

⑩ 香港特別行政區는 香港特別行政區 發足以前の 教育制度를 持續시킨다.

⑪ 中央政府가 外交業務를 管掌함을 原則으로 하여 香港特別行政區 政府代表는 中共中央政府代表의 一員으로서 中央政府가 권장하는, 香港特別行政區와 直接關係가 있는 外交交渉에 參加할 수 있다. 香港特別行政區內 領事機構, 政府或은 半官機構를 設置할 境遇 中央政府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中共과 正式外交關係가 있는 國家들의 香港內 領事館은 繼續 維持可能하며 中共이 承認하지 않은 國家들은 非政府機構만을 設置할 수 있다.¹⁾

⑫ 香港特別行政區의 治安維持는 香港特別行政區政府의 責任이며,

註 1) 香港內 外國公館地位에 關한 項.

附屬書 1 第 11 項下段에 規定된 香港內 外國公館地位에 關한 條項

Foreign consular and other official or semi-official missions may be establish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th the approval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Consular and other official missions established in Hong Kong by states which have established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b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consular and other official missions of states having no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either be maintained or changed to semi-official missions. States not recogni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n only establish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The United Kingdom may establish a Consulate-General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防衛目的으로 中共中央政府에 依해 派遣된 香港特別行政區 駐屯軍은 特別行政區 內政에 干涉못한다. 2)

⑬ 香港特別行政區政府는 法律에 따라 香港特別行政區의 住民, 其他의 權利와 自由를 保障한다.

香港特別行政區政府는, 香港의 既存法律에 規定되어있는 人身, 言論, 出版, 集會, 結社, 勞組의 組織과 參加, 通信, 旅行, 移轉, 罷業, 示威, 職業選擇, 學術研究, 信仰의 自由, 住宅不可侵, 婚姻의 自由와 家族을 自由로이 養育할 수 있는 權利를 繼續 維持토록한다.

누구든지 秘密法律相談을 할 수 있는 權利와 司法救濟를 得할 수 있는 權利를 享有하며 香港에서 既이 適用되고 있는 「民權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과 「經濟, 社會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은 繼續 維持시킨다.

⑭ 香港에서 出生하였거나, 通常 繼續 7年以上 香港에 居住한 모든 中國人과 香港以外에서 出生한 그들의 中國籍의 子女, 通常 繼續 7年以上 香港에 居住하고 香港을 永久居住地로 하는 모든 其他人들과 香港에서 出生한 21才미만의 子女, 그리고 特別行政區 設置以前에 香港에만 居住權을 갖고 있는 모든 其他人들은 永住權을 取得할 수 있다.

註 2) 附屬書 1 第 12 項에 規定된 香港內 中共軍 駐屯問題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Military forces sent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to be station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for the purpose of defence shall not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xpenditure for these military forces shall be borne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2) 第2附屬書

英·中 共同連絡委員會에 關한 規定

① 共同宣言의 效果的 履行과 1997年의 順調로운 政權移讓을 爲해 友好精神에 立却한 討議를 繼續하고 香港問題에 關한 兩國政府의 既存協力關係를 더욱 強化하는데 相互 同意하여,

② 兩國의 連絡, 協議, 情報交換의 必要上 英·中 共同連絡委員會設置를 合意했다.(以下 委員會)

③ 委員會 職責

- a) 共同宣言實施에 關한 協議
- b) 1997年의 圓滑한 政權移讓에 關한 事項의 討議
- c) 双方이 決定한 事項에 關한 相互 情報交換 및 討議

④ 委員會는 委員會設置日로부터 1997年 7月 1日까지의 期間의 前半期中은 다음 事項을 協議한다.

- a) 特別行政區가 獨自의 關稅地域으로서의 經濟關係, 特히 GATT, MFA와 其他 國際協定에의 繼續 參加를 爲해 兩國이 取할 措置
- b) 香港에 關聯되는 國際的權利 및 義務의 繼續適用을 爲해 兩國이 取할 措置

⑤ 委員會 設置日로 부터 1997年 7月 1日까지의 期間의 後半期中에는 다음 事項等を 協議한다.

- a) 1997年의 順調로운 政權移讓을 爲한 節次
- b) 香港이 其他國家, 地域, 關聯國際機構와 經濟文化關係를 維持, 發展시키고 協定을 締結하는 것을 돕기 爲한 措置

⑥ 委員會는 權力機關이 아니고 連絡機關이므로 香港의 行政에 介入하거나 監督하는 기능은 없다.

⑦ 双方은 大使級 首席代表 1名과 各4名의 委員을 指名 派遣한다.

⑧ 委員會는 英·中協定 發效와 同時에 發足, 委員會 駐在地는 1988年 7月 1日부터 香港을 本據地로 하여 2,000年 1月 1日까지 活動한다.

⑨ 委員會는 北京, London, 香港에서 每年 最少限 한번은 會議을 開催한다.

⑩ 委員會 委員은 前記三地點에서 相應한 外交特權과 免責權을 享有한다.

⑪ 委員會는 必要時 專門家그룹을 設置할 수 있다.

⑫ 委員會와 專門家그룹會議에는 專門家の 出席도 可能하다.

⑬ 委員會 實務節次는 附屬書 規定에 依하여 討議決定한다.

3) 第3附屬書

土地賃借契約에 關한 事項 및 其他關聯事項을 規定한 것이다.

① 共同宣言發效前에 賦與하였거나 또는 決定된 모든 土地賃借權과 그後 本附屬書 2, 3項에 依하여 賦與되고, 1997年 6月 30日以後까지 有效한 모든 土地賃借權은 1997年 以後의 香港特別行政區 政府에 依해 認定 保護된다.

② 短期 및 特殊用途契約을 除外하고 英國香港政府가 許可한, 期限이 1997年 6月 30日以前인 것으로서 延長權이 없는 土地 賃借契約은 借主가 願한다면 2,047年 6月 30日을 限度로 追加權利金 (Additional premium)을 支拂할 必要없이 賃借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③ 英國香港政府는 共同宣言發效日부터 1997年 6月 30日까지, 期間이 2047年 6月 30日以前의 新規土地賃借契約을 許可할 수 있다.

④ 英國香港政府가 共同宣言發效日부터 1997年 6月 30日까지 許可할 수 있는 新規借地는 每年 50헥타를 限度로 한다.

⑤ 1997年 7月 1日 前에는 英國香港政府가 許可한 土地契約에 定해진 借地使用條件의 修正을 繼續 許可할 수 있다.

⑥ 英國香港政府가 共同宣言發效日부터 1997年 6月 30日까지 土地去來에 依하여 得한 權利金 收入은 土地開發平均費用을 控除한 殘額을 二均等分하여 英國香港政府와 中共香港 特別行政區政府所有로 한다.

⑦ 土地委員會는 共同宣言發效와 同時에 即日 香港에서 發足한다. 委員會는 中共側과 英國側이 各各 指名한 同數의 公務員으로 構成하며, 双方 各政府에 責任을 진다.

⑧ 委員會 設置細則은 双方이 別途로 協議한다.

3. 英國側覺書

1) 1997年 6月 30日에 英國屬領市民 (British Dependent Territory Citizen = BDTC)인 者들은 1997年 7月 1日자로 同身分을 喪失한다. 그러나 이들도 비록 英國居住權은 없어도 英國政府가 發給한 旅券을 繼續 使用할 수 있는 適切한 地位를 維持할 수 있다.

2) 1997年7月1日 또는 그 以後에는 어떤 者도 BDTC資格을 얻을 수 없다.

3) 香港特別行政區 및 他地域의 英國領事는 前1)項에 言及된 者가 所持하는 旅券의 期限延長, 更新을 할 수 있다.

4) 上記 英國政府發給旅券所持者들은 第3國에서 英國政府의 領事保護를 받을 수 있다.

4. 中共側覺書

1) 中共의 國籍法에 依해 모든 香港 中共同胞는 BDTC 旅券所持與 否와 關係없이 中共國民이다.

2) 香港의 歷史的 背景과 現實을 감안하여 中共政府는 1997年後에도 종전에 英國屬領市民(BDTC)이라고 불리던 香港中國人들이 外國旅行을 爲해 英國政府가 發行한 旅行證을 使用하는 것을 허용한다.

3) 前記中共國民은 香港內 또는 中共地域內에서 同旅行證所持 理由로 英國의 領事保護를 받을 수 없다.

등소평의 『南巡講話』 전문

<九十年代> (香港, 1992年 4月號, 第267期, pp.42~47)

<爭鳴> (香港, 1992年 4月號, No.174, pp.23~27)

中發 <1992> 2號

중공중앙이 등소평동지의 중요 담화를 전달하고 학습할 것에 관한 통지

각 상·자치구·직할시 당위원회, 각 대군구·중앙각부위·국가기
관 각부위당조(당위원회)·군위 각총부·각군병중당위·각인민단체
당조:

금년(1992년~편자주) 1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등소평 동지는
잇달아 무창(武昌)·심천(深圳)·주해(珠海) 및 상해(上海) 등지에서
중요한 담화를 발표했다.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관건시기에 등소평 동지는 당의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一個中心·兩個基本點)의 기본노선을
확고부동하게 관철·집행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도로를 걷는 것
을 견지하며, 특별히 당면한 유리한 시기를 움켜쥐고서 개혁·개방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정력을 집중시켜 경제건설을 재고해야 한다는
등 일련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견을 발표했다. 등소평
동지의 중요 담화는 단지 오늘날의 개혁과 건설에 대해서 뿐만 아니
라, 당의 14차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일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
한 지도작용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전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
에 대해서도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금 곧 등소평 동지의 중요 담화요점을 여러분들에게 인쇄 발송하겠으니 전체 당원 간부, 전당 동지 특히 각급 영도간부에게 가능한 한 빨리 각급에 따라 전달하여 성실하게 등소평 동지의 중요담화를 학습하고, 담화의 정신적 본질을 전면적이고 깊이있게 깨닫도록 해서 긴밀하게 실제와 결합하고 성실하게 관철 적용시키도록 해야 한다. 학습전달과 실시의 관철 상황은 제때에 중앙에 보고하기 바란다. [이 문건은 현(縣)·단(團)급까지 발송한다.]

중공중앙(中共中央) 1992년 2월 28일

등소평 동지의 무창(武昌)·심천(深川)·주해(珠海)·상해(上海) 등지에서
의 담화 요점(1992년 1월 18일 ~ 2월 21일)

(1)

1984년 나는 광둥(廣東)에 온 적이 있다. 당시 농촌개혁은 몇년을 시작했고, 도시개혁은 막 시작했으며 경제특구는 겨우 시작되고 있었다. 8년이 지난 후, 이번에 와서 보니 심천·주해특구와 기타 일부지방의 발전이 이처럼 빠를줄을 나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보고나니 자신감이 더욱 생긴다.

혁명은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이고, 개혁 또한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이다.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의 계급통치를 뒤집어 엮고, 중국인민의 생산력을 해방시켰는데, 이것이 혁명이다. 그러므로 혁명은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기본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근본적으로 생산력 발전을 속박하던 경제체제를 바꾸어 생기와 활력이 충만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건립하고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켰는데, 이것이 개혁이다. 그러므로 개혁 또한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단지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생산력 발전만을 얘기했을뿐, 개혁을 통해서 생산력을 해방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마땅히 생산력 해방과 생산력 발

전 이 두가지를 말해야만 완전한 것이 된다.

당의 11기 3중전회 이래의 노선·방침·정책을 견지하자면, 관건은 ‘하나의 중심·두개의 기본점’(一個中心·兩個基本點)의 견지이다. 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며,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생활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단지 죽음의 외길밖엔 없다. 이 기본노선은 1백년간 동요됨이 없이 관철해야 하며 동요해선 안된다. 오직 이 노선을 견지해야만 인민은 비로소 여러분(黨-편자주)을 믿게 될 것이고, 옹호하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3중전회 이래의 노선·방침·정책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인민대중은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누구이든시간에 곧 타도 되고 말 것이다. 이 점은 내가 몇차례 말한 적이 있다. 만약 개혁·개방의 성과가 없더라면, ‘6·4’(1989년 6월 4일의 천안문 사태-편자주)의 관문을 뚫고 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혼란이 오고, 혼란은 곧 내전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을 것이다. ‘문화대혁명’이 바로 내전이다. 어떻게해서 ‘6·4’천안문 사태이후에 우리 국가는 안정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곧 우리들이 개혁·개방을 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인민생활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대·국가정권 모두는 이 노선·제도·정책을 수호해야만 한다.

이 짧은 10여년내에 우리 국가가 이처럼 빨리 발전하고, 인민이 기뻐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3중전회 이래의 노선·방침·정책의 정확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며, 누구도 이를 변경시킬래야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도 말했고 앞으로도 말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노선·방침·정책의 견지는 불변한다. 개혁·개방이래 우리가 세운 법규는 결코 적지 않고, 아울러 전방위적인 것이다. 경제·정치·과학기술·문화·군사·외교 등 각 방면에 있어 모두 명확한 방침과 정책이 있고, 또한 정확한 언어표현이 있었다. 이번 13기 8중전회(1991. 11. 25~11. 29. 개최-편자주)가 잘 개최되었으며, 농가생산책임제(農村家庭聯產承包責任制)의 불변을 긍정했다. 한번 변하면 통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곧 중앙의 정책이 변했다고 말할 것이다. 농촌개혁 초기에 안휘성(安徽省)에서 ‘사과자’(傻瓜子: 바보표 호박씨-편자주)사건의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언짢아 했다. 그 사람(개인 영업자 年廣久-편자주)이 1백만

원을 벌었다고 말하고 그를 손좀 봐주어야 겠다고 주장했다. 나는 손을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손을 봐주게 되면 사람들은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된다. 이같은 유의 문제는 또한 적지 아니하다. 만약 처리가 부당하면, 곧 우리의 방침은 쉽게 흔들리고 개혁진반에 영향을 준다. 도시·농촌개혁의 기본정책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당연히 실천의 발전에 따라 완벽해아 될 것은 완벽을 기하고 손질해아 할 것은 손질해아 한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확고부동해아 한다. 설령 새로운 생각이 없더라도 괜찮다. 변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책이 변했다고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도시·농촌개혁의 기본정책-편자주)만 있으면 중국은 커다란 희망이 있다.

(2)

개혁·개방에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고, 대담하게 시험해 보며, 전족을 한 여인처럼 행동해선 안된다. 정확하게 본 것은 곧 대담하게 시험해 보고, 대담하게 돌진해 나가야 한다. 심천(深圳)의 중요한 경험은 바로 대담하게 돌진해 나가는 데에 있다. 돌진해 나가는 정신이 조금도 없고 모험정신이 조금도 없으며, 기백이나 힘이 없으면 곧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없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 곧 새로운 사업도 할 수가 없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어떤 일을 처리하여 백분의 백 모두 성공할 수 있고, 하나의 실수도 없게 할 수 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독선적이고 1백%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적이 없다. 매년 영도층은 모두 경험을 총괄해서 옳은 것은 견지하고, 옳지 않은 것은 빨리 개선해아 하며, 새로운 문제가 출현하면 꼭 잡아서 해결해아 한다. 아마 또 다시 30년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각 방면에서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착된 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하에서의 방침·정책 또한 장차 더욱 더 정형화 될 것이다. 현재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 경험은 하루 하루 풍부해지고 있다. 경험은 매우 많고 각 성(省)의 간행물 자료를 보면 모두 자기

의 특색을 갖고 있다. 이러하면 좋지 않은가. 즉,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개혁·개방의 발걸음이 성큼성큼 나아가지 못하고, 감히 돌진해 나가지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요소가 많아진다는 등 자본주의 길로 빠져든다는 등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핵심은 성(姓)이 '자'씨(資氏)이냐 아니면 '사'씨(社氏)이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판단의 표준은 마땅히 주로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유리하냐 아니냐,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을 증강시키는데 유리하냐 아니냐,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유리하냐 아니냐를 보아야만 한다. 특구설치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른 의견이 있었으며, 자본주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들을 했다. 심천(深圳)의 건설성과는 곧 이런 저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했다. 특구는 사회주의이지 자본주의가 아니며, 심천의 상황으로부터 볼 때 공유제가 주체이고, 외국상인의 투자는 단지 4분의 1을 점유 할 뿐이며, 외자(外資)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수입(稅收), 노동사무(勞務) 등 방면에서 이득을 보고 있지 않은가! '3자'(三資)기업(중외합자·중외합작·외상독자-편자주)을 더 많이 운영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에게서 우세한 점이 있고, 국영대중형기업이 있으며, 향진기업(鄉鎮企業)이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권(政權)이 우리 손에 있다. 어떤 사람은 외자(外資)가 많아지면, 자본주의가 그 만큼 많아지고, '3자'기업이 많아지면 자본주의 요소가 그만큼 많아지며, 이는 곧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상식조차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다. 중국 현 단계의 '3자'기업은 현행의 법규와 정책에 따라 외국 상인이 아무튼 돈을 좀 벌어 간다 하지만,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공인(工人)이 임금을 받으며, 또한 기술과 관리를 배우고, 정보를 얻으며,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3자'기업은 아국의 전체 정치·경제조건과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의 유익한 보충이 되고 있어, 결국은 사회주의에 유리한 것이다.

계획이 많으나 시장조절이 많으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구별이 되지 않는다. 계획경제가 사회주의와 같은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은 있다;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와 같은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에

도 시장은 있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수단이다.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착취를 소멸하고, 양극분화를 없애서 최후에는 공동부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두에게 이 도리를 설명해야만 한다. 증권·주식시장 등 이 요소들이 요컨대 좋으나 나쁘나, 위험한 것이냐 아니냐, 자본주의에만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냐, 사회주의는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의 주시하여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단호하게 시험해 보도록 해야 한다. 괜찮다고 보고 1, 2년 실시해 보아서 좋으면 개방하고, 잘못되면 바로잡거나 폐쇄하면 된다. 폐쇄는 빨리 폐쇄할 수도 있고, 천천히 폐쇄할 수도 있으며, 다소 여지를 남겨둘 수도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이 태도를 견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비교해서 우세하게 되자면 반드시 인류사회가 창조해 낸 일체의 문명성과를 대담하게 흡수하고 거울로 삼아야 하며,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를 포함한 현 세계 각국의 현대 사회화 생산규율을 반영한 일체의 선진적인 경영방식과 관리방식을 흡수하고 거울로 삼아야만 한다.

사회주의 도로를 걷자는 것은 바로 점차 공동부유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공동부유의 구상은 이 같이 제기된 것이다: 일부 지역에 발전할 조건이 있으면 먼저 발전하고, 다른 일부 지역의 발전이 더디면 먼저 발달한 지역이 낙후한 지역을 이끌어 최종적으로는 공동부유에 도달하자는 것이다. 만일 부유한 자가 갈수록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갈수록 궁핍해진다면 양극분화는 곧 생길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제도는 마땅히 양극분화를 피해야 하고 또 피할 수 있다. 해결방법의 하나는 먼저 부유해진 지역이 납세를 좀 더 많이 부담하여 빈곤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일은 너무 일러도 안되고, 현재 발달된 지역의 활력을 약화시켜서도 안되며, 또한 나눠먹기식의 한술밥(‘대과반’: 大鍋飯) 먹기를 고무해서도 안된다. 언제 이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고 해결해야 될지, 어떤 기초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는 연구해 보아야만 한다. 본세기말 의·식·주가 해결된 비교적 넉넉한 생활수준(‘小康水平’)에 도달했을 때, 이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고 해결할 것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에 이르러 발달지역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하고, 또한 좀 더 많은 납

세부과와 기술이전 방식을 통해 발전하지 못한 지역을 힘껏 지원해야 한다. 발달되지 못한 지역도 대부분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고 발전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아무튼, 전국범위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연해(沿海)와 내지(內地)간의 빈부차이 문제를 점차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개혁·개방에 대해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경제특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인 농촌개혁에서 농촌가정생산책임제 실시와 인민공사를 폐지할 때도 그랬다. 처음에는 단지 3분의 1의 성(省)에서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2년째에는 3분의 2를 초과했고, 3년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거의 전부 실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즉 전국범위 내에서 말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 실시가 열렬하지 못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우리의 정책은 바로 바라보게 내버려 두자는 것이다. 바라보게 두는 것이 강제보다 훨씬 더 좋다. 우리가 3중전회이래 추진한 노선·방침·정책은 강제로 하지 말고 무슨 운동도 벌리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많이 하고자 하면 하게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따라오게 되었다.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은 나의 하나의 발명이다. 논쟁하지 않는 것은 일할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이다. 논쟁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시간만 허비하며 무슨 일도 이룰 수 없다. 논쟁하지 말고 대담하게 시험해 보고 대담하게 돌진해 나가야 한다. 농촌개혁도 도시개혁도 모두 그렇다.

현재 ‘우’의 요소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좌’의 요소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인 것은 역시 ‘좌’의 요소이다. 어떤 이론가·정치가 가운데 큰 모자[‘大帽子’: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당관료를 주자파(走資派)로 몰아 죄목을 쓴 꼬깔모자를 씌워 거리에 끌고 다니던 큰 모자-편자주]를 가지고 사람을 겁주는 사람은 ‘우’가 아니고 ‘좌’이다. ‘좌’는 혁명적 색채를 가지고 있어 마치 ‘좌’가 될수록 혁명적인 것 같다. ‘좌’의 요소는 우리 당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던가! 아무리 좋은 것도 그들에 의해 단번에 절단날 수 있다. ‘우’는 사회주의를 파멸시킬 수 있지만 ‘좌’도 또한 사회주의를 파멸시킬 수 있다. 중국은 ‘우’에 대해 경계해야 하나 주로 ‘좌’를 방지해야 한다. ‘우’의 것도 있다. 동란

은 ‘우’의 것이다. ‘좌’의 요소도 있다. 개혁·개방을 자본주의를 끌어들이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화평연변’의 주요위협은 경제영역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 바로 ‘좌’이다. 우리는 반드시 머리를 맑게 유지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출현해도 또한 쉽게 바로잡고 고칠 수가 있는 것이다.

(3)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잡아쥐고, 자기를 발전시켜야 하며, 관건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주변 몇몇 국가들과 지역의 경제발전이 우리보다 빠른데, 만약 우리가 발전하지 않거나 혹은 발전이 너무 느리면, 인민이 비교해 볼때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부터 가능한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오직 효율과 이익을 꾀하고, 질과 양을 중시하며, 외향형 경제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어떤 걱정거리도 없게 된다. 저속도의 발전은 멈춘 것과 다름없으며 심지어는 후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이다. 나는 이 기회를 상실할까 보아 걱정하고 있다. 꼭 잡지 않는다면 눈 앞의 기회를 잃게 된다. 시간은 눈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 발전은 반드시 애써 노력해서 몇년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경제발전은 당연히 실제에 맞지 않는 고속도로 유지하려고 해선 안되며, 또한 튼튼하고 견고해야 하고, 효율과 이익을 중시하여 추구하며 침착하고도 확고한 걸음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광둥(廣東)은 경제가 몇 단계를 올라 가야 하며, 20년을 힘써 노력한다면 아시아 4마리의 작은 용(‘四小龍’)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강소성(江蘇省) 등도 비교적 좋은 지구로 발전하고 있으며 당연히 전국의 평균 발전속도보다 빠르다. 또한 상해(上海)를 예로 들면 지금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상해는 인재·기술·관리 방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우세하며 그 미치는 범위가 넓다. 뒤돌아 보면, 나의 하나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4개 경제특구를 건설할 때 상

해를 추가시키지 않은 일이다. 만약 첨가시켰더라면 현재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와 전체 장강유역 내지 전국의 개혁·개방의 국면은 모두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몇년간의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발전은 몇년간의 간격을 두고 한 단계씩 올라가게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진정 개혁을 시작한 것은 1980년이고, 81~83년의 3년 동안의 개혁은 주로 농촌에서 진행되었다. 84년에는 중점을 도시개혁으로 전환했다. 경제 발전이 비교적 빨랐던 것은 84~88년까지이다. 이 5년 동안은 우선 농촌개혁으로 많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농산물이 대폭적으로 증산되었고 농민의 수입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향진기업(鄉鎮企業)이 돌연 나타났다. 광대한 농민의 구매력이 증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지고, 게다가 자전거·재봉틀·녹음기·손목시계 등 소위 아홉가지 고급 생활필수품(‘九大件’)과 고급 소비품들이 보통 농가에도 보급되었다. 농부 산품의 증가와 농촌시장의 확대, 농촌 잉여 노동력의 이전 등은 또 공업 발전을 강력하게 추동시켰다. 이 5년간 모두 창조해 낸 공업 총생산액은 6 조억원(元)으로, 평균 매년 21.7% 성장을 보이고 있다. 먹고 입고 거주하고 타고 쓰는 등의 각 방면의 공업품은,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포함하여 모두 대폭적으로 신장되었다. 철강, 시멘트 등의 생산자료 역시 크게 신장되었다.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는 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생동적이고 대단히 설득력 있는 발전과정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 기간 우리의 재부(財富)가 거대하게 증가했으며, 전체적인 국민경제가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 89년 치리정돈(治理整頓: 경제환경의 ‘치리’와 경제질서의 ‘정돈’—편자주)이 시작되었다. 치리정돈에 나는 찬성하며 그리고 확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경제의 ‘과열’은 확실히 여러가지 문제들을 초래했는데 가령 통화의 너무 많이 발행되어 물가파동이 크게 일어났고, 중복건설이 비교적 심각했으며, 일부 낭비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전면적으로 그 5년간의 가속발전을 볼 것인가? 그 5년 동안의 가속발전은 일종의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그러나 ‘대약진’(大躍進)과는 상이하다. 전체적인 발전의 유기체와 메커니즘을 해치지 않았다. 그 5년 동안의 가속적인 발전의 공로는 적지

않았으며, 이것은 나의 평가이다. 치리정돈은 공적이 있었지만 공로를 평가한다면 단지 안정되게 한 공로에 불과하다. 아직도 5년간의 가속발전은 하나의 공로로 간주될 수 있을까? 혹은 최소한의 한 방면에서의 공(功)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 만약 그 몇년간의 도약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없었다면 전체 경제가 한 단계 올라가고, 그후 3년간의 치리정돈도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의 경제발전을 볼 때 반드시 어떤 하나의 단계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몇년을 가속발전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제때에 치리(治理)를 가하고, 그후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변에 처리할 일들이 많으면 우리는 각종 모순과 문제를 처리할 때 능동적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발전 중 대국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경제를 좀더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발전은 그렇게 평온하고 완만하게만 할 수 없다. 경제의 안정과 조화로운 발전에 주의해야 하지만 안정과 조화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발전이 극히 도리에 맞는 것이다. 이 문제를 명백히 해야만 한다. 만약 분석이 부당하고 오해를 조성한다면, 너무 신중한 나머지 소심하게 변하여 감히 사상을 해방하지 못하고 손과 발을 감히 풀어놓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시기를 상실하고,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모는 것과 다름없으며, 나아가지 못하는 즉 후퇴하는 것이다.

국제경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몇몇 국가들은 발전과정 중 일찍이 고속의 발전시기, 혹은 약간의 고속도의 발전단계가 있었는데 일본·한국·동남아 일부 국가들과 지역이 그와 같다. 현재 우리는 국내조건이 구비되어 있고 국제 환경이 유리하며 아울러 사회주의 제도가 역량을 집중해서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우세를 발휘하고 있으므로 금후 현대화 건설의 긴 과정 중 약간 발전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효과가 비교적 좋은 단계가 출현하는 것은 필요하며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 웅대한 이상과 포부가 있어야 한다.

경제발전을 좀더 빨리 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지해야 한다. 나는 말하거니와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다. 최근 10~20년 사이에 세계 과학기술의 발전은 얼마나 빠른가! 첨단 과학기술 영역의 하나의 돌파는 일련의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냈다. 우리 자신도 이 몇년동안 과학기

술을 떠났다면 과연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과학을 재창해야 하며 과학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희망이 있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우리의 과학기술은 적지 않게 진보했고, 90년대에는 더욱 빨리 진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매 실행마다 모두 하나의 명확한 전략 목표를 수립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의 영역에 중국도 세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나는 경험없는 문외한이지만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명예를 얻도록 한 과학기술자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모두는 과거 그때의 전학삼(錢學森)·이사광(李四光)·전삼강(錢三強) 등 많은 원로 과학자들이 것처럼 어려운 조건하에서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폭탄·수소폭탄과 인공위성-편자주)과 아주 많은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땅히 현재의 과학자들은 훨씬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요구는 더욱 많다. 나는 지식분자들도 공인계급의 일부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원로 과학자·중년 과학자들은 매우 중요하고 청년 과학자들 역시 매우 중요하다. 외국 유학을 나간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길 희망하며, 그들의 과거의 정치 태도가 어떠하든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 가능한 한 돌아 오면, 돌아온 후 알맞은 안배를 할 것이다. 이 정책은 불변이다. 그들에게 말하거니와, 공헌을 하자면 역시 귀국하는 것이 좋다.

모두가 온 힘을 합쳐 아국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의 발전을 더욱 빠르게 하기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길 희망하며, 과학기술을 추진함에 기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좋다. 그리고 기술이 높고 새로울수록 우리는 기쁠 것이다. 단지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인민이 기쁘고 국가가 기뻐한다. 우리 국가를 사랑한다면 우리 국가를 발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양 손을 단단히 움켜쥐어야 한다. 한 손으로는 개혁·개방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각종 범죄활동을 소탕해야 한다. 이 양 손은 모두 단단해야 한다. 각종 범죄활동을 소탕하고 각종 추악한 현상을 제거하는데 손이 부드러워서는 안된다. 광둥성이 20년내에 아시아의 4마리 작은 용(‘四

小龍')을 따라 잡는 데에 있어, 경제적으로만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사회기풍도 쇄신해야 한다. 이 두가지 문명(물질문명과 정신문명-편자주) 건설에 있어 모두 그들을 초과해야만 하며, 이것이 바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인 것이다. 싱가포르의 사회질서는 좋은 편이다. 그들의 관리는 엄격한데 우리는 마땅히 그들의 경험을 거울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욱 잘 관리해야 한다. 개방이후 약간의 부패한 것들이 뒤따라 들어와 중국의 일부지방에도 추악한 현상, 예컨대, 아편을 피우고 창기(娼妓)와 놀아나고 경제범죄 등이 나타났다. 그것들을 잘 단속하는데 주의해야 하고, 단호하게 금지시키고 소탕해서 절대로 그것들이 제멋대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신중국 성립이후 불과 3년만에 술한 이러한 것들을 일소했다. 아편을 피우고 헤로인을 먹는 것을 세계에서 누가 소탕할 수 있겠는가? 국민당도 해내지 못했고, 자본주의 국가도 해내지 못했다. 사실이 증명하듯 공산당은 능히 이러한 추악한 것들을 소탕해낼 수 있다. 전체 개혁·개방과정 중 지속적으로 부패현상에 반대해야 한다. 간부와 공산당은 청렴한 정치 건설을 큰 일로 삼아 꼭 움켜쥐어야 하되, 법제에 의지해야 하며 법제가 믿을만 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의 생산력이 발전하고, 일정한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하며 양손으로 움켜잡는 일을 견지하기만 하면,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이룩할 수 있다.

전체 개혁·개방의 과정 중 반드시 시종 4항기본원칙의 견지에 주의해야 한다. 당 12기 6중전회의(1986. 9. 28.-편자주)에서 우리는 자산계급자유화 반대에 20년간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현재 보건대 20년 가지고는 안되겠다. 자산계급자유화의 범람은 그 결과가 극히 나쁜 것이다. 특구를 건설하는데 십여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무너지는 것은 눈깜짝할 사이의 일이다. 무너지는 것은 쉽지만 건설은 매우 어려우며 조짐이 나타날 때 부주의하면 곧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무산계급전정(專政)에 의존해서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하나의 기본 관점이다. 마르크스는 계급투쟁학설이 그의 발명이 아니고, 진정한 발명은 무산계급전정에 관한 이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역사적인 경험이 증명하듯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신흥계급은 대

체로 적대계급의 역량에 비해 약하다. 그러므로 전정의 수단으로 정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인민에 대하여는 민주를 실행하고 적에 대해 전정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인민민주전정이다. 인민민주전정의 역량을 운용하고 인민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 것은 정권의 일이며 무슨 도리에 어긋나는 바가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한 지 불과 몇십년이며 아직도 초급단계(初級段階)에 처해 있다. 우리의 몇세대, 십여세대, 심지어 몇십세대까지 계층을 피지 않는 분투노력을 해야 하며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5)

정확한 정치노선은 정확한 조직노선에 의지해야 보장된다. 중국의 사업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사회주의와 개혁·개방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국가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일정한 의미에서 볼 때 사람에게 달려있다.

제국주의의 화평연변(和平演變)공작은 그 목표를 우리 이후의 몇 세대에다 두고 있다. 강택민 동지의 이 세대는 제3세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제4세대, 제5세대가 현존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원로세대의 사람들이 살아 있고, 무게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대세력은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안다. 그러나 우리 이 원로들이 세상을 떠난 후 누가 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러므로 군대교육·전정기구교육·공산당원교육·인민과 청년의 교육을 잘 해야만 한다. 중국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역시 공산당 내부에서 발생된다. 이 문제에 대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인민을 배양하는데 주의해야 하며, 또 ‘혁명화·연소화·지식화·전문화’(革命化·年經化·知識化·專業化)의 표준으로 덕과 재능을 겸비한 계승인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당의 기본노선을 1백년간 유지해야 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러자면 이 조항에 의존해야만 한다. 진정으로 전체에 관계되는 것은 이러한 일이다. 이것은 눈앞에 닥친 하나의 문제로서 결코 이미 순리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내가 복권된 후 바로 이러한 문제에 주의했다. 원로세대에 의존해서는 장기간의 안정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진정으로 제3세대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사람(胡耀邦·趙紫陽-편자주) 모두 실패했는데 경제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모두 자산계급 자유화의 문제에서 실패한 것이다. 이 점은 봐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89년 5월 하순에 말한 적이 있는데, 현재 바로 인민이 인정하고 개혁·개방노선을 견지하며 또 정치적인 업적이 있는 사람을 뽑아 대담하게 새로운 영도기구 안에 들어가게 해서 인민으로 하여금 우리가 진심으로 개혁·개방을 성의껏 하려 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인민은 실천을 본다. 인민이 보고서, 역시 사회주의가 좋다, 역시 개혁·개방이 좋다는 것을 느낄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사업은 오래도록 빛을 발할 것이다!

진일보한 젊은이를 발굴하여 영도조직으로 영입해야 한다. 현재 중앙의 영도그룹의 연령은 좀 많은데, 60세가 좀 지난 사람은 젊은 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괜찮으나 다시 20년이 지나면 80세가 넘게 되어 나처럼 오늘 이런 한담이나 하는 것은 괜찮으나 일하는 정력은 부족하다. 현재 중앙의 영도그룹은 일을 아주 잘한다! 당연히 문제는 여전히 많고, 언제든지 문제는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 원로들의 판단은 일에 관여하지 않고 새로 올라온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도록 맡기고 현재의 동지가 성숙해 가는 것을 보아야 한다.

노년층은 스스로 자각하여 지위를 물려주어야 하며 옆에서 도와 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잘 처리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호의를 가지고 돕고, 다음 세대의 계승인의 배양에 주의해야 한다. 내가 물려나서 견지하는 것은 바로 노년시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이다. 노년층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또한 매우 큰 약점도 있다. 노년층은 고집스럽기 쉽고 그래서 노년층은 자각성이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최후에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좀더 겸허해져야 한다. 현재 또 계속 인재를 선발해야 하며 더욱 젊은 동지를 선발해서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못믿어 해서는 안된다. 나는 20세에 큰 관리가 되었는데 당신네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알고 있지 못했는데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는가?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사람을 선택했으면 배양하는 것을 도와서 더욱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성장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심할 것이다. 현재는 아직 안심할 수가 없다! 결국, 관건은 우리 공산당 내부를 잘 건설하여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안심하고 큰 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1기 3중전회에서 확립된 이 중국의 발전 노선을 충분히 견지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고 특별히 후대를 교육시키는데 달려 있다.

현재 한가지 문제는 바로 형식주의의 만연이다. TV를 한번 켜 보면 모두 회의이다. 회의도 많고 문장도 매우 길고 담화도 아주 길고 게다가 내용이 중복이 되며 새로운 발언이 많지 않다. 중복되는 말은 하되 간결해야 한다. 형식주의는 또한 관료주의이다. 시간을 할애하여 실제적인 일을 많이 하고 쓸데 없는 말은 삼가해야 한다. 모 주석(毛主席)은 긴 회의를 하지 않았고 문장도 짧고 간결했으며 담화도 매우 조리가 있었다. 주은래 총리의 4기 인민대표대회의 보고는 모 주석이 내게 기초의 책임을 지정하고 5천자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나는 임무를 완성했는데 5천자면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 문제를 견지할 것을 건의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배우는 것은 정확해야 하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장편의 것은 소수의 전문인이 읽는 것이지 군중들이 어떻게 읽겠는가? 모두가 두터운 책을 읽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형식주의이고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공부하기 시작한 지도서는 《공산당선언》과 《공산주의 ABC》였다. 최근 어떤 외국인들이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는 타도될 수 없는 것이다. 타도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두터운 책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진리는 그 이론이 바르기 때문에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사구시는 마르크스주의의 정수(精髓)이며 이것을 제창해야지 책을 제창해선 안된다. 우리의 개혁·개방의 성공은 그 책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실천에 의존한 것이며 실사구시에 의존한 것이다. 농촌이 농가생산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편자주)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 발명권은 농민의 것이며, 농촌개혁 중의 여러 방면 모두가 그 기층에서 창조해 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공·제고시켜서 전국의 지침으로 삼았다.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내가 읽은 책은 많지 않으

며 바로 한 가지인데 모 주석이 말씀하신 실사구시를 믿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에도 이것(실사구시-편자주)에 의존했고, 현재 건설을 하고 개혁을 하는 데도 이것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일생동안 마르크스주의를 말해왔는데, 실은 마르크스주의는 결코 오묘한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매우 소박한 것이며 꾸밈없는 도리이다.

(6)

나는 세계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사유물주의(歷史唯物主義)를 운용하여 인류사회의 발전규율을 밝혀 내었다. 봉건사회가 노예제사회를 대신하고, 자본주의가 봉건주의를 대신하며, 사회주의가 긴 과정의 발전을 거친 후에 반드시 자본주의를 대신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역사발전에서 있어 역전될 수 없는 총 추세이다. 그러나 길은 구불구불하다. 자본주의가 봉건주의를 대체하는 몇백년간 얼마나 많은 왕족의 북벽이 있었는가? 그러므로 일정한 의의에 있어서 말할 것 같으면, 북벽(폐위된 천자가 다시 제위에 오르는 것-편자주)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법칙성의 현상이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주 엄중한 굴곡이 나타났고, 사회주의가 마치 쇠약해진 것 같지만 인민들은 이를 통해 단련을 받고 교훈을 흡수함으로써 장차 사회주의로 하여금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황하여 실수하지 말 것이며, 마르크스주의는 사라졌다, 소용없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세계평화와 발전이란 이 두 개의 큰 문제는 지금까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회주의 중국은 마땅히 실천으로서 세계를 향해, 중국은 패권주의(霸權主義)에 반대하고 강권정치(強權政治)에 반대하며 영원히 패권을 칭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굳건한 역량이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도로위에서 계속 전진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몇백년간 발전해 왔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실시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하물며, 우리 자신은 20년의 시간을 허비했다. 만약 건국 초부터 시작하여 1백년간의 시간을 사용하여 아국을 중등수준의 발달된 국가로 건설한다면 그것은 아주 굉장한 것이다! 현재부터 다음세기 중엽까지는 장차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는 열성적으로 일에 몰두해야 한다. 우리 어깨위의 짐은 무겁고 책임은 크다!

중공중앙 판공청 비서처(中共中央 辦公廳 秘書處)

1992. 3. 1. 인쇄·발송

중국의 통일과 개혁·개방

인 쇄 : 1996. 1. 10

발 행 : 1996. 1. 12

발행처 : 통일원 통일정책실

제 2 정책관실

TEL : 720-2148

725-0762

<비매품>